아동권리와 경영원칙 10주년:

기업책임경영에 아동권리 내재화하기

unicef
for every child

UN GLOBAL COMPACT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Save the Children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10주년」은 유니세프, 유엔글로벌콤팩트, 세이브더칠드런이 출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의 발췌는 사사표기의 기재에 한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언급된 인용처: Mawson, Andrew, Humberto Cantú Rivera and Subajini Jayasekaran, Charting the Course: Embedding children's rights i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and Save the Children, Geneva, October 2022.

© 유니세프(UNICEF), 유엔글로벌콤팩트, 세이브더칠드런, 2022년 10월

표지 사진: © Hannah Maule-ffinch / Save the Children | © UNICEF/UN0340080/Ergen | © UNICEF/UN0306259/Sokol | © UNICEF/UN0312266/Sokol | © UNICEF/UN0302771/Pawelczyk | © UNICEF/UN0403563/Raab | © UNICEF/UN0299890/Ralaivita | © UNICEF/UN0410128/Stephen/Infinity Images

면책고지: *표명된 의견은 본 보고서 저자의 의견이며 유니세프, 유엔글로벌콤팩트 또는 세이브더칠드런의 정책이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오류도 상기 저자의 오류로 남습니다.*

특정 기업명이나 사업 관행의 언급은 소유권 침해 의사를 의미하지 않으며, 유니세프, 유엔글로벌콤팩트 또는 세이브더칠드런 측의 홍보나 권고로 해석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용된 지명과 지도는 어떤 국가나 지역 또는 그 당국의 법적 지위 또는 국경선 획정에 대한 유니세프, 유엔글로벌콤팩트 또는 세이브더칠드런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말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10주년」은 유니세프 아동권리 및 비즈니스 부문 전 책임자인 앤드류 모슨과 멕시코 몬테레이대학교 법과 · 사회과학대학 교수이자 인권 · 기업연구소장인 움베르토 칸투 리베라 및 컨설턴트인 수바지니 자야세카란이 공저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다양한 외부 전문가의 조언과 의견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특히 베니엄 다윗 메즈무어(유엔아동권리위원회), 미키코 오타니(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벤저민 스미스(국제노동기구), 딜런 반 트롬프(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클레어 브라이트(비즈니스, 인권 및 환경에 관한 NOVA 센터), 베리트 크낙(제네바대학교), 저스틴 놀런(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나타샤 잭슨 및 제니 존스(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팔로마 무노즈 퀵(BSR), 레베타 드윈터–슈미트(투자자인권연맹), 캐롤라인 리즈(쉬프트(Shift)), 리사 콕스(기독형제투자서비스), 로빈 파르킨(윤리적파트너스펀드운용), 해럴드 파우웰스 및 피터 폴 반 더 위즈스(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 사라 드키체 및 마티아스 랑게(국제 코코아 이니셔티브), 누르 아딜라와 프라사드 비자야 시거랜 및 니티아 자카리아(지속가능한 팜유 생산을 위한 협의체), 이네스 캠퍼(아동권리 및 비즈니스 센터), 니나 볼머(글로벌아동포럼), 마리루 페리스(일하는 가족(Working Families))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또한 리뷰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다음의 동료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유니세프 – Aseil Alshehail; Carlotta Barcaro; Josianne Galea Baron; Maria Pia Bianchetti; Stephen Blight; Karla Correa; Lidija Gamulin; Anne Grandjean; Ida Hyllested; Afrooz Kaviani Johnson; Christopher Kip; Francesca Lazzaroni; Caleb Segun Lean; Grainne Mairead Moloney; Verity Nicholas; Erik Nyman; Katherine Ortiz; Sally Proudlove; Chemba Raghavan; Julia Rees; Ana Maria Gonzalez Ruiz; Katherine Shats; Romain Sibille; Jasminder Kaur Smith–Khaira.

세이브더칠드런 – Davinia Ovett Bondi, Head of Unit, Child Rights and Business Global Hub, and colleagues from the Save the Children global movement.

유엔글로벌콤팩트 – Griet Cattaert; Mari–Lou Dupont

본 보고서 작성에 경제적 지원을 해 주신 레고 그룹, 유니세프, 세이브더칠드런 스웨덴과 세이브더칠드런 이탈리아에도 감사드립니다.

편집: Catherine Rutgers, Catherine Rutgers Inc.

디자인: Formato Verde

출간 파트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을 방문해 주십시오: 유니세프, www.unicef.or.kr, 유엔글로벌콤팩트, unglobalcompact.kr, 세이브더칠드런, www.sc.or.kr

목차

감사의 말 3
개요 9

제1장: 서문 13

1.1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유래 13
1.2 도전과제와 위기가 거듭된 의지를 불러일으키다 15
1.3 인권 존중: 기업 목적의 핵심이자 지속가능성 조건 18
1.4 5가지 핵심 메시지 19

제2장: 인권과 지속가능성에 대응하여 변화하고 있는 기업 환경 21

2.1 기업책임경영의 진화 21
2.2 인권 프레임워크가 기준치를 높이다 23
2.2.1 인권 실사는 핵심 제도이다 24
2.2.2 실사에 대한 규제적 접근을 포함한 국가 조치의 증가 25
2.3 인권 준수는 지속가능성 조건을 창출한다 28
2.4 핵심 프레임워크에서의 아동의 가시성 31

제3장: 아동권리에 미치는 기업 영향의 범위와 다양성 33

3.1 아동: 저해되고 소외될 위험에 처한 진화하는 정체성과 역량 34
3.2 아동권리의 존중 및 지원 35
3.3 아동노동 철폐 36
3.4 양질의 일자리 37
3.5 아동안전보호 39
3.6 마케팅과 광고 41
3.7 환경 43
3.8 디지털 환경 46

제4장: 기업책임경영에 아동권리 내재화, 10년 49

4.1 단일 문제 초점 또는 포괄적인 아동권리 실사 49
4.2 대기업의 아동권리 보고 및 공시 51
4.3 중소기업에 대한 제한된 데이터 53
4.4 플랫폼들에 의한 이니셔티브는 변화의 원동력이거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54
4.5 아동을 위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하는 투자자들 56
4.6 정부 및 법적 조치: 아동에 주목한 조치들의 “효율적 결합” 구축 57

제5장: 특정 아동권리 주제 관련 진전사항 59

5.1 아동노동 철폐 59
5.2 가족 친화 기업 정책과 관행 지원 61
5.3 아동안전보호 63
5.4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권리 64

제6장: 향후 10년을 위한 경로 개척 69

6.1 3가지 상호 의존적 조치를 수립하는 법과 기준 및 관계 69
6.2 가장 소외된 이들을 포용하는 모두를 위한 체계 71
6.2.1 실사 입법 시 아동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 필요 72
6.2.2 밸류체인 전반의 아동권리 실사 72
6.2.3 구제책 접근 향상 72
6.2.4 이해관계자 개입과 의미 있는 아동 참여 74
6.3 금융 부문의 리더십 가속화 74
6.4 ESG 보고의 효과 제고 75
6.5 중소기업의 조치 강화 76
6.6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권리 기반 접근법 증진하기 77
6.7 기업, 아동권리, 지속가능발전 79
6.8 협력과 공동실행 82

제7장 아동권리 증진과 기업: 결론과 권고사항 85

7.1 결론 86
7.2 권고사항 88

용어 해설 93

© UNICEF/UNI186150/Sokol

개요

비즈니스는 우리 세계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의 근간을 이루며, 사실상 모든 아동은 제품과 서비스 소비자로서, 마케팅과 광고 노출을 통해, 연소근로자 또는 아동노동자로서,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로서, 또는 그들이 거주하고 활동하는 환경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든 기업 활동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부모와 양육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 활동과 사업 관계는 아동에게 간접적이지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10주년」은 기업이 아동에게 미치는 유일하거나 심지어 주요한 부정적 영향이 아동노동이라는 통상적 가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동시에, 그러한 가정을 종식시키기 위한 방안의 중요성과 중대성을 인식한다. 현실은 기업 활동과 사업 관계는 아동에게 다수의 약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유니세프, 유엔글로벌콤팩트, 세이브더칠드런이 수립한 아동권리와 경영원칙(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10주년을 계기로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재계에 미친 영향을 제시하고, 아동권리가 지속가능한 기업책임경영에 통합되는 것과 관련된 진전사항을 검토하며, 향후 10년에 걸친 행동 가속화를 위한 핵심 사안을 제시한다.

본 보고서는 기업이 아동에게 미치는 주요한 부정적 영향이 아동노동만이라는 통상적 가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동시에, 그러한 가정을 종식시키기 위한 방안의 중요성과 중대성을 인식한다. 현실은 기업 활동과 사업 관계는 아동에게 다수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에는 기후위기와 공해, 성별 및 인종 고정관념, 성착취와 성학대, 건강에 해로운 제품의 영향, 온라인 관행과 사업모델 등이 포함된다.

인권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기업책임경영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기업 기여 창출로 가기 위한 핵심 경로이다. 핵심 제도는 현저한 인권 영향(그 강도와 가능성 면에서 두드러지는 인권 영향)을 식별하고 다루는 인권 및 환경 실사이다. 이러한 실사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서 구체화된 유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에 제시되어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에 의해서 보완된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은 국가 의무와 기업 책임의 정의를 명확히 하면서, 기업 활동 맥락에서 인권을 보호할 국가 의무와 모든 활동과 관계에서 (즉, 밸류체인 전역에서) 인권을 존중할 국가 책임 및 기업 관련 인권 침해의 피해자를 위한 구제책 접근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명확히 제시한다.

지속가능발전은 인권에 대한 기업 존중을 요구한다. 부정적 영향을 다루는 것은 기업 책임일 뿐만 아니라 시간 경과에 따른 충분한 규모의 긍정적 영향에도 필요하며, 저탄소경제로의 공정한 전환에도 필수적이다. 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파리기후변화협정 세부목표의 달성을 위한 기업의 자산, 자원, 제품, 서비스, 혁신, 기술 및 전문지식 기여의 필요성을 경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한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선행을 하는 것은 다른 분야에서 해를 가함으로써 약화된다. 점점 더 많은 정부들이 지속가능한 기업책임경영을 요구하는 의무적 실사 요건과 다른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영향 보고와 실사를 목표로 한 일련의 중요한 지침을 도입하고 있다.

진전: 아동권리와 경영원칙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기반하며, 책임 있는 기업 관행에 아동권리를 포함하는 데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예를 들어, 10년 전과 비교해 더 많은 기업이 아동노동 퇴치 방안 보고 및 한 가지 이상의 다른 형태의 부정적 영향을 다루는 보고를 지속가능성 및 다른 형태의 기업 보고에 포함하고 있다. 수량화가 가능하지 않다 하더라도, 아동권리는 책임 있는 투자자 수탁자 책임(stewardship)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주제이다.

많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기업책임경영 지침에 아동권리를 포함하기 시작했다. 특정 업계, 예를 들어 코코아 · 팜유업계와 여행 · 관광업계는 아동노동 또는 성착취를 퇴치하기 위한 업계 전반의 방안을 마련했다. 가족친화제도 및 관행은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특정 주제로 등장했다. 소수의 정부는 아동노동에 대한 의무적인 인권 실사를 고안했다.

그러나 **이행 시 주요한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며 **진전은 더딘 상태**이다. 예를 들어, 글로벌아동포럼(Global Child Forum)이 2021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기업의 84%가 아동노동 정책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 중 58%만이 동 정책을 이행하였으며 심지어 이에 대한 보고를 실시한 기업은 현저히 적었다. 구제는 탄탄한 실시 과정 이행의 대리지표로 중대한 실상을 드러내는데, 국게적으로 현저한 취약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아동노동은 가장 널리 인식되는 기업의 부정적 영향으로 남아 있으며, 대부분의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진전이 훨씬 적게 이루어졌다.

기업책임경영을 의무화하거나 이행하기 위한 실사 및 기타 제도는 아동의 권리와 요구사항이 처음부터 기준 전제조건으로 설계되지 않는 한 아동에게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 이는 소외 및 배제의 위험에 직면에 있는 다른 집단의 권리에도 적용된다.

아동은 조치와 방법의 설계 및 이행 시 충분히 눈에 띄지 않으며 그들의 의견은 훨씬 적게 청취된다. 본 보고서는 기업이 자신들의 현저한 영향을 식별하지 못할 시 결과적으로 아동이 계속해서 인권침해를 경험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아동을 눈에 띄지 않게 만드는 것은 전 세계 인구의 30%를 배제하는 위험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간과가 아니다. 글로벌 지속가능성이라는 도전과제의 맥락에서 이는 태만한 것이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제50차 유엔인권이사회 회기 개회사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고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미래 경로 개척: 본 보고서는 기업책임경영을 의무화하거나 이행하기 위한 실사 및 기타 제도는 아동의 권리와 요구사항이 처음부터 기준 전제조건으로 설계되지 않는 한 아동에게 효과를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이는 소외 및 배제의 위험에 처해 있는 다른 집단의 권리에도 적용되며 여성, 원주민, 소수 민족 또는 민족집단, 소수 종교 및 언어 집단, 장애인,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 특히 기업 활동 및 사업 관계 맥락에서의 비공식 근로자가 그러한 집단에 속한다. 설계 시 포용이라는 이러한 비전은 불평등을 다루는 개발 관행의 기본 원리와 부합하며, 가장 소외된 집단에 도달하는 제도가 모든 이에게 효과적이라는 것이 바로 그 원리이다.

향후 10년을 내다보면, 기업의 자발적인 접근만으로는 필요한 규모의 전환적 조치를 이끌어낼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는** 전반적인 극심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입법조치를 통해 아동을 위하거나 구제책 등의 인권 및 환경 실사를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공공서비스 외주에 인권 의무를 포함하거나 그들이 경제주체로 활동할 시 투자 목표로 추구하는 등의 다른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다국적 기업과 비즈니스 플랫폼은 그 규모와 국제적 도달범위로 인해 기업책임경영 추진 시 주도적 주체가 되고, 밸류체인 전반에서의 인권 존중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대전환을 위한 핵심 지렛대가 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모든 기업의 95%를 차지하므로, 중소기업에서 발견되는 더 한정된 역량을 감안하는 효과적인 인권과 환경권 실사 및 다른 제도 마련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과 함께 정부, 기업협회, 투자자들은 이를 달성하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투자자들이 아동권리와 경영원칙과 부합하는 정책과 실사 및 고충처리제도를 마련하고, 그들 스스로의 활동에 개선된 아동 가시성을 포함하고, 피투자자 행위 시 그러한 가시성을 요구하여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하다. 투자자 수탁자 책임 활동과 집단적 경영 관여 방안은 피투자자 기업의 아동권리 정책 및 관행을 개선할 뿐 아니라 아동권리에 대한 기대치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

더 전반적으로 보면, 금융 부문에서의 가속화는 **개선된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 및 관행**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지속가능성 보고 내 표준의 부합성, 일관성 결여 제거, 아동노동을 넘어서는 아동권리의 가시성 제고, 이용 가능한 기업 관행 데이터를 확보하여 아동권리에 대한 투자자 분석을 촉진하는 것도 아동권리를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평가에 통합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ESG에서 아동권리 등의 인권으로 체계화된 "사회"에 대한 더 나은 정의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성별뿐만 아니라 연령별로 사회적 보고 표준을 세분화하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문제를 조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아동권리에 기업이 미치는 실질적, 잠재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더 광범위한 이해는 또 다른 핵심 요소이다. 기업 활동 변경 시 "무엇이" 아동(과 기업)에게 효과가 있는지," 즉 어떤 조치가 아동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더 자세히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를 식별하여 다른 기업들과 공유하는 기업 혁신이 장려되어야 한다. 기업에 널리 적용가능한 결과 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기업, 정부, 개발단체 간의 결과 설명 공유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결과 추적을 개선하는 것이 향후 10년간 계획의 핵심이다.

기업 관행 및 사업 관계와 관련되는 인권 침해의 근본 원인을 다루는 기업은 국제개발업계와의 지속적인 공통 관심사를 창출한다. 이는 기업 인권 *책임*과 의무 및 *자발적 기여* 사이에 선을 그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그 선은 명확하지 않으며 사안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그 선은 공유된 변화 이론에 기반해 사회적 목표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협력 및 공동실행의 문을 열기도 한다. 이는 기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아동 결핍의 원인 및 그 대처법 분석에 통합하는 전문지식과 분석에 근거하여 국제개발단체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 UNICEF/UN0221433/LeMoyne

© UNICEF/UNI313505/Abdul

제1장: 서문

비즈니스는 우리 세계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의 근간을 이루며, 사실상 모든 아동은 제품과 서비스 소비자로서, 마케팅과 광고 노출을 통해, 연소근로자나 아동노동자로서,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로서, 또는 그들이 거주하고 활동하는 환경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든 기업 활동의 영향을 받는다.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10주년」은 2021년 유니세프, 유엔글로벌콤팩트, 세이브더칠드런이 발간한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10주년을 기념하여 저술되었다. 본 보고서는 아동권리에 미친 기업 영향 및 관련된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지난 10년간에 걸친 진전사항을 검토하며, 향후 10년을 내다보고자 한다.

또한 본 보고서는 다음의 일부 근본적인 질문을 탐색한다.

- 기업이 아동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그러한 영향을 다루는 것이 기업과 아동, 사회에 왜 중요한가?
- 현 시대의 기업책임경영에서 아동권리가 눈에 띄는가?
- 어떤 조치를 취해야 아동이 가시화되고 그들의 의견이 청취되며, 기업 활동과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맥락에서 아동권리가 정부의 인권 보호 책임에 통합될 수 있는가?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10주년」은 체계적으로 제기되지 않았거나 다른 곳에서 폭넓게 응답되지 않았던 질문에 대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한다. 모든 중요 질문을 제기하거나 모든 관련 사안에 응답하는 것은 본 보고서의 범주를 넘어선다. 다만 아동을 논의의 중심 대상으로 삼아 기업, 정부, 시민사회가 포함된 다수의 이해관계자 간 추가 질의를 활성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본 보고서는 2022년 5월~9월 사이에 영어와 스페인어로 발간된 2차 문헌에 대한 검토뿐 아니라,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유니세프 및 세이브더칠드런 직원과의 협의 및 전국, 지역, 본사 사무소에 소재하는 기업과의 협의에 기반한다. 본 보고서는 기업,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의 기업책임경영에 대한 조언에서 도움을 얻었다*(상기 감사의 말 참조).*

1.1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유래

아동권리와 경영원칙이 수립된 까닭은 아동노동을 제외하고는 아동권리가 지속가능한 기업책임경영의 주요 부분으로 자주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동은 기업의 핵심 이해관계자로 주기적으로 또는 충분히 인식되지 않는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1]에 기반한 아동권리와 경영원칙은 **유엔아동권리협약**[2]이 재계, 즉 사업기관, 정부 정책입안자, 규제기관, 투자자와 기타 기업 이해관계자 및 그들 사이의 관계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는 데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한다. 그러한 시사점은 특히 아동노동, 부모와 양육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안전방안 등을 포함하는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 제품과 서비스 및 마케팅과 광고의 영향, 오염 같은 환경 문제, 토지 취득과 이용 등 기업이 전 영역의 아동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방식을 반영한다.

1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OHCHR, New York and Geneva, 2011.

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New York, 20 November 1989. The UNICEF web page offers links to the full text, a child-friendly version and other resources on the Convention.

아동권리와 경영원칙은 기업, 투자자, 정부를 위한 지침으로 설계되었다. 동 원칙은 새로운 국제적 법적 의무를 창출하지 않으며,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과 달리 국제 연성법에서 기술적으로 어떤 공식적인 지위도 지니지 않는다. 이 원칙은 "모든 기업은 …해야 한다"는 문구로 구성되며, 이는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고, 이행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이 원칙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다. 현실은 아동권리 존중에 이르는 길은 정부와 기업 모두의 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아동권리와 경영원칙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재계, 즉 사업기관, 정부 정책입안자, 규제기관, 투자자와 기타 기업 이해관계자 및 그들 사이의 관계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는 데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시행을 점검하는 조약 모니터링 기구인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제16호(2013)에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요약한다.

- *보호* 의무는 국가가 기업이 아동권리 침해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침해에 일조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필요한 모든 적절한 개선조치를 취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 중 하나는 국가 의무에는 아동에게 미치는 전반적인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한 입법 및 규제 조치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 *존중* 의무는 국가가 아동권리 침해를 직간접적으로 돕거나, 방조하거나, 용이하게 해서는 안 되며 모든 주체로 하여금 기업 활동 및 운영 맥락에서 아동권리를 존중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 *이행* 의무는 국가가 아동권리의 향유를 용이하게 하고, 촉진하고, 규정하기 위한 긍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동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다른 요건 중에서, 이는 국가가 기업의 아동권리 존중을 지원하고 의무화하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법적 및 규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이다.[3]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모든 기업은 다음을 실시해야 한다.

1. 아동권리 존중의 책임을 다하며, 아동권리를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2. 모든 기업 활동과 사업 관계에서 아동노동 철폐에 기여한다
3. 연소근로자와 부모, 양육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4. 모든 기업 활동 및 시설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한다
5.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아동권리를 지원한다
6.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마케팅과 광고를 사용한다
7. 토지의 취득, 사용 및 환경과 관련하여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한다
8. 안전보장 조치에서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한다
9. 긴급 상황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를 지원한다
10.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지역사회와 정부의 노력에 동참한다

유니세프, 유엔글로벌콤팩트, 세이브더칠드런(2012)

이 원칙 개발에는 아동, 기업, 투자자, 정부, 시민사회, 노조, 국가인권단체와 유엔 기관 모두가 핵심적으로 참여하였다.

3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neral comment No. 16 (2013), paras. 26–29.

© UNICEF/UN0261310/Sokol

1.2 도전과제와 위기가 거듭된 의지를 불러일으키다

현재의 여러 사건에서부터 시간 경과에 따른 동향에 이르기까지 세계는 계속해서 격변하고 있으며, 아동은 상호 얽혀 있는 도전과제와 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가장 적더라도 이러한 과제와 위기에 흔히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

기후위기는 현 세대의 결정적인 인권 및 아동권리 과제이며, 아동 복지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4] 이 위기는 실질 성장 비용 확정의 일환으로 사회와 지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향후 비용을 통합하는 장기적 사고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성장 모델의 막대한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 결과는 현재뿐 아니라 향후에 아동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1945년 이후 **무력분쟁** 건수가 가장 높은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약 20억 명의 사람들이 2020년 말에 분쟁 국가에 거주하고 있었다.[5] 이들 가운데 6명 중 1명꼴인 4억 5,200만 명의 아동이 분쟁 지대에 거주 중이었다.[6] 2021년 난민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의 예측치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식품 및 가스 가격 상승에서 비롯된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며 2022년 글로벌 성장의 상당한 둔화에 일조할 것이며, 전 세계 최빈곤층 다수에 이미 식량 위기가 닥친 상태이다.[7]

코로나19는 수십억 명 사람들의 생명과 생계에 지장을 초래했으며 대규모 및 가계 수준에서 광범위한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초래했다. 유엔 사무총장은 "수 년의 또는 심지어 몇 십년의 개발 진전이 중단되거나 퇴보했다"고 보고했다.[8]

---

4 See, for exampl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The Climate Crisis is a Child Rights Crisis: Introducing the Children's Climate Risk Index, UNICEF Division of Communication, New York, August 2021; Save the Children, 'Born into the Climate Crisis: Why we must act now to secure children's rights', Save the Children International, September 2021.

5 Economic and Social Council, 'Progress toward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E/2022/xx (Advance unedited version), United Nations, New York, 2022, para. 4.

6 Kamøy, Kristin, Pia Podieh and Keyan Salarkia, Stop the War on Children: A crisis of recruitment, Save the Children, 2021, p. 3.

7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War sets back the global recovery, IMF, Washington, D.C., April 2022.

8 Economic and Social Council, 'Progress toward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E/2022/xx (Advance unedited version), United Nations, New York, 2022, para. 2.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세이브더칠드런과 유니세프는 2019년과 비교해 2021년 말까지 1억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이 다차원적 빈곤 속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9]

2016년과 2020년 사이에 **아동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진전**은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니세프의 공동 추정치에서 측정된 바에 따르면 20년 만에 처음으로 정체되었다. 아동노동에 종사하는 아동 비율은 동일한 수치를 유지한 반면, 절대적인 수치는 8백만 명이 넘게 증가했다. 새로운 완화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아동노동에 종사하는 5~17세 사이의 아동 수는 2020년 1억 6천만 명에서 2022년 말까지 1억 6,890만 명으로 증가할 수 있다.[10]

국제화는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을 증가시켰을 수 있지만, 그 혜택과 영향은 공평하게 공유되지 않고 있다. 세계불평등보고서 2022에 따르면, 모든 수입의 52%는 인구의 10%가 벌어들이지만 그 중 8.5%만이 소득 하위 50% 계층에 분배된다. 전 세계 소득 분포 상위 10% 계층에 속하는 개인은 평균적으로 연간 12만 2,100 미국달러를 벌어들이는 반면, 소득 하위 50% 계층에 속하는 개인은 3,920 미국달러를 벌어들였다.[11] **경제적 평등 면에서의** 이러한 엄청난 **격차**는 사회적, 정치적 시한폭탄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중요한 미래지향적 진전 양상은 정부, 재계, 시민사회가 충분히 대담하고 실용적이며 긴급하게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한다면 새롭고 더 나은 현실을 구축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은 국제적 중대 사건이었지만, 세계가 기후 세부목표를 달성하려면 당장 해야 할 일이 많다.[12] 따라서 기업을 포함한 인간 활동의 역할과 기후변화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포함하는 심화된 도전과제와 함께, 기후위기의 규모와 복잡성에 대한 더 예리하고 상세한 전망이 등장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제6차 평가 보고서(2022)에서 더 빈번하고 극심한 기상이변 같은 기후변화가 어떻게 기관과 인프라에 영향을 미치면서, 육체적 · 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강제이주를 촉진하고 수백 만명의 사람들을 식량 불안정과 물 접근 감소에 노출시키는지를 상세히 설명한다. 동 보고서는 또한 "기후탄력적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의 창이 급속도로 좁아지고 있으며… 경로가 아직 존재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민간 부문, 정부, 국가, 세계가 기후탄력적 개발을 추구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13]

2011년 이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은 기업 활동과 사업 관계 맥락에서의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및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정의하는 권위 있는 틀을 제공했다.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는 빈곤,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교육, 깨끗한 물, 지속가능한 도시, 정의, 생물다양성과 기후 등의 다수의 사안 전반에서의 진전을 위한 야심찬 세부목표를 설정했다.

이러한 발전과 다른 21세기 발전에서 얻은 통찰력을 통해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14]와 연계되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여러 면에서 등장했으며, 이러한 이해는 기후, 환경, 인권, 사회적 • 경제적 정의의 상호 연계성을 인정한다.

---

9 Save the Children and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Impact of COVID-19 on Children Living in Poverty: Technical note', UNICEF Data, New York, December 2021.

10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nd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Child Labour: Global estimates 2020, trends and the road forward – Executive summary', ILO and UNICEF, Geneva and New York, June 2021, pp. 5, 3.

11 Chancel, Lucas, et al., 'World Inequality Report 2022: Summary', World Inequality Lab, Paris, 2021, p. 11. See also: Piketty, Thomas,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 2014.

12 See: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United in Science 2022', WMO, Geneva, 2022.

13 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 'Summary for Policymakers', Climate Change 2022: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I to the Six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2022, p. 29.

14 United Nations, Our Common Future: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7.

그러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향한 전반적 진전은 경로에서 벗어나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진전을 기록하는 유엔 2022 보고서에 언급된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다른 여러 국가에서의 무력분쟁, 코로나19, 기후위기의 영향이 결합되어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크게 위태롭게 하고 있다.[15]

현재의 어려운 경제적, 기업 환경에서 비용 절감,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 분쟁에서 비롯된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명목으로, 책임경영의 틀 내에서 마련된 규제나 경제 및 기업 정책과 관행을 최소한 일시적으로라도 포기하고 싶다는 일부 유혹이 있을 수 있다. 기업책임경영이 경영성과에 좋다는 증거는 충분하다.[16] 더욱 중요한 점은 세계가 직면한 도전과제는 더 강한 의지, 협력, 민관 협업 및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일관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더 공평한 지속가능발전으로의 공정한 전환은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정부, 민간 부문, 시민사회를 비롯한 우리 모두를 위한 유일한 현실적인 선택은 재생경제 창출을 위한 결정적 조치와 더 강력한 행동에 전념하는 것이다.

"아동권리 등의 인권 존중은 진정한 지속가능성의 전제조건이다."

– 캐서린 러셀, 유니세프 총재, 유엔글로벌콤팩트 정상회의, 2022년 6월 1일

© Luisa Dörr / Save the Children

15 United Nation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22', United Nations, New York, July 2022.

16 See, for example: Whelan, Tensie, and Carly Fink, 'The Comprehensive Business Case for Sustainability', Harvard Business Review, 21 October 2016; Henisz, Witold, Tim Koller and Robin Nuttall, 'Five Ways that ESG Creates Value', McKinsey Quarterly, 14 November 2019.

1.3 인권 존중: 기업 목적의 핵심이자 지속가능성 조건

목적의식이 있는 비즈니스는 우리 시대의 필요하고 환영할 만한 특징으로 사회적, 환경적 해결책에 충분하게 기여할 잠재력이 있다. 기업이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파리기후변화협정 세부목표와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달성되지 않을 것이며, 두 목표 모두 사회적, 환경적 해결책에 대한 기업 기여를 위한 집결점이자 초점을 제공한다.[17]

많은 기업이 중요하고 필수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사업 및 사회적 투자를 지시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한 분야의 긍정적 투자가 다른 분야에서 입은 손해를 상쇄할 수는 없다. 기업의 진정성 있고 효과적인 책임경영의 토대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 및 완화하고 그러한 영향의 발생 시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서 구체화된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의 핵심이며, 동 원칙은 기업 같은 제3자의 침해 등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할 국가 의무 및 자신의 정책, 관행, 관계에서 인권을 보호할 기업의 책임을 명시한다.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인권 존중의 중요성에 대한 거듭된 인식은 지난 10년간의 또 다른 중요한 발전이다. 사람과 지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다루는 것은 대부분의 기업이 지속가능발전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여이다.[18] 또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은 2011년 도입된 이후 영향력이 커져왔으며 정부와 기업이 사람과 환경 존중을 우선시할 수 있는 권위 있는 프레임워크와 핵심 도구를 제공한다.[19]

아동권리 보호와 존중은 결핍과 배제의 세대 간 계승을 끊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차장이자 사무총장 겸 최고경영자(CEO)인 산다 오잠보는 "아동의 권리와 아동의 목소리는 국제적 지속가능성 노력에 통합되지 않으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20]

목적의식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고심하지 않는 기업은 사업 동기부여에 대한 냉소주의와 신뢰 부족을 초래하고 자신과 더 헌신적인 다른 기업들의 평판을 훼손한다. 또한 필요한 규모의 효과적인 국제적 협력을 저해하여 아동, 사회, 글로벌 비즈니스와 자체 사업에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

© UNICEF/UN037198/Bindra

17 Business &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ssion, Better Business Better World, London, January 2017.

18 UN 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at 10: Taking stock of the first decade',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A/HRC/47/39, United Nations, 22 April 2021.

19 Ibid.

20 Sanda Ojiambo, UN Global Compact Leaders Summit, Session on Business action to advance children's rights, 1 June 2022.

1.4 5가지 핵심 메시지

기업이 아동권리 존중 책임을 주기적으로 이행하고 정부가 이러한 일이 발생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세상을 상상해 보자. 기업 활동의 광범위한 성격을 감안할 때, 이는 완전히 탈바꿈된 세상이 될 것이다. 정부와 국제개발의 중점과제인 박탈과 인권 문제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는 기업이 이러한 모든 문제에 책임이 있음을 시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업 기여가 환경을 크게 변화시켜 박탈과 권리침해의 규모와 범위를 줄이면서 이를 더 다루기 쉽게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 상태에서 이는 아득한 꿈이다. 일부 사람은 심지어 이를 순진한 발상이라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장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하는 정부, 기업, 개발 실무자가 추구할 가치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것에 대한 다음의 5가지 핵심 메시지를 전달한다.

1. *기업은 여러 방식으로 자사의 활동과 관계를 통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을 인식하고, 예방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노동이 주요 영향으로 가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아동노동 관련 특히 평판 및 법규준수 위험에 주로 근거하여 초점을 맞추게 되면 아동권리에 대한 불완전하고 부적절한 기업 조치로 이어지게 된다.
2. *아동권리가 눈에 띄지 않으면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정부와 기업 조치에서 아동권리가 누락되게 될 것이다.* 이는 현저한 영향, 즉 그 강도와 가능성 면에서 두드러지는 아동권리에 대한 영향을 기업이 식별하지 못하면 아동이 계속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책임 이행을 위한 기업의 노력은 불완전할 것이며, 기업책임경영이 아동 삶 개선과 지속가능발전 지원에 할 수 있는 큰 기여는 완전히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
3. *기업책임경영을 의무화하거나 이행하기 위한 정부 및 기업 제도는 아동의 권리와 요구사항이 기준 요건으로 처음부터 설계되지 않는 한 아동에게 효과를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소외 및 배제의 위험에 처해 있는 다른 집단의 권리에도 적용된다. 아동이 가시화되지 않는 것은 전 세계 인구의 30%를 배제하는 위험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간과가 아니다. 글로벌 지속가능성이라는 도전과제의 맥락에서 이는 태만한 것이다.
4. *기업 인권 및 환경 실사는 지속적이며, 체계적이고, 시간 경과에 따른 규모의 잠재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기업과 지속가능발전을 연계시키는 핵심 도구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업이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만, 기여를 원하는 기업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 아동에게 미치는 위험과 영향을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으로 시작해야 하며, 그 이후 관련성이 없는 기여를 살펴야 한다.
5. *정부와 기업은 아동노동 철폐라는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심해야 하며, 이러한 공동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동권리에 대한 다른 부정적 영향이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아동노동은 여전히 심각한 위반으로 남아 있으며 정부와 기업은 이의 철폐라는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 UNICEF/UNI207007/Chalasani

제2장:
인권과 지속가능성에 대응하여 변화하고 있는 기업 환경

밀턴 프리드먼이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1970년 이후 미래지향적 기업의 메시지는 크게 변화해 왔다.[21] 오늘날 기업과 정부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파리기후변화협정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업 조치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이윤 기회는 상당하지만, 여기에는 더 많은 사안이 걸려 있다. 기후위기, 불평등 심화, 코로나19 경험은 다음의 근본적인 질문에 시선이 가게 한다.

-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가?
- 단기적 이익과 가치추출이 경제적, 기업 성공의 주요 기준이라면 어떤 세상이 존재하게 될까?

제2장은 인권에 기반한 기업책임경영의 현 동향에 대한 기본 개요를 제공함으로써 아동권리와 기업에 대한 논의의 맥락을 정한다.

2.1 기업책임경영의 진화

기업책임경영은 "구식"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핵심 사업운영에 완전히 내재되어 있는 관행에 자리를 내주면서 크게 진화해 왔다. 많은 기업이 비즈니스 해결책을 사회적 · 환경적 문제 해결에 적용할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유가치 창출"[22]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동시에 기업이 활동하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는 기업 정책 및 운영절차의 개념으로 많은 이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다.

자선단체 기부나 지역사회 차원의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는 CSR은 정확한 목표가 부족하고 평판과 홍보에 주로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공유가치 접근법에 대한 의문이 때때로 제기되는 이유는 이 접근법이 창출될 이윤이 있지 않는 한 기업의 가장 현저한 인권 영향에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성과 달성에 기업 핵심 목적을 결집시키는 것은 중요한 영역의 혁신과 개발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잠재적으로 제시한다.

지속가능한 책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자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프레임워크의 이용 증가와 피투자자 기업의 환경 및 인권 성과 개선을 위한 수탁자 책임 활동 이용은 기업책임경영 추세를 반영 및 지원하고 있다. 이는 또한 지역사회, 근로자, 공급업체, 고객, 환경과 주주의 이익을 인식하는 투자 전략을 뒷받침한다.

---

21 Friedman, Milton, 'A Friedman Doctrine: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its profits', New York Times, 13 September 1970.

22 orter, Michael E., and Mark R. Kramer, 'Creating Shared Value: How to reinvent capitalism – and unleash a wave of innovation and growth', Harvard Business Review, January–February 2011.

© UNICEF/UN0364358/Gil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프레임워크는 주로 환경 요인과 관련되어 활용되어 왔으나, **사회적 요인 관련된 보고**는 아직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의 정의는 종종 불분명하며 측정에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 더욱이 인권을 사회적 영향에 대한 모든 이해에 영향을 미칠 틀이 아니라 많은 무관한 특징 중 하나로 식별하는 경향이 있다.

중요한 점은 많은 관할권에서 지속가능성 보고 조치는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으며 의무적 조치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2013년에 실시된 최근의 45개국에 대한 조사에서 지속가능성 공시를 권고하는 180개 기준과 법률을 발견했다. 이들 조치 중 72%는 의무적이었으며, 이는 19개국에 대한 2006년 조사에서의 56%와 대비되었다.[23] 또 다른 중요 사례는 2014년 유럽연합 비재무보고지침(EU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이며, 동 지침은 유럽연합에서 운영되는 대기업들의 환경, 인권, 기타 사안에 대한 의무적 보고를 도입했다.

지속가능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틀을 확립하는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규정에는 기업이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및 OECD가 발표한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최소한의 보존조항이 포함되어 있다.[24]

지속가능한 책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자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프레임워크의 이용 증가와 피투자자 기업의 환경 및 인권 성과 개선을 위한 수탁자 책임 활동 이용은 기업책임경영 추세를 반영 및 지원하고 있다.

23 Global Reporting Initiative, et al., 'Carrots and Sticks: Sustainability reporting policies worldwide – Today's best practice, tomorrow's trends', KPMG Advisory N.V., Global Reporting Initiative and Centre for Corporate Governance in Africa, 2013, p. 8.

24 Regulation (EU) 2020/852 (Taxonomy) on the establishment of a framework to facilitate sustainable investment, art. 3, 18.

유럽국들은 사회적 공시를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국가들에 속하지만, 그러한 추세는 다른 지역에서도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 도드-프랭크법 제1502조는 미국 상장 기업을 통해 콩고공화국에서 반출되는 분쟁 광물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한다.[25]
- 호주의 현대판 노예제 방지법(2018)은 현대판 노예제 행태에 대한 연간 공시를 의무화한다.[26]
- 인도는 기업법 제135조에 따라 CSR 비용 및 공시를 의무화한다.[27]
- 2008년 이후 전국적인 영향력이 있는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국영기업에 CRS 활동을 공시할 것을 권고해 왔다.[28]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는 대부분 기업 선택의 문제로 남아 있다. 공시는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중요한 단계이기는 하지만, 핵심 문제는 공시가 인권 및 환경 실사의 강력한 이행에 기반하게 하는 것이다.

2.2 인권 프레임워크가 기준치를 높이다

2011년 및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다루는 책임이나 기업 책임에 대한 명확성이 거의 없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은 다음을 통해 민형사 책임을 촉진하는 인권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 기업 활동의 맥락에서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를 지적하고,
- 인권 의무를 이행할 국가의 능력 및 의지와는 별도로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에 주목하며,
- 국가 의무와 기업 책임은 사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예방, 완화, 개선을 수반해야 함을 강조한다.

동 지침에 비추어 볼 때 기업의 능력, 도달범위, 영향력을 동원하기 위한 모든 접근법은 **기업의 책임뿐 아니라 정부의 기본적 의무도 고려해야 함**이 분명해진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 국제인권법 원칙에 기반하며 유엔인권이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거나 만병통치약도 아니다. 현 상태에서는 인권에 기반한 기업책임경영은 세계 일부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더 잘 발달되어 있다.[29]

그러나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은 모든 기업에 기대되는 행동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다음의 3가지 행동 축을 통한 인권 실사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자 관여의 중요성을 확립한다.

1. *국가는 "자국의 영토 및/또는 관할권 내에서 기업체를 비롯한 제3자의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즉, 정부는 기업활동에서 침해가 비롯되는 경우 등에서 인권을 보호할 주요 의무를 지닌다.

25 Section 1502 of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10.

26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ome Affairs, Modern Slavery Act 2018.

27 See: Ministry of Corporate Affairs, 'Acts & Rules', Government of India.

28 Reporting Exchange, 'An Overview of Sustainability and Corporate Reporting in China', 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2018, p. 7.

29 For a detailed discussion of the status quo and other issues discussed in this section, see: UN 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at 10: Taking stock of the first decade', A/HRC/47/39, United Nations, 22 April 2021.

2. *기업은 자사의 활동, 운영 또는 사업 관계가 인권에 제기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 및 관리하기 위해 실사 조치를 채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책임 범위는 밸류체인 위아래 전반으로 확장된다. 이는 또한 기업 실사가 기업에 제기되는 위험에만 치중하기 보다는 사람에게 제기되는 위험에 치중하도록 요구하고 이끌며, 구제책을 제공하거나 이에 협력할 기업 책임을 명시한다.
3. *구제책은 기업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책임을 책임경영의 핵심에 둔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구제책 접근의 필요성은 고충 처리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이행하는 정부, 기업, 다수의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 등에 시사하는 바와 함께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다. 국가는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정부 기반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비정부 제도에 대한 용이한 접근을 통해 효과적 구제책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기업은 효과적인 운영 차원의 고충처리제도를 확립하거나 동 제도에 참여할 책임을 지닌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은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및 기업책임경영 실사 지침[30]에 의해서 보완된다. 동 원칙은 점점 더 기업책임경영에 관한 다른 영향력 있는 표준과 프레임워크, 예를 들어 개정된 ILO 2017년 다국적 기업과 사회적 정책에 관한 삼자공동선언[31], 사회적 책임에 관한 ISO 26000 표준[32], 2021년 10월 도입된 개정된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 보편 표준 등에 포함되고 있다.[33]

2.2.1 인권 실사는 핵심 제도이다

인권 실사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핵심 특징이다. 모든 기업은 실제 또는 잠재적 인권 위험 및 기업 활동이나 사업 관계가 초래할 수 있거나, 일조하거나, 관련될 수 있는 영향을 식별 및 관리하기 위해 실사를 수행해야 한다. 이는 위험 관리조치 이행을 목표로 한 정책 및 절차를 요구한다.

기관투자자를 위한 OECD 기업책임경영 지침에 다음과 같이 잘 기술되어 있다.

> 실사는 지속적이고, 사전 예방적이며 사후 대응적이고, 과정 지향적 활동이며, 상황이 바뀌면 부정적 영향도 바뀔 것이기에 운영 및 제품과 서비스의 전 주기에 걸쳐 수행된다. 이는 실사를 잠재적 사업 관계나 거래에 대한 초기 조사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되며, 기업책임경영 위험을 식별하여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체계적 조치의 수립뿐 아니라 사업 관계와 관련 활동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실사를 사전 예방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의미한다.[34]

실사는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점점 더 법률에 통합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과 선관주의의무나 제3자에 대한 손해방지의무와 같은 법적 개념 등의 기존 법제도와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실사는 적절한 예방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시 인권 영향에 대한 기업 책임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기준이다.[35]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10주년을 기념하는 보고서에서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실사와 관련해 쟁점이 되는 다수의 일반적인 사안을 설명한다. 이러한 사안에는 여러 규모의 기업, 공급망에 미치는 실사의 도달범위, 실사와 지속가능성 보고 사이의 일관성 정도(와 기타 정책 영역), 현저성에 부여되는 중요성, 기업이 이행하는 개선조치 범위 등 관련성이 높은 주제가 포함된다.[36]

---

30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2011) an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2018).

31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 5th edition, ILO, March 2017.

32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26000 and OECD Guidelines: Practical overview of the linkages', ILO, Geneva, 7 February 2017.

33 Global Reporting Initiative, 'Universal Standards'.

34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for Institutional Investors', OECD, 2017, p. 16.

35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mproving Accountability and Access to Remedy for Victims of Business-related Human Rights Abuse: The relevance of human rights due diligence to determinations of corporate liability', A/HRC/38/20/Add.2, Human Rights Council, 1 June 2018, paras. 19–24, 32–34.

36 UN 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at 10: Taking stock of the first decade', A/HRC/47/39, United Nations, 22 April 2021.

2.2.2 실사에 대한 규제적 접근을 포함한 국가 조치의 증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은 정부가 기업책임경영에 새롭게 초점을 맞추도록 이끌었다. 2022년 5월 전 세계 30개국이 국가 의무 및 민간 부문의 책임을 도입하는 기업 및 인권에 대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했다.

기업 및 인권에 대한 국가행동계획은 영향 및 구제책 제공 조치를 다루는 정책 전략을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동 계획은 우선과제 및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이행과 관련된 정책 일관성을 유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식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개발, 모니터링, 업데이트를 포함하는 국가행동계획 전 과정은 명시적으로 "포용성과 투명성"을 목표로 삼으며,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이해관계자에는 아동, 여성, 원주민, 소수 민족과 장애인 같이 기업 관련 인권 침해에 특히 노출될 수 있는 집단의 대표자뿐 아니라 국가인권단체, 기업 대표, 노조, 시민사회단체가 포함된다.[37] 그러나 국가행동계획 이행상의 진전은 더딘 경우가 많았다.

기업 및 인권에 대한 국가행동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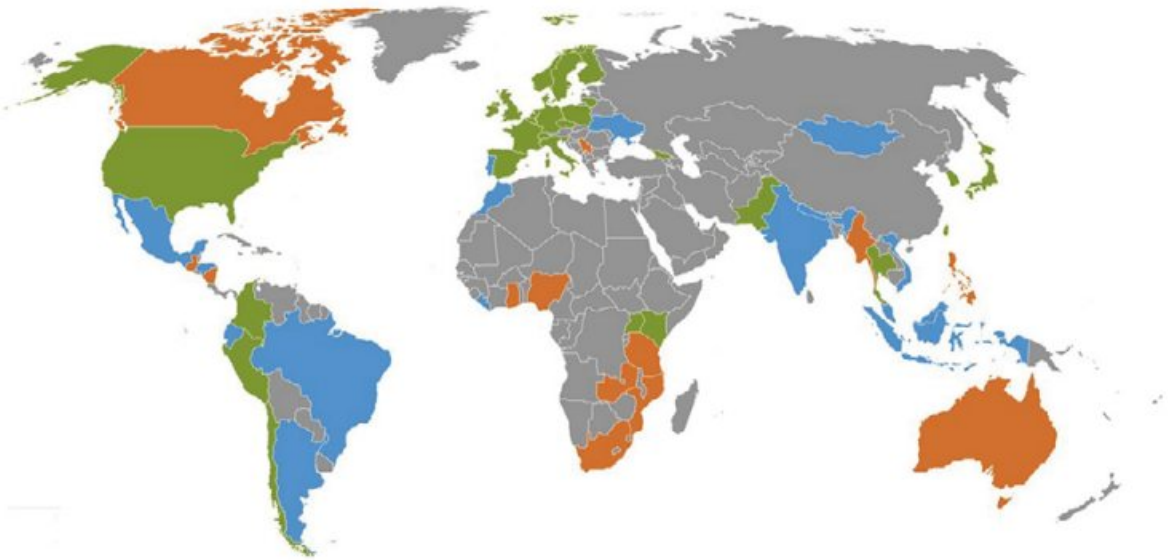

핵심:

국가행동계획 발표 국가행동계획 수립 기타 비국가 방안

출처: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가행동계획, 덴마크인권연구소, 2022년 10월 11일 기준 확인

37 UN 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Guidance on National Action Plan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ited Nations, Geneva, November 2016, pp. 1, 4.

소수의 관할권에서 기업 인권 행위를 다루는, 국가를 초월하는 도달범위를 지니는 정책 및 법률은 마련 중에 있거나 채택되었으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영국(2015년)[38]과 호주(2018년)[39]에서는 공급망 등에서의 현대판 노예제에 대한 조치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률에 치중하고 있으나, 동 법들이 기업의 실사 수행을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 프랑스(2017년)[40], 노르웨이(2021년)[41], 독일(2021년)[42], 스위스(2022년)[43] 법은 인권 실사(나 그 요소)를 의무화한다.
- 2022년, 일본은 "유엔 지침에 따라 일본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체는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자사의 사업과 계열사가 자체 공급망 내에서 미치는 부정적 인권 영향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는 인권 실사 지침을 발표하였다.[44]

기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구체적 사안에 치중하는 일부 초기 법률 사례에는 분쟁 광물과 목재와 관련해 미국[45]과 유럽연합[46]이 도입한 법률이 포함된다. 보다 최근에는 **더 폭넓은 범위의 인권과 기업 활동을 다루고 정책 일관성을 보장하면서 다양한 조치가 결합되도록 설계하는 추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에서 발의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은 폭넓은 범위 및 민사책임제도와 행정제재 제공을 갖춘 지금까지 가장 야심 찬 인권 실사 제도가 될 잠재력을 지닌다.[47] 동 지침 초안은 폭넓은 유럽연합 입법발의안 패키지의 일부로서 기업이 환경 및 인권 향유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발의안에는 무역 규정 및 유럽연합 시장[48]에서 강제노동으로 제조된 제품에 대한 금지안과 함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49], 지속가능금융 공시 의무[50], 앞서 언급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관한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51]와 관련된 방안이 포함된다.

유럽연합이 구축하고 있는 발의된 입법틀은 이미 시행 중이고 현재 마련 중인 여러 발의안의 상호 연계성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초안은 특정 유럽연합 및 비유럽연합 기업의 인권 및 환경 실사 수행을 의무화할 것이다. 동시에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을 운영하고자 제정된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 초안도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실시된 실사 절차를 공개적으로 보고하기 위한 인권 실사의 단계 중 하나를 의무화할 것이다.

---

38 Legislation.gov.uk, 'Modern Slavery Act 2015: Explanatory Notes'.

39 Legislation.gov.au, 'Modern Slavery Act 2018'.

40 LOI n° 2017-399 du 27 mars 2017 relative au devoir de vigilance des sociétés mères et des entreprises donneuses d'ordre (Law No. 2017-399 of 27 March 2017 on the corporate duty of vigilance for parent and instructing companies).

41 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ies, Norway, Act relating to enterprises' transparency and work on fundamental human ights and decent working conditions (Transparency Act), 2021, unofficial translation.

42 Supply Chain Due Diligence Act (Germany), 2021.

43 Ordinance on Conflict Minerals and Child Labour (Switzerland), 2022.

44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Japan, 'Guidelines on Respecting Human Rights in Responsible Supply Chains', Provisional English Translation for Information Only, September 2022, p. 2.

45 Section 1502 of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10.

46 Regulation (EU) 2017/82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May 2017 laying down supply chain due diligence obligations for Union importers of tin, tantalum and tungsten, their ores, and gold originating from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 (Conflict Minerals Regulation); Regulation (EU) No 995/202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October 2010 laying down the obligations of operators who place timber and timber products on the market (Timber Regulation).

47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 COM(2022)71 final.

48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prohibiting products made with forced labour on the Union Market, COM(2022) 453.

49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 2013/34/EU, Directive 2004/109/EC, Directive 2006/43/EC and Regulation (EU) No 537/2014, as regards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50 Regulation (EU) 2019/20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51 European Commission, 'Overview of Sustainable Finance'.

네덜란드는 국가행동계획 수립에 기초해 다수의 이해당사자 협력을 창출하고 있는 국가 사례이다. 정부가 주도한 네덜란드 기업책임경영협약들은 은행, 연금 기금, 보험 등 11개 사업부문을 포괄하는 일련의 한시적 약정이다. 이들 협약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이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과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도록 촉진한다.[52]

이러한 접근법의 강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집결시키는 데 있다. 이들 협약은 부문별 협회 및/또는 기업, 비정부기구, 노조 및 네덜란드 정부 부처를 "서명 당사자"로 참여시킨다(생산국의 이해관계자는 없다). 2020년에 발표된 평가에서 이들 협약이 실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원 인프라, 모니터링, 평가를 통해 기업 법규준수를 촉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동 평가에서 기업책임경영협약의 결과로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부정적 영향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지는 않았다.[53]

네덜란드는 2019년 아동노동실사법을 채택하면서 의무적 조치를 결합된 조치에 추가했다. 그러나 동 법은 시행되지 않았으며 작성 중인 유럽연합 법률에 따라 보다 광범위한 의무적 인권 및 환경 실사로 대체될 것이라 공표되었다.

© Nad É Ali / Save the Children

52 See: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RBC) Agreements'.

53 Bitzer, Verena, et al., Evaluation of the Dutch RBC Agreements 2014–2020: Are voluntary multi-stakeholder approaches to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effective?, KIT Royal Tropical Institute, Amsterdam, 8 July 2020, pp. 27, 8.

© UNICEF/UN039266/Popov

2.3 인권 준수는 지속가능성 조건을 창출한다

인권은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세계로 향하는 경로의 핵심 특징이다. 그러나 현재의 사업 관행 및 지속가능발전과 인권 이행은 아직 완전히 체계화되고, 일관되며, 통합되지 않고 있다.

사람들에게 미치는 위험과 실제 부정적 영향을 다루고 예방하는 것은 인권을 통해 기업책임경영과 지속가능발전을 연계시키는 것이다.[54] 이러한 측면에서 유럽연합 절차는 **기업 환경 및 인권 실사 모두가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상당히 중요한 추세를 보여준다.

인권에 제기되는 가장 큰 위협 중 하나가 기후위기라는 것은 현재 잘 이해되고 있다. 형평성과 사회적 정의의 관점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창출해야 한다는 요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35년 전의 브룬트란트 보고서는 지속가능성의 인간적 · 환경적 측면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55] 빈곤과 불평등을 다루지 않으면 기후목표 달성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56]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은 지리적 위치, 빈곤, 성별, 연령, 장애, 문화적 또는 민족적 배경으로 인해 이미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개인과 지역사회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57] 2022년 7월 유엔 총회는 "모든 사람은 모든 곳에서 깨끗하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를 지닌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결의안을 채택했다.[58]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실사 표준과 책임성 치중은 동 원칙을 녹색경제로의 공정한 전환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소중한 프레임워크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 원칙은 또한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책임 있는 회복을 위한 청사진을 정부와 기업에 제공한다.[59]

54 See also: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dvanc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Human Rights', United Nations.

55 United Nations, Our Common Future, 1987.

56 See: Rees, Caroline, 'Transforming How Business Impacts People: Unlocking the collective power of five distinct narratives', CSR Initiative, Harvard Kennedy School, Cambridge Mass., October 2020.

57 Resolution adopted by the Human Rights Council on 12 July 2019: Human rights and climate change, A/HRC/RES/41/21;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the Effective Enjoyment of Human Rights', United Nations.

58 Resolution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on 26 July 2022: The human right to a clean, healthy and sustainable environment, A/76/L.75.

59 UN 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at 10: Taking stock of the first decade', A/HRC/47/39, United Nations, 22 April 2021, para. 52.

ESG의 "환경(E)"과 "사회(S)"는 상호 충돌할 수 없기는 하지만 "사회(S)"가 특히 투자자가 인권 관점을 기후 및 환경 행동에 통합하는 것을 촉진하는 가운데 상호 관련성을 띤다. **사회적 · 경제적 차원 모두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측면이다.**

이러한 이해는 예를 들어 세계지속가능발전 기업협의회(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조치의 주된 특징으로, 동 협의회는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늦어도 2050년까지는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며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회원국 표준으로 지지한다.[60] 비콥기후위기연합(B Corp Climate Collective)은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자들의 요구사항, 의견, 대표자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인권과 발전을 인간 중심적 접근법으로 연계시키는 기후 해결책의 제시를 언급한다.[61]

인권은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세계로 향하는 경로의 핵심 특징이다. 그러나 현재의 사업 관행 및 지속가능발전과 인권 이행은 아직 완전히 체계화되고, 일관되며, 통합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미치는 기업의 부정적 영향을 기업(과 정부)이 다룰 필요성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기업 대응에서 대체로 발견되지 않아 왔다.[62]

세계 벤치마킹 연합 공정한 전환 벤치마크(World Benchmarking Alliance Just Transition Benchmark) 2021는 탄소 고배출 기업들의 대다수가 자신들의 환경적 위험과 사회적 위험을 연계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로 인해 기업들이 여전히 인권 사안과는 별개로 사회적 위험 및 저탄소 전환 계획을 고려하고 다루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63]

© UNICEF/UNI46682/Kamber

60 World Business 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 'WBCSD Membership Conditions', 2021.

61 B Corp Climate Collective, 'What Is Climate Justice?', 2021.

62 UN 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Taking stock of the first decade', A/HRC/47/39, United Nations, 22 April 2021, paras. 5–6.

63 World Benchmarking Alliance, '2021 Just Transition Assessment', WBA, Amsterdam, 1 November 2021.

다른 우려되는 이행 격차에는 기업 인권 약속과 절차 및 실제 성과와 결과 간의 상당한 비연관성이 포함된다. 많은 기업(종종 더 큰 기업)이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과 부합하기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을 인권 실사와 같은 핵심적인 절차로 전환하는 기업의 비율은 훨씬 더 적다.[64]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실사 수행 시의 장벽은 역량 및 지식 부족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노동력의 약 3분의 2를 고용하고 있다.[65]

그러나 오늘날의 재계는 20년 전이나 심지어 10년 전과도 다르다. **기업 책임에 대한 진지한 대화는 이제 투자자 사이에서, 이사회와 정부 최고위층에서 더욱 주류가 되고 있다.** 인권과 환경 문제는 잠깐 언급되고 지나갈 주제가 아니며 특히 기후 및 가장 취약한 자들과 관련해서는 인간 복지와 생존에 대한 진지한 고려를 의미한다.

기업 활동이 환경과 사회 모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경제성장 창출 기여 또는 환경적 · 사회적 도전과제의 기술적 해결책에 대한 기여와 함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포함하는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뤄져야 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대한 기업 기여는 필수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보완적 조치와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협력이 필요하다.

© UNICEF/UN0220814/Matas

64 World Benchmarking Alliance, 'Corporate Human Rights Benchmark: 2020 Key findings', WBA, Amsterdam, 2020, p. 9.

65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The Power of Small: Unlocking the potential of SMEs', ILO, October 2019.

2.4 핵심 프레임워크에서의 아동의 가시성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제50차 유엔인권이사회 회기 개회사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은 고칠 수 없다"[66]고 말했다. 올바른 질문이 제기되지 않는다면, 문제를 식별하지 못할 것이다. 적절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기업책임경영의 더 넓은 맥락에서 아동권리는 아동노동을 넘어서 얼마나 가시적으로 통합되어 있는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은 아동을 거의 언급하지 않지만, 그 '일반원칙'에서는 비차별적일 뿐 아니라 당연히 아동이 포함될 "취약하거나 소외될 수 있는 가장 높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집단 또는 인구의 개인"의 권리, 요구사항, 어려움을 다루는 이행을 요구한다. '운영원칙'에 대한 논평은 인권 존중과 관련된 기업체 지침이 "원주민, 여성, 소수 민족 또는 민족집단, 소수 종교 및 언어 집단, 아동, 장애인,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67]을 인식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기업 활동과 사업 관계 맥락에서, 비공식 근로자도 이러한 목록에 속해야 한다.

기업체의 인권 존중 책임과 관련해,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12문단)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은 국제인권장전에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근로자 기본권 선언에 규정된 기본권에 관한 원칙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최소한**(우리의 주안점) 파악된다"고 언급한다.

가장 많이 비준된 국제인권조약인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ILO 제138호 취업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과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은 아동권리와 부합하기 위한 기업 활동 및 운영과 관련된 결정과 조치의 근거를 제공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그 모든 조항을 뒷받침하는 다음의 **4대 핵심 원칙을 지니고 있으며**, 모든 동 원칙은 적용되어 기업의 다음과 같은 아동권리 존중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1. 비차별권
2. 아동 최선의 이익
3.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
4. 아동의 피청취권

인권 표준이 어떻게 기업과 관련되는지를 해석하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같은 폭넓은 지침에서 또는 OECD 기업책임경영 실사 지침 같은 핵심 지침에서 소외될 위험에 처해 있는 아동과 다른 이들이 직면한 모든 구체적 권리 과제를 정의하려는 시도는 번거롭고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들 프레임워크의 어떤 내용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이행 시 아동권리의 통합을 막지 않는다. 이러한 단절은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기업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규제기관과 기업 측에서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간과되는 경향이 있으며 아동노동 이외의 통합은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딜레마는 기업책임경영 지원을 목표로 하는 다른 제도나 프레임워크의 이행 중 등장하기도 한다. ESG가 그러한 예인데, 아동노동이 평가 기준 및 영향 평가 보고 시 기업의 유일한 아동 문제로 식별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 제5장은 제도 및 절차 고안 시 이러한 격차를 어떻게 다룰지를 논한다).*

66 Michelle Bachelet,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pening Statement 50th sess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Geneva, 13 June 2022.

67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OHCHR, New York and Geneva, 2011, pp. 1, 5–6.

© UNICEF/UN0292175/Sokol

제3장: 아동권리에 미치는 기업 영향의 범위와 다양성

기업 활동의 거의 모든 측면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그 선택의정서 및 ILO 협약 제138호와 182호에 정의된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케팅과 광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격과 개발, 데이터 수집, 폐기물 또는 단종제품의 처분, 근로 조건, 직장 안전 및 보안, 토지 취득 및 이용은 환경과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투자 관행도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체 밸류체인이 관련될 수 있으며 디지털 기업 활동도 마찬가지이다.

비공식 고용은 기업의 부정적 영향의 주요 위험요소이다. 아동은 법적 · 제도적 틀 밖에서 발생하는 기업 활동으로 인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 그러한 틀은 근로 조건을 규제하고 직접적으로나 성인에게 영향을 미쳐 인권을 보호한다. 비공식 고용은 불안정한 고용상태, 박봉 또는 무급, 건강 위험, 사회보장책 부족, 장시간 노동, 제한된 결사의 자유, 차별 · 폭력 · 착취로부터의 부실한 보호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68]

기업 활동의 거의 모든 측면이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그 선택의정서 및 ILO 협약 제138호와 182호에 정의된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들 협약은 비즈니스 생태계에서의 아동권리의 중심적이고 중요한 위치에 대한 더 광범위한 인정을 장려하며, 아동권리를 고찰하는 데 일조하였다.

물론 기업이 아동에게 미치는 가장 현저한 영향은 상황, 기업, 부문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잘 알려진" 문제가 기업 영향의 결정적 사례라든가 한 가지 문제에 대한 실사가 아동권리를 적절히 포괄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기업의 산업부문이나 주요 사업 "정체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책 및 관행에서 식별하고 다루는 방식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식음료 기업은 설탕과 지방 함량이 높은 제품의 단순한 제조사 및 판매사가 아니다. 이들 기업은 자녀를 둔 근로자의 고용주일 수도 있다. 저탄소기술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첨단 전기제품이나 배터리를 개발 및 판매하는 기업은 희토류 채취 시 아동노동 이용과 연관될 수 있다. 어떤 기업도 아동에게 미치는 잠재적 부정적 영향과 관련해 하나의 "정체성"을 지니지 않는다.

현실은 아동은 상당히 중요한 일련의 비즈니스 이해관계자에 속한다는 것이다. 아동은 소비자, 직원의 가족구성원, 기업의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구성원, 연소근로자, 미래의 직원 및 비즈니스 리더이다.

제3장의 목적은 다양한 사업 관행과 관련해 아동에 미치는 기업의 부정적 영향의 엄청난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의 대부분은 아동노동보다 덜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덜 알려져 있다.

본 장은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체계를 주로 다루기는 하지만 모든 원칙을 다루지는 않는다. 이는 "빠진" 원칙이 논의된 원칙과 똑같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어떤 부분도 아동에게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한 "결정적" 진술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본 보고서가 이끌어내고자 하는 추가 논의할 만한 사안은 무수히 많다.

68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neral comment No. 16 (2013), para. 35.

© UNICEF/UN0535831/Dejongh

본 장은 아동에게 미치는 기업 영향이 왜 명시적으로 식별되어야 하며 단순히 성인의 상황을 가정하거나 추론할 수 없는지에 대한 논의로 시작한다.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 초점을 맞추면서 마무리된다. 디지털 환경은 지난 10년 동안 사회 구조와 아동의 삶에서 점점 더 중요성이 커졌지만 2011년 초안된 아동권리와 경영원칙에서는 불충분한 주목을 받은 점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3.1 아동: 저해되고 소외될 위험에 처한 진화하는 정체성과 역량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은 중요하지만, 무시되거나 간과되기 쉽다. 기업 운영 및 관행 맥락에서 아동은 불충분하게 보이고 심지어 그들의 의견은 덜 청취된다.

아동은 출생 시와 그 훨씬 이후까지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의존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독립적이 된다. 이는 당연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아동권리 존중과 관련해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동은 연령과 성장뿐 아니라 성별, 문화, 사회, 신경다양성과 장애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이는 아동기와 아동권리에 대한 핵심 사실이다.

아동기는 육체적, 감정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 시기이다. 아동과 청소년 모두 권리를 지니지만,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권리가 실현되는 방식은 다르며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상당한 정도로 소년과 소녀는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경험한다. 또한 아동, 특히 어린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한 경험은 성인의 해당 경험과 크게 다를 수 있다.

아동기에 발생하는 일은 평생 동안 영향을 미쳐, 아동이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을 막거나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영유아기에 충분한 영양, 자극, 사랑, 스트레스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같은 보살핌이 부족하게 되면 두뇌 발달을 방해할 수 있다.[69]

우리 모두는 학대, 괴롭힘 또는 착취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지만, 아동기의 학대, 착취 및 기타 해로운 경험은 건강과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탈과 권리침해의 지속적인 영향은 세대 간 계승된다.

69 See, for example: The Lancet, 'Advancing Early Childhood Development: From science to scale', Early Childhood Development Series, 4 October 2016.

그리고 성인이 여러 면에서 아동에 대한 권력, 영향력, 권한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아동이 권력 남용의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은 중요하지만, 무시되거나 간과되기 쉽다. 기업 운영 및 관행 맥락에서 아동은 불충분하게 보이고 심지어 그들의 의견은 덜 청취된다.

아동이 보호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아동권리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이는 성인의 권리 침해가 아동에게 비간접적이지만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이는 기업과 분명한 관련성이 있다.

이를 아동권리 및 기업과 연계시키면, 기업경영은 아동에게 직접적일 뿐 아니라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은 예를 들어 아동을 고용함으로써 아동노동에 연루될 수 있다. 그러나 아동과 그 가족이 처해 있을 수 있는 빈곤 상태를 악용하고 심화시키는, 부모와 다른 양육자의 근로 조건을 통해서도 연루될 수 있다. 즉 기업이 가족 부양 책임을 지니는 성인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아동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3.2 아동권리의 존중 및 지원

아동권리 존중의 책임을 다하며, 아동권리를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아동권리와 경영원칙 1)[70]

원칙 1 은 모든 다른 원칙 이행에 영향을 미친다.

"존중 책임"은 아동권리에 기반한 접근법을 취하는 기업을 위한 핵심 요소이다. 그러한 책임은 가장 상위에서 승인된 *정책* 약속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책임은 기업이 자사의 활동을 통해 초래 또는 일조할 수 있거나, 사업 관계에 의해 자사의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와 직접 연관될 수 있는 아동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다루는 인권 *실사*를 요구한다. 또한 그 책임은 운영상 고충처리제도나 사법 제도 등의 합법적 절차를 통해 *아동 민감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개선책*의 보장을 수반한다.

원칙 1은 또한 아동권리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는 또 다른 중요 개념을 도입한다.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도덕적 목적의 진술이다.

"지원 약속"은 아동권리 존중 책임을 준수하는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된다. 한 분야에서의 긍정적 기여는 다른 분야에서의 부정적 영향이 다뤄지지 않으면 약화된다. 아동 삶의 개선을 돕는 자산, 자원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자신의 행위나 밸류체인에서의 당사자들의 행위에 대한 자체 실사 및 개선책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인권 책임을 이행하고 있지 않으며 인권 기반 접근법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러한 약속은 또한 기업의 아동 문제 개입에서의 인권 기반 우선과제 선정을 위한 도구 역할을 한다.
기업의 부정적 영향을 최선을 다해 가장 건설적으로 다루게 되면 그러한 부정적 영향이 긍정적 영향으로 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 비만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는 식품의 제조 및 판매를 현저한 부정적 영향으로 식별하는 기업은 그러한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중단해야 하고 건강에 좋은 제품군과 새로운 형태의 마케팅 및 건강한 생활방식 지원으로 대체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예는 아동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거나 관행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기업들과 통찰력 및 교훈을 공유하고자 하는 기업이 될 것이다.

70 Principle 1: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 Global Compact and Save the Children,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2012, pp. 14–15.

3.3 아동노동 철폐

모든 기업 활동과 사업 관계에서 아동노동 철폐에 기여한다(아동권리와 경영원칙 2)[71]

시민사회, 정부, 재계에 의한 행동과 행동주의는 수십 년 간의–선진국에서는 심지어 더 오랫동안– 기업의 관행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 가장 분명한 방법으로 아동노동을 대중 및 정치 인식에 각인시켜 왔다.

아동노동은 아동권리의 심각한 침해로 남아 있으며, 여러 다른 권리의 실현을 막는 장애물로서 아동을 신체적 · 정신적 피해 위험에 처하게 하고 그들의 교육을 저해하며 그들의 미래 기회를 제한한다.

ILO 협약 제182호가 금지한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에는 유해하고, 야간에 이뤄지거나 근로자를 고용주의 사업장 내에 불합리하게 가두는 일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위험한 높이, 제한된 공간, 지하에서 이뤄지거나 위험한 기계류, 장비 또는 도구로 하는 일도 포함되며 유해물질, 유해한 제제나 공정, 또는 건강에 해로운 온도, 소음수치나 진동 노출을 수반하는 일도 마찬가지이다. "숨겨진" 근로 상황은 아동, 특히 소녀들에 대한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다.[72]

ILO와 유니세프의 공동 추정치에 따르면 아동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진전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정체되었으며, 코로나19와 연관된 상당한 역행으로 심지어 악화되었다. 아동노동에 종사하는 아동 비율은 동일한 수치를 유지한 반면, 절대적인 수치는 2016년과 2020년 사이에 8백만 명이 넘게 증가했다. 새로운 완화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아동노동에 종사하는 5~17세 사이의 아동 수는 2020년 1억 6천만 명에서 2022년 말까지 1억 6,890만 명으로 증가할 수 있다.[73]

또한 동 추정치에 따르면 1억 6천만 명의 아동 즉 전 세계 6,300만 명의 소녀와 9,700만 명의 소년이 아동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지역적으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전 세계 나머지 지역을 다 합친 수치보다 많은 아동 노동자가 있었던 반면, 아시아 • 태평양 지역 및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아동노동을 감소시키려는 진전이 지속되어 이들 지역에서의 절대적 수치와 비율은 감소세를 기록했다.[74]

아동노동은 아동권리의 심각한 침해로 남아 있으며, 여러 다른 권리의 실현을 막는 장애물로서 아동을 신체적, 정신적 피해 위험에 처하게 하고 그들의 교육을 저해하며 그들의 미래 기회를 제한한다.

아동노동의 70%는 농업에서, 19.7%는 서비스 부문에서, 10.3%는 산업 부문에서 발생한다. 대부분의 아동이 자신의 가족 내에서 일하지만, 근로 조건이 위험한 경우가 많아 그들의 건강, 안전, 도덕성 발달을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한다. 2020년 초 약 7,900만 명의 아동이 위험한 일에 종사하고 있었다. 위험한 일에 종사하는 아동 비율은 2016년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절대적 수치는 650만 명 증가했다.[75]

빈곤은 노동의 비공식성, 열악한 근로 조건, 이주 또는 강제이주, 사회적 규범, 폭력과 학대의 존재, 성차별, 불충분한 사회적 보호와 교육 배제 같은 복잡하고 상호 관련된 요소와 함께 **아동노동의 주요 동인이다.**

대부분의 아동노동은 국내 생산 및 소비와 연관된 생산 과정 및 소규모 가족경영 사업에서 발생하지만 글로벌 공급망에도 널리 퍼져 있으며 상품과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위한 사업 절차의 핵심 부분이다. 아동노동의 보편성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두드러지지만, 전체 아동노동의 절반 이상은 중소득국에서 발생한다.[76]

---

71 Principle 2: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 Global Compact and Save the Children,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2012, pp. 18–19.

72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R190 – Worst Forms of Child Labour Recommendation, 1999 (No. 190).

73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nd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Child Labour: Global estimates 2020, trends and the road forward – Executive summary', ILO and UNICEF, Geneva and New York, June 2021, pp. 5, 3.

74 Ibid.

75 Ibid.

76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Tackling Child Labour: An introduction for business leaders', WBCSD and UNICEF, December 2021, pp. 6, 14, 7.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의 아동노동의 비중은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다.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에서는 아동노동의 약 9%가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그 수치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는 26%로 증가했다.[77]

아동노동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약 156만 명의 아동이 코트디부아르와 가나의 소농장에서 일하며 코코아를 재배하고 있다.[78] 아동들은 비공식 공장에서 일하며 방글라데시에서는 선박해체, 인도네시아에서는 부모의 팜유 할당량 충족 지원, 튀르키예에서는 면화 농사, 탄자니아 거리에서는 휴대전화 카드 판매,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코발트 채굴, 필리핀에서는 전자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에 종사하고 있다.[79]

아동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아동의 위험 증가로 이어지는 압력은 기업행위의 직접적인 결과일 수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예가 포함된다.[80]

- 도급업무, 가격압착, 단기 공급업체 관계, 주문량 변동성, 시기 및 사양, 예상 배송 속도, 지급 지연과 같은 구매 관행
- 적정 임금 부족, 단기 비공식 계약, 부모와 양육자의 기타 열악한 근로 조건은 낮은 가계소득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아동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도록 부추기거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만든다.[81]

3.4 양질의 일자리

연소근로자와 부모, 양육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아동권리와 경영원칙 3)[82]

양질의 일자리는 아동을 포함한 연소근로자뿐 아니라 부모와 다른 양육자와도 관련된 사안이다. "아동근로(child work)"는 "아동노동(child labor)"과 같지 않다. 아동근로는 취업 최저연령에 도달한 아동이 종사하는 일이 그들의 건강이나 개인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그들의 학교교육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긍정적 경험일 수 있다.[83]

아동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연령에 맞는 일자리로 다음의 성인 관련 기준을 최소한 준수한다. "양질의 일자리는 생산적일 뿐 아니라 공정한 수입과 직장 안전, 사회적 보호, 개인적 발전과 사회적 통합에 대한 더 나은 전망, 우려를 표현할 자유와 단결할 자유,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자유 및 모든 여성과 남성에 대한 기회와 대우의 평등(즉, 전반적인 성평등)을 실현하는 일자리 기회를 수반한다."[84]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3에 명시되어 있듯이, 이는 취업 최저연령을 넘는 아동(즉, "연소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시간을 제한하면서 성별에 맞는 물, 위생, 위생시설 접근과 함께 학대, 착취, 위험한 일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

77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et al., Ending Child Labour, Forced Labour and Human Trafficking in Global Supply Chains, ILO, OECD, IOM and UNICEF, 2019, p. 8.

78 NORC, 'Final Report: Assessing progress in reducing child labour in cocoa production in cocoa growing areas of Côte d'Ivoire and Ghana', University of Chicago, October 2020, p. 10.

79 See, for example: The wide range of reports on "decent work" collated by the Child Rights Resource Centre, Save the Children. See also, World Health Organization, 'Children and digital dumpsites: e-waste exposure and child health, WHO, 2021.

80 UNICEF Child Rights and Business, 'Child Labour and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A guidance note for action',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Geneva, June 2022.

81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et al., Ending Child Labour, Forced Labour and Human Trafficking in Global Supply Chains, ILO, OECD, IOM and UNICEF, 2019, p. 26. See als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nd 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Employers, 'ILO–IOE Child Labour Guidance for Business: How to do business with respect for children's right to be free from child labour', ILO, Geneva, 15 December 2015.

82 Principle 3: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 Global Compact and Save the Children,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2012, pp. 20–21.

83 International Programme on the Elimination of Child Labour, 'What Is Child Labour',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Geneva.

84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Decent Work', ILO, Geneva.

© UNICEF/UN0306259/Sokol

이케아는 자사 공급업체의 연소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늘리다

이케아는 1990년대부터 제품, 서비스, 재료, 부품을 책임감 있게 조달하는 이케아 자사 공급업체의 'IWAY"를 통해 자사 공급망의 아동노동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2021년 국제 아동노동 철폐의 해를 지원하기 위한 공개선언의 일환으로, 이케아는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이지만 취업 최저연령은 넘은 아동)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기 프로그램에 박차를 가했다.

이케아는 청년실업 위험과 교육기회 부족이 어디에서 가장 높은지를 식별함으로써 공급업체들과 함께 연소근로자의 자사 공급망 포함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7년 이후 이케아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연소근로자가 안전한 양질의 일자리에 포함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몇몇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다. 이들 프로젝트는 11개 공급업체를 포함했으며 174명의 청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했다. 이들 프로젝트에서 교훈을 얻은 이케아는 연소근로자의 자사 공급망 포함과 관련된 노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21년 이후 이케아는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 5개 지역 8개국에서 더 큰 영향을 창출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있다.

핵심 접근법은 자사 공급업체들이 프로그램 소유권을 지니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이케아는 공급업체 관리팀과의 대화와 교육을 통해 연소근로자 고용의 장점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유도하는 한편, 그러한 관심과 이해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과 도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최근 사례에는 연소근로자 고용에 대한 공급업체 교육 및 이들 근로자가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행할 기회와 업무를 분석하는 방식에 관한 지침이 포함된다.

이케아는 공개선언에서 자사의 실사 제도에서 아동권리를 강화하고, ILO 아동노동 플랫폼에 참여하고, 아동노동의 근본 원인을 다루는 가족 친화 정책을 증진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부모와 다른 양육자의 근로 조건: 성인근로자와 관련된 가족 친화 직장 관행과 정책은 아동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2021년 전 세계적으로 71%가 넘는 남성과 46%가 넘는 여성이 공식 및 비공식 부문 모두에서 고용되었거나 구직활동을 했으며, 민간 부문이 이러한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때때로 개발도상국에서는 최대 90%까지 차지한다.[85]

부모이거나 아동 양육 책임을 지니는 근로자의 경우, 유급 육아휴직과 유급 병가, 생활임금, 적정 가격의 양질의 보육 및 의료 혜택 접근, 모유수유 및 영양지원, 아동수당, 탄력근무제, 초과근무 및 근로시간 규정 등의 기업 (및 정부) 정책이 그들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지적 발달에 상당히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85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Family-Friendly Policies: Redesigning the workplace of the future – A policy brief', UNICEF, July 2019, p. 1;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Tackling Childcare: The business case for employer-supported childcare', IFC, Washington, D.C., 2017, p. 5.

그러나 수억 명의 근로자, 특히 비공식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러한 기본적 조치들은 먼 현실이다. 게다가 **가족 친화 관행의 부족은 여성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코로나19와 관련된 대규모 차질은 상황을 악화시켰다.[86]

연구에 따르면 유급 (모성 및 부성) 육아휴직 기간이 길어지면 아동 건강이 개선되고 빈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소득국에서 유급 출산휴가의 한 달 증가는 유아사망률을 13%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2년 ILO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여성의 30%가 충분한 유급 출산휴가 접근이 부족한 상태이다.[87] 또한 세계 1세 미만 아동의 거의 3분의 2가 아버지가 단 하루의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가 없는 나라에 살고 있다.[88]

또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발육 부진, 출생 시 저체중 등 아동 영양실조 지표의 현저한 감소 및 아동학대 위험 감소와 관련된다.[89] 물과 위생시설 같은 적절한 직업안전 및 보건 조치가 직장에 없다면, 일하는 부모는 자녀를 독성화학물질에 노출시키거나[90] 질병 확산에 일조할 수 있다.[91]

이주노동은 특히 중저소득국에서 **수백만 가구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만 6,100만 명의 아동이 부모들 중 한 명 또는 두 명이 일자리를 찾아 이주하면서 남겨졌다.[92]

체계적인 검토 결과 이주노동자 부모의 송금으로 아동이 혜택을 입을 수는 있지만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와 체력저하 등의 영양문제의 위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필요성은 남아프리카, 필리핀, 에콰도르와 같은 나라에서 부모 중 한 명 또는 두 명이 이주함에 따라 많은 수의 아동도 남겨지게 됨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건강 결과에 대한 정보는 심각할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 해당 연구는 99개의 출처를 확인했지만, 그 중 어떤 것도 모든 중저소득국에 남겨진 아동과 청소년의 주요 건강 영역을 검토하지 않았다.[93]

3.5 아동안전보호

모든 기업 활동 및 시설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한다(아동권리와 경영원칙 4)[94]

기업 시설 내에서 아동 안전 및 보호 위험을 다루고 모든 사업 활동에서 현장 내외의 직원에게 폭력, 착취, 학대에 대한 무관용 정책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모든 기업의 책임이다.

아동안전보호의 기본 원칙은 이러한 보호가 직원 및 파트너, 계약업체, 기업 구내 방문객 또는 자원봉사자와 같은 기업이 책임지는 다른 자의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 방지를 포함할 정도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95]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보호가** 아동노동을 훨씬 넘어서 **아동에 대한 광범위한 잠재적 위험과 피해를 다룬다는 것이다.**

86 UN Global Compact and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Family-Friendly Workplaces: Policies and practices to advance decent work in global supply chains', UN Global Compact and UNICEF, 2020, p. 2.

87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Care at Work: Investing in care leave and services for a more gender equal world of work', March 2022.

88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Family-Friendly Policies: Redesigning the workplace of the future – A policy brief', UNICEF, July 2019, p. 4.

89 Earle, Alison, and Jody Heyman, 'Paid Parental Leave and Family-Friendly Policies: An evidence brief', UNICEF Early Childhood Development, New York, July 2019, pp. 2, 4.

90 See, for exampl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derstanding the Impact of Pesticides on Children: A discussion paper', UNICEF, New York, January 2018.

91 Wash4Work, 'WASH & COVID-19', UN Global Compact.

92 UNICEF China, 'UNICEF Welcomes State Council Guideline on the Protection of Left Behind Children',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Beijing, 22 February 2016.

93 Fellmeth, Gracia, et al., 'Health Impacts of Parental Migration on Left-Behind Children and Adolescent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The Lancet, vol. 392, 15 December 2018, pp. 2567–2582.

94 Principle 4: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 Global Compact and Save the Children,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2012, pp. 22–23.

예를 들어, 국제아동성착취반대협회(ECPAT)는 코로나19 유행 전까지 지난 10년 동안 국제 여행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여행 및 관광 맥락에서 아동 성착취는 "아동 성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점점 더 온라인 기술과 함께 산업 인프라를 이용하면서 세계적으로 번성했다"고 보고한다.[96]

여행과 관광의 맥락에서 정부, 규제 기관, 기업의 아동 성착취에 대한 캠페인과 조치가 30년 이상 지속되었다. 따라서 특히 항공과 관광 분야의 책임감 있는 기업들은 기업뿐 아니라 아동에게 제기되는 문제와 위험을 잘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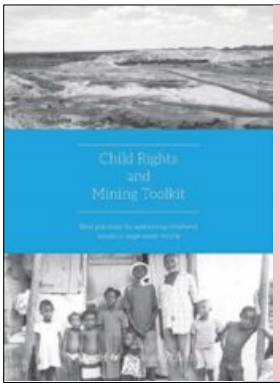

지침:

아동권리 및 광업 툴킷 (2017)은 아동권리, 영향 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환경 및 안전에 관한 지침을 대규모 광업에 맞춰 제시한다.

아동 학대와 성착취는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및 이주 노동에 의존하는 광산, 항구, 산업 개발 같이 기업 운영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근로자들에 집중적으로 의존될 때**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볼리비아에서의 유니세프 연구는 라파스, 오루로, 포토시 주의 광산 및 채굴 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성착취를 발견했다.[97] 아동 성착취는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다른 많은 광산 지역에서 보고되었다.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아동과 접촉하는 모든 기업은 그들이 책임지고 있는 인력 또는 다른 자들의 행동이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그들이 처음 인식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방법으로 아동과 접촉한다.** 아동에게 안전하지 않지만 아동이 접근할 수 있는 구역(산업폐기물, 폐기물 처리장, 광석 무더기)이 있는 시설이 있을 수 있다. 아동 고객이 있는 기업은 직원이나 계약업체가 그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 상당한 이주노동에 의존하는 기업은 성착취와 다른 형태의 착취가 번성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을 수 있다.

이 메시지는 자사의 관행이나 그들이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없다고 가정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으며 이러한 책임은 밸류체인 전체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95 UNICEF Child Rights and Business Unit, 'Child Safeguarding Toolkit for Business: A step-by-step guide to identifying and preventing risks to children who interact with your business',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May 2018, p. 4.

96 ECPAT International, 'Summary Paper on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n Travel and Tourism', ECPAT International, Bangkok, October 2020, pp. 1–2, 4.

97 UNICEF Bolivia, ICCO Cooperation and Vuela Libre, Explotación sexual comercial de niñas, niños y adolescentes y sus rutas en zonas mineras y extractivas en territorios de los departamentos de La Paz, Oruro y Potosí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its routes in mining and extractive zones in territories of the departments of La Paz, Oruro and Potosí), La Paz, Bolivia, March 2018, (in Spanish).

© UNICEF/UNI209810/Karimova

3.6 마케팅과 광고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마케팅과 광고를 사용한다(아동권리와 경영원칙 6)[98]

기존 및 새로운 마케팅 채널, 끊임없이 진화하는 기술 및 증가하는 노출은 아동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아동은 스스로 소비자로서 또한 그들 주변의 어른들을 통해 영향을 받는다. 텔레비전 시청이 아동 사이에서 여전히 인기가 있기는 하지만, 인터넷은 보완적이고 점점 더 중요한 차원을 추가하여 몰입적이고, 쌍방적이며, 통합적인 마케팅 전략을 가능하게 한다.[99]

브랜딩 및 소비자와의 관계 구축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초점이다. 마케팅 기법에 비판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은 아동 개개인의 경험치와 성숙도를 반영할 것이다. 또한 어떤 형태의 디지털 광고는 예를 들어 아동(과 성인)이 게임이나 학습에 참여할 때, 즉 비판적 사고와 의사결정 능력이 손상되는 시간에 이들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텔스 마케팅 또는 소셜 마케팅에 의해, 또는 아동이 광고의 상업적 의도를 식별할 인지능력이나 미디어 문해력(media literacy)를 아직 습득하지 못했을 경우 그 영향은 심각할 수 있다.[100]

아동 과체중과 비만은 아동권리에 미치는 현실적인 영향의 한 예이다.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의 마케팅이 아동 과체중과 비만 및 식습관 관련 다른 만성질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충분하다.[101]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6년에는 5~19세 사이의 3억 4천만 명이 넘는 아동과 청소년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이었고, 2020년에는 5세 미만 아동 3,900만 명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이었다.[102]

비만은 아동 건강, 교육 이수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심리적 영향, 호흡곤란, 골절위험 증가, 고혈압, 심장질환의 초기 표지자 및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동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동기에 습득한 식습관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아동 비만은 성인 비만, 조기 사망 및 예방 가능한 장애의 가능성 증가와 관련이 있다.[103]

---

98 Principle 6: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 Global Compact and Save the Children,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2012, pp. 26–27.

99 Garde, Amandine, et al., 'A Child Rights–Based Approach to Food Marketing: A guide for policy makers',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Geneva, April 2018, p. 14.

100 Nyst, Carly, 'Children and Digital Marketing: Rights, risks and responsibilities', Discussion Paper, UNICEF Private Sector Engagement, Geneva, April 2018, p. 10.

101 See: World Health Organization 'Set of Recommendations on the Marketing of Foods and Non–Alcoholic Beverages to Children', WHO, Geneva, 2010; Garde, Amandine, et al., 'A Child Rights–Based Approach to Food Marketing',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Geneva, April 2018.

102 World Health Organization, 'Obesity and Overweight', WHO, Geneva, 9 June 2021.

103 Garde, Amandine, et al., 'A Child Rights–Based Approach to Food Marketing',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Geneva, April 2018, p. 7.

지침:

인권에 기반한 식품 마케팅에 대한 접근법: 정책입안자를 위한 지침 (2018)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핵심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마케팅 관행이 아동권리를 존중하게 할 수 있는지를 식별한다.

기타 아동권리 중에서도 건강에 해로운 식음료 마케팅은 건강, 영양, 생존과 발달, 교육과 정보 접근에 영향을 미친다. 정책 및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동은 주기적으로 건강에 해로운 식음료 마케팅에 여전히 노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의 아동비만율이 무려 40%에 달하는 중남미에서의 유니세프 연구는 소매업자들이 아동에게 건강에 해로운 식음료를 홍보하기 위해 어떻게 낮은 가격, 홍보, 포장, 슈퍼마켓 진열대 배치로 구성된 마케팅 전략을 이용하는지를 보여준다.[104]

아동은 성인보다 건강에 해로운 식품 마케팅에 더 많이 노출되고, 하위 사회경제적 집단 사이에 사는 아동은 텔레비전, 잡지, 옥외광고 및 패스트푸드 매장의 배치와 빈도를 통해 더 많은 마케팅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마케팅은 종종 상기 집단에 도달하는 것을 명확히 목표로 하기 때문에 기존 취약성이 증폭된다. 디지털 마케팅 방법이 우려를 심화시키는 까닭은 아동 및 부모와 양육자를 정확하게 목표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105]

모유대체품의 마케팅은 마케팅이 아동(과 모성) 건강에 미치는 두드러진 영향의 또 다른 예이다.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가 2022년 발표한 8개국에서의 이러한 마케팅에 대한 연구는 부모의 불안과 열망을 악용하고 모유수유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영악한 관행을 설명한다. 이 보고서는 또한 분유회사들이 어떻게 과학과 의학을 왜곡하여 그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그들의 제품을 강하게 권하는지를 설명한다. 모유수유가 확대되면 약 80만 명의 5세 미만 아동 사망과 산모 중 2만 명의 유방암 사망을 매년 방지할 수 있다.[106]

매일 쏟아지는 미디어 메시지가 마케팅 담당자의 의도를 통해서나 정기적인 활동 과정에서의 목격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에게 전달된다. 이러한 메시지의 양과 질은 사회가 무엇인지 또는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아동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107]

제품과 콘텐츠의 마케팅 및 광고를 통해 긍정적 묘사를 촉진하는 것은 평등과 포용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광고가 고정관념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일부 국가와 주요 기업에서 점점 더 알려지고 있다. 예를 들어, 탈선입견 동맹(Unstereotype Alliance)은 미디어와 광고 콘텐츠의 유해한 고정관념을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유엔여성기구(UN Women)가 소집한 업계 주도의 규약이다.[108]

영국에서 성 고정관념에 관한 더 강력한 법률의 길을 닦은 보고서에서 광고표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6가지 범주의 고정관념을 식별했다.

1. 역할(특정 성별과 통상적으로 관련되는 직업)
2. 특성(자질 또는 행위)
3. 성 고정관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놀림
4. 성애화
5. 대상화(누군가의 신체나 신체 부위에 집중함)
6. 건강하지 못한 신체 이미지[109]

---

104 UNICE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Regional Office, 'Childhood Overweight and the Retail Environment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Synthesis report',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2019, pp. 4, 20–21.

105 Garde, Amandine, et al., 'A Child Rights-Based Approach to Food Marketing',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Geneva, April 2018, p. 45.

106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How the Marketing of Formula Milk Influences Our Decisions on Infant Feeding', WHO and UNICEF, 2022, p. 2.

107 UNICEF Gender Section, Programme Division, 'Dismantling Stereotypes to Drive Equality',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New York, 2022, p. 1.

108 Unstereotype Alliance.

109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UK), 2017, 'Depictions, Perceptions and Harm: A report on gender stereotypes in advertising – Summary report', ASA, London, 2017, p. 4.

광고와 마케팅에서의 고정관념 형성은 널리 퍼져 있으며 성별, 인종, 민족, 문화, 장애, 가족구성 등 정체성의 여러 측면과 관련된다. 차별적 고정관념은 아동의 자신감, 열망, 정신 건강을 비롯한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또한 모든 아동, 특히 소외되고 배제된 아동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소녀들에 대한 성 고정관념은 그들의 실행력 및 교육 참여와 경제적 기회 접근을 감소시킬 수 있다. 소년들은 가족 생활에 덜 관여하고 유해한 남성성을 답습하거나, 젠더 기반 폭력을 저지르는 경향을 증가시킴으로써 고정관념에 반응할 수 있다.[110]

인종, 민족, 장애와 관련된 고정관념은 또한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종종 다른 형태의 피해와 중첩된다. 예를 들어, 인종 및 민족 차별은 빈곤, 학교 중퇴율 상승, 학교 이수율 하락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장애가 있는 소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111]

3.7 환경

토지의 취득, 사용 및 환경과 관련하여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한다(아동권리와 경영원칙 7)[112]

전 세계적으로 기업 관행, 관계, 서비스 및 제품은 기후위기 원인의 핵심 요소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 특히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데 반드시 필요한 녹색 전환의 핵심 요소이다. 유니세프 보건국장 아부바카르 캄포 박사는 "지난 30년 동안 아동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데 일조했던 바로 그 경제 시스템이 기후변화를 주도하고, 아동들이 거주하고, 놀고, 등교하는 장소를 오염시키고 있는 공해를 야기하면서 이제 그들의 생존, 건강, 안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113]

© UNICEF/UN0364417/Aliaga Ticona

110 UNICEF Gender Equality, 'Promoting Diversity and Inclusion in Advertising: A UNICEF playbook',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New York, July 2021, p. 4.

111 Ibid.

112 Principle 7: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 Global Compact and Save the Children,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2012, pp. 28–29.

113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Healthy Environments for Healthy Children: Global Programme Framework, UNICEF, New York, 19 January 2021, p, iii.

에너지 생산, 제조, 시멘트 생산, 철강 작업, 전자제품 및 플라스틱, 의류 및 신발, 비료 생산, 농업(장비 운영을 위한 화석연료 사용 및 방목을 위한 산림개간 포함), 운송 등이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이다.[114]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202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 중 운송이 27%, 전력이 25%, 산업이 24%, 농업이 11%를 차지했다.[115]

아동은 성인보다 신체적으로 더 취약하고 기후 및 환경적 충격에 견디고 살아남는 능력이 떨어진다.[116] 또한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의 결과에 아동이 노출되는 정도는 놀라울 정도이다.

- 8억 2천만 명의 아동이 폭염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 4억 명의 아동이 사이클론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 3억 3천만 명의 아동이 강변(강둑) 홍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 2억 4천만 명이 해안 홍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 9억 2천만 명의 아동이 물 부족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117]

아동은 또한 성인에 비해 기후변화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질병으로 사망할 위험이 더 높다. 현재 6억 명의 아동이 특히 말라리아와 뎅기열과 같은 **벡터매개 질병**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118]

기업은 물의 주요 사용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에서 의류 산업은 도시 지역의 물 부족과 수질 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부적절하게 처리된 산업 폐수는 아동과 지역사회를 위한 지표수를 오염시킨다.[119] 글로벌 기업 관행에 중대한 변화가 없다면 이 모든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다.

오염노출 정도가 낮은 경우에도 아동은 생리적 차이로 인해 성인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최소 20년 동안 알려진 사실이다. 예를 들어, **대기 오염**과 관련하여 아동은 성인보다 2배 더 빨리 호흡하고 체중에 비해 더 많은 공기를 흡입하며, 아동 기도는 성인 기도보다 투과성이 높기 때문에 소아를 성인보다 대기 오염에 취약하게 만든다.[120]

© UNICEF/UN0688092/

114 United Nations Climate Action, 'Causes and Effects of Climate Change'.

115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Source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Last updated 5 August 2022.

116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The Climate Crisis is a Child Rights Crisis: Introducing the Children's Climate Risk Index, UNICEF Division of Communication, New York, August 2021, p. 11. On the threats to children, see also: Save the Children, 'Born into the Climate Crisis: Why we must act now to secure children's rights', Save the Children International, 2021.

117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The Climate Crisis Is a Child Rights Crisis, UNICEF Division of Communication, New York, August 2021, p. 10.

118 Ibid.

119 See: Sagris, Thomas, and Justin Abbott, 'An Analysis of Industrial Water Use in Bangladesh with a Focus on the Leather and Textile Industries', 2030 Water Resources Group, May 2015.

120 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 'Your Child's Environmental Health: How the body works – Differences between adults and children', ATSDR, November 2002, p. 1.

대기 오염은 폐렴, 천식, 소아암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전 세계 어린이의 거의 90%인 20억 명의 아동이 현재 세계보건기구 지침을 초과하는 수준의 대기 오염에 노출되어 있다.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에는 화석연료 연소, 산업 공정, 폐기물 소각 및 농업 관행뿐 아니라 자연적 과정(산불, 황사, 화산폭발)이 포함된다. 2016년에는 대기 오염이 거의 30만 명의 5세 미만 아동을 비롯한 420만 명의 조기 사망자의 원인이었다.[121]

아동은 **살충제 영향**에도 더 취약하다. 공기 중에 살포된 살충제에 노출되면, 아동은 보통 성인의 두 배 양을 흡입할 것이다. 이들은 간과 신장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같은 양의 화학물질이 성인보다 아동에 10배 더 독성이 강할 가능성이 있다.[122]

납 오염은 아동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형태의 산업 오염으로, 현재 8억 1,500만 명의 아동이 오염된 대기, 물, 토양, 음식을 통해 납 오염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123] 아동의 행위가 이들의 노출을 증가시키는 한 요소이다. 예를 들어, 놀이에는 진흙이나 물 속에서 첨벙거리거나, 바닥을 기어 다니거나, 흙 속에서 뒹구는 것이 수반될 수 있다. 이 모든 활동은 아동 학습과 건강한 발달의 보편적 요소이지만 다양한 오염물질과 독소와의 접촉을 증가시킨다.[124]

아동에게 미치는 국지적 오염 및 광업 영향

광업의 국지적 환경 영향에는 먼지, 침식, 생태 및 생물 다양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 시안화물 · 비소 · 황산 · 수은과 중금속을 비롯한 채굴과정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에 의한 토양, 지하수, 지표수의 오염이 포함될 수 있다. 환경 영향은 아동에게 호흡기, 피부, 안구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아동이 성인보다 특히 물, 대기, 토양 오염 같은 광업 활동의 국지적인 환경 영향에 더 취약한 까닭은 그들의 점진적이고 불완전한 신체 발달, 성인보다 노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오염물질을 섭취할 가능성을 훨씬 높이는 손을 입으로 가져가는 행위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위험과 경고 신호를 읽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들의 다양한 인지 발달 단계 때문이다.[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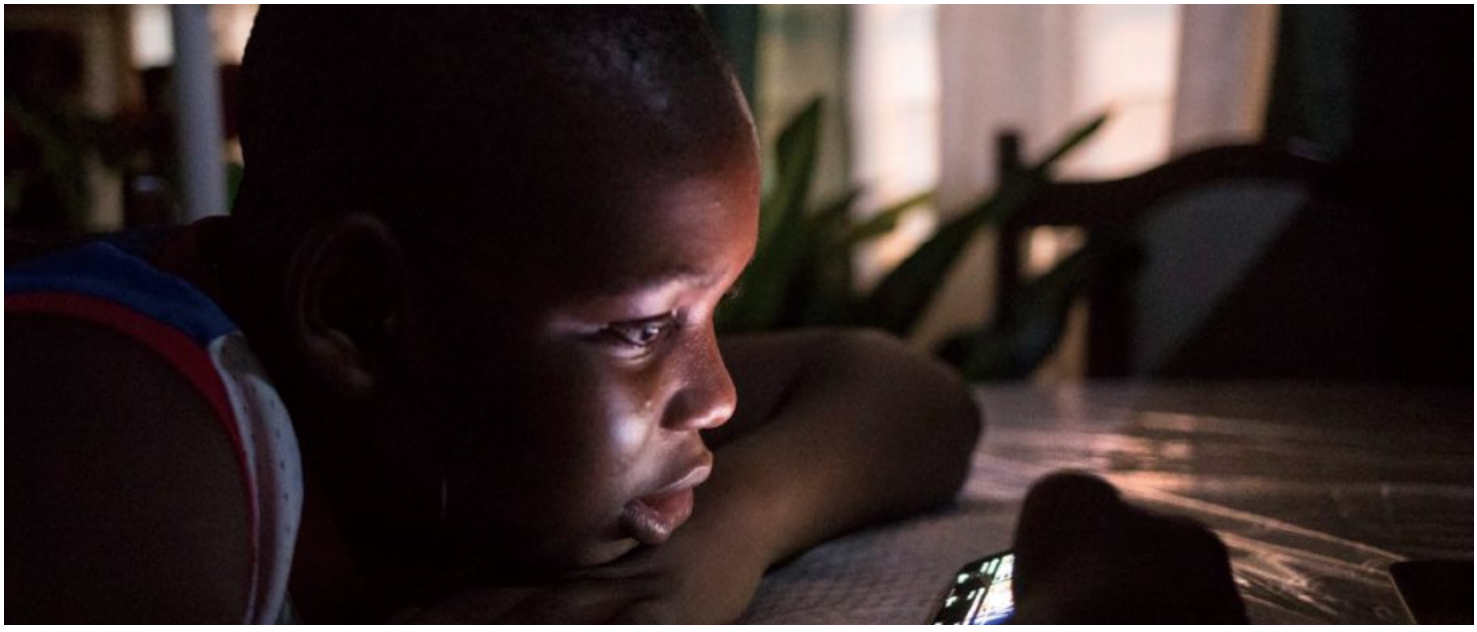

© UNICEF/UN0345667/LeMoyne

121 World Health Organization, 'Air Pollution and Child Health: Prescribing clean air – Summary', WHO, Geneva, 2018, p. 1.

122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derstanding the Impact of Pesticides on Children: A discussion paper', UNICEF. New York, January 2018, p. 5.

123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The Climate Crisis Is a Child Rights Crisis, UNICEF Division of Communication, New York, August 2021, p. 10.

124 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 'Your Child's Environmental Health: How the body works – Differences between adults and children', ATSDR, November 2002, p. 2.

125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Children's Rights and the Mining Sector: UNICEF Extractive Pilot', UNICEF, Geneva, March 2015, p. 13.

© UNICEF/UN038342/McConnico

3.8 디지털 환경

아동권리와 경영원칙의 초안에서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 시장에 적용되는 원칙 5는 디지털 기술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모든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아동권리를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진술한다.[126]

오늘날 디지털 기술은 일상 생활에 스며들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점점 더 많은 아동과 부모와 양육자가 온라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디지털 기술이 아동기를 변화시키고 있다.[127] 이러한 현실은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권리와 비즈니스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을 점점 더 중요하게 만든다.

아동은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며[128], 디지털 기술 혁신은 아동이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할 때에도 광범위하고 상호 의존적 방식으로 그들의 삶과 그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유엔 사생활권 특별보고관에 따르면 서구 국가에 거주하는 아동의 80%가 2세가 되기 전에 디지털 발자국(digital footprint)을 지닌다.[129]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의미 있는 접근은 아동에게 교육, 여가, 정보 접근, 디지털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참여 등의 큰 기회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이 인터넷에 접속할 때 특히 취약할 수 있는데, 인터넷은 누가 인터넷을 사용하는지를 연령 등에 따라 구분하지 않는 "열린 공간"이기 때문이다. 아동에 제기되는 온라인 위험은 "접촉(contact), 행동(conduct), 콘텐츠(content), 계약(contract)"을 포함하는 "4C" 프레임워크로 분류될 수 있다.[130] 기업은 방대한 규모의 디지털 환경의 개발자, 제공자, 소유자이기에 아동을 보호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 ***"디지털 환경에서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호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
>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5호(2021) 4문단

126 Principle 5: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 Global Compact and Save the Children,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2012, pp. 24–25.

127 See, for exampl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17: Children in a digital world, UNICEF, New York, 2017.

128 Byrne, J., et al., Global Kinds Online Research Synthesis, 2015–2016, UNICEF Office of Research Innocenti and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Florence, Italy, 2016, p. 6.

129 Artificial intelligence and privacy, and children's privacy: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 A/HRC/46/37, United Nations, 25 January 2021, para. 86.

130 To understand more about these risk categories, see: Livingstone, Sonia, and Mariya Stoilova, 'The 4Cs: Classifying online risk to children', Children Online: Research and Evidence, Hamburg, 2021.

기술은 지속적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기회 실현, 위험 감소, 피해 방지 사이의 최적의 균형을 찾는 과제는 정책입안자와 산업계 모두의 과제로 남아 있다.

2021 글로벌 위협 평가에서 위프로텍트(WeProtect)는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아동 성착취와 성학대 증가를 촉발하는 상황의 '완벽한 폭풍'을 일으켰다"고 보고했다. 2019년 이후 이 같은 온라인 학대 신고는 역대 최고치로 증가했으며, 온라인 그루밍(grooming) 발생률, 아동 성학대물 규모, 아동 성학대물 공유와 배포, 결제를 위한 생방송 스트리밍 등도 증가했다.[131]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업 활동은 아동권리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기업(및 정부)은 이전보다 더 많은 아동 데이터를 수집 및 처리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제25호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 디지털 환경은 수익 창출 또는 유료 콘텐츠를 목표로 개인정보 처리에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기업을 포함하며, 그러한 과정은 의도적으로 및 비의도적으로 아동의 디지털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과정의 상당수는 영리활동 공급망을 창출하는 다수의 거래 파트너를 참여시키며 아동권리 위반이나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한다. 그러한 위반이나 침해는 아동 행동을 예측하여 더 극단적인 콘텐츠로 안내하는 광고 디자인 기능,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 자동 알림 또는 잠재적으로 유해한 상업용 콘텐츠를 목표로 한 아동 개인정보나 위치 사용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다.[132]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이 설명한 이러한 요소들에 비추어 볼 때, 아동과 기술 기업 간의 엄청난 힘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아동에 대한 위험은 계속 고조되고 있다.

아동의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취약성이 더 크기 때문에 아동 데이터의 경우 성인 데이터 수집에서 나타나는 사생활과 공정성 문제가 확대된다. 이러한 한 측면은 데이터 수집 동의의 장기적 영향에 대한 아동의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감시와 추적도 아동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까닭은 아동의 평생에 걸친 노출 증가와 발달과 정체성 탐구의 시기로서의 아동기의 중요성 때문이다.[133]

© UNICEF/UN0206934/Dejongh

131 WeProtect Global Alliance, Global Threat Assessment 2021, p. 22.

132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neral comment No. 25 (2021) on children's rights in relation to the digital environment, CRC/C/GC/25, United Nations, 2 March 2021, para. 40.

133 Byrne, Jasmina, Emma Day and Linda Raftree, 'The Case for Better Governance of Children's Data: A manifesto', Office of Global Insight and Policy,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New York, May 2021, p. 4.

© UNICEF/UN0399123/Stephen/Infinity Images

제4장: 기업책임경영에 아동권리 내재화, 10년

진행 속도는 느리지만 기업책임경영에서 아동권리가 점점 더 눈에 띄고 있다. 전반적으로, 기업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기 위한 조치는 주로 아동노동과 관련된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책 레토릭과 시행 사이에는 큰 격차가 존재한다.

제4장은 주로 독립적인 벤치마킹 데이터에 근거해 대기업 관련 진행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시작한다. 그 다음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제한된 정보를 고려하여 진행속도가 더 느리다는 점을 지적하고, 기업 플랫폼이 아동권리에 대한 조치를 가속화하거나 방해하는 데 있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본 장은 이후에는 핵심 비즈니스 영향력자인 기관투자자들 사이의 일부 유망한 진전사항을 확인하고, 아동권리를 법률이나 기업책임경영을 요구하는 다른 방안에 통합하는 최근 정부 조치의 예로 마무리한다.

4.1 단일 문제 초점 또는 포괄적인 아동권리 실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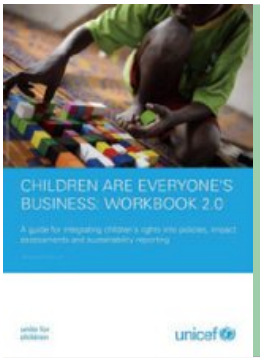

지침:

아동은 모든 이의 소관이다: 워크북 2.0(2014)은 아동권리를 정책, 영향 평가, 지속가능성 보고에 통합하는 것에 대한 포괄적 지침을 제공한다.

기업책임경영과 관련하여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다루는 2가지 별개의 접근법을 식별할 수 있다. 이들 접근법은 아동권리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이용하는 실사에 기반한, 아동에게 미치는 현저한 위험과 영향의 증거로 대략 정의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저성"은 기업 활동과 사업 관계의 가장 두드러지고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나타낸다.[134]

첫 번째 접근법은 기업이 아동과 관련된 단일 문제를 다루지만 이를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실사에 기반하지는 않는 접근법이다. 아동노동, 영양 또는 아동 성착취에 대한 많은 조치가 이와 같으며, 가족 친화 직장 정책 및 관행과 같은 "새로운" 문제에 대한 조치도 마찬가지이다.

이 접근법이 과학과 확실한 증거에 근거하게 되면, 아동에 대한 기업 관행과 운영 및 성과의 상당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단일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법은 세간의 주목을 받거나, 법규 준수, 기업에게 중요한 아동 관련 주제들을 다룰 때 주로 취해진다. 이러한 가정은 근거가 충분하고 증거와 부문 전반의 경험에 근거할 수 있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포괄적인 실사에 근거하지 않은 증거 기반 접근법도 기업 또는 사업부문의 다른 두드러진 아동권리 영향의 우선순위를 부주의하게 낮출 위험을 수반한다.

134 Shift, 'Salient Human Rights Issues'.

10년 밖에 되지 않은 오래되고 덜 일반적인 **두 번째 접근법**은 유엔이행원칙,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아동권리와 경영원칙의 개혁적 접근법에 따라 수립되었다. 이 접근법은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기업 환경 조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구제책을 통한 아동권리 실사 및 책임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이행을 수반한다*(2.2 참조)*. **이는 재계가 아동권리를 위한 전반적 원동력이 되도록 이끄는 접근법이다**.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기업 환경조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개선책을 통한 아동권리 실사 및 책임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이행은 재계가 아동권리를 위한 전반적 원동력이 되도록 이끄는 접근법이다.

점점 더 많은 기업이 실사를 수행하고 있지만, 법규준수는 여전히 기업 조치의 주요 동인으로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아동노동**에 대한 다수의 기업 조치는 실사와 아동권리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전제로 하는 조치를 수반하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따라 수립된 접근법보다는 주로 정부 규정 준수에 기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니세프가 14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족 친화 정책들이** 국제표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도 국내법이 요구하는 바를 넘어서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다수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국내법 준수가 목표였다.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예측변수는 국제 권고사항보다는 국내법에 명시된 기간이었다.[135]

아디다스와 고충처리제도

2017년 이후 아디다스는 자사 공급망의 근로자들이 아동권리와 관련될 수 있는 것 등의 고충과 우려사항을 익명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앱 기반 디지털 고충처리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아디다스는 점진적으로 이 고충처리제도 이용을 개선하고 확대했으며, 2021년에는 18개국 123개 제조시설에서 고용된 60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었으며 이는 아디다스의 전략적 제조 파트너들의 99% 포함을 반영한다.

2021년에는 거의 5만 2천건의 인권 및 노동권 고충이 접수되었으며, 99%가 연말까지 처리 완료되었다. 가장 큰 고충은 전반적 시설, 혜택, 코로나19와 관련된 건강 및 안전 문제, 의사소통에 대한 우려였다.

구제책 접근성은 기업이 실제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대리 지표이며, 고충처리제도는 연구 및 평가에서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 출처이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아동이 동 제도에 접근할 수 없는 강력한 위험이 존재한다.

비례성원칙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서 인정되고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전반에서도 존재한다.[136] 중소기업이 정기적인 영향 평가를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실용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중소기업을 위한 해결책의 한 요소는 부문별 인권 영향 평가일 수 있다. 덴마크인권연구소와 인권 및 비즈니스 연구소(Institute for Human Rights and Business)는 이와 관련하여 귀중한 지침을 마련했다.[137] 그러나 그러한 평가는 양적으로 여전히 제한되어 있으며, 평가 수행자의 신뢰성 및 권한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35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Family-Friendly Policies: A global survey of business policy', Working Paper, UNICEF, Geneva, January 2020, p. 9.

136 Principle 14: "The responsibility of business enterprises to respect human rights applies to all enterprises regardless of their size, sector, operational context, ownership and structur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OHCHR, New York and Geneva, 2011, p. 15);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 Global Compact and Save the Children,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2012, p. 8.

137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and Institute for Human Rights and Business, 'Sector Wide Impact Assessments (SWIA)', Copenhagen.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은 다음 영향을 다루기 전에 가장 현저하다고 확인된 영향에 자원을 초기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실용적임을 인식한다.[138] 그러나 그러한 집중은 포괄적인 초기 영향 평가를 전제로 해야 한다.

4.2 대기업의 아동권리 보고 및 공시

아동권리와 경영원칙이 발표된 직후인 2012년 기업 지속가능성 및 CSR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아동권리에 대한 기업 보고와 공시가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 보고를 수행할 시 성과보다는 정책과 절차를 강조했다. 긍정적 기여에 대한 보고가 우세했고 자선활동에 치중되어 있었다. 전반적 문제에 대한 논의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보고가 부족했다.[139] 보고 기업의 입장에서 아동권리는 아동노동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주로 이해되었다.

포브스 2000에서 선정된 1,032개 기업을 표본으로 한 **글로벌아동포럼 2014 벤치마크**도 유사한 상황을 제시했다.[140] 검토된 기업 중 62%가 아동노동 정책을 지니고 있었지만, 24%만이 다른 아동권리 문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오직 6%만이 아동 성착취를 언급했다.

일부 기업은 아동 대상 마케팅에 자율규제조치를 적용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그렇지 않았다. 기업의 40%가 지속가능성, CSR, 인권 또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책임을 언급했지만, 이러한 책임의 일부로 아동권리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기업은 13%에 불과했다. 7%의 기업만이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언급했으며 겨우 1%의 기업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이나 아동권리와 경영원칙을 언급했는데, 이는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이 아직 걸음마 단계였음을 시사한다.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면, **정책과 시행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있었다.** 62%의 기업이 위험 또는 중요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평가에 아동노동 및 다른 아동권리 문제를 포함한 기업은 23%에 불과했다.

5년 후에 전반적 상황은 개선되고 있었다. **2019 벤치마크**[141]는 수익 규모가 가장 큰 692개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한 결과 2014년과 2019년 검토한 기업 중 아동노동과 다른 아동권리 문제를 모두 다루는 기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42] 이제 두 해 동안 검토된 기업의 30%에서 아동권리 또는 아동노동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책임이 있었다. 아동권리 또는 아동노동을 포함한 위험성 또는 중요성 평가를 수행한 기업 비율은 38%로 증가했다.

아동에 대한 더 광범위한 영향을 인식하려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약속은 여전히 아동노동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 기업들은 부정적 영향을 다루는 것보다 아동복지에 대한 긍정적 기여에 대해 계속해서 보고했다. 아동권리 영향 관점에서 책임 있는 마케팅과 제품 책임과 같은 문제에는 거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고 있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대한 언급은 26%로 급증했지만, ILO 협약 제138호 또는 제182호(각각 3%), 유엔아동권리협약(2%) 및 아동권리와 경영원칙(2%)과 같은 아동과 명시적으로 관련된 표준을 언급한 기업 비율은 상당히 낮았다. 이는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에 대한 인식이 커졌지만 아동권리가 완전히 통합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정책 수립과 정책 시행 방법 보고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전반적으로 결론 지었다.

138 Principle 24: "Where it is necessary to prioritize actions to address actual and potential adverse human right impacts, businesses should first seek to prevent and mitigate those that are most severe or where delayed response would make them irremediabl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OHCHR, New York and Geneva, 2011, p. 26).

139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Sustainability Reporting on Children's Rights', Working Paper, UNICEF, 2012, pp. 41, 42.

140 Global Child Forum and Boston Consulting Group, 'Children's Rights and the Corporate Sector: Setting a benchmark', GCF and BCG, 2014. For all benchmarks, including regional and global, see: https://globalchildforum.org/benchmarks.

141 This was based on a sample of 692 companies, only some of which were also included in 2014 (Global Child Forum and Boston Consulting Group, 'The State of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2019).

142 GCF and BCG note that changes in methodology between 2014 and 2019 may have inflated 2019 percentage scoring, but in general trends are "real."

글로벌아동포럼 2021 글로벌 벤치마크는 수익 규모 및 지리적, 부문별 확산에 기준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2000 목록[143]에서 선정된 832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이 벤치마크는 코로나19 기간의 성과를 측정하여 2019년에 비교해 "약간의 개선"을 발견했다.[144] 기업의 84%가 아동노동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하는 등 아동노동에 계속 주요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많은 기업이 가족 친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식별되고 있는 다른 아동권리 문제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유럽과 북미의 기업들은 아동노동을 넘어 다른 아동권리 문제를 식별하고 실사를 이행하는 데 있어 가장 진보적인 경향이 있으며, 동아시아, 중남미, 카리브해 지역의 기업들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기업들은 가장 활동이 적다.

비록 기업 이사회가 환경과 기후 문제를 더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문제와 아동권리를 연계시키지는 못하고 있었다. 다른 익숙한 격차가 여전히 존재했다. 예를 들어, 아동노동 정책을 시행한 기업(58%)과 이를 보고한 기업(20%) 간 격차가 컸다. 글로벌아동포럼은 "기업 맥락에서 아동권리 문제를 파악하는 것과 정책, 프로그램, 결과에 대한 투명한 보고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데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 사이에는 격차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145]

표본추출 방법의 변경으로 인해 설문조사 사이의 진전사항이 정확한 결과보다는 일반적인 추세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글로벌아동포럼 글로벌 벤치마크는 중요한 데이터 결과이다. 게다가 두 설문조사는 최대 규모의 수익을 거둔 기업들에 국한된다. 이러한 기업들은 기업책임경영에 대해 가장 목소리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그 결과는 유용하다.

일반적으로 모든 지역의 기업들이 아동노동 반대 정책을 채택하는 비율이 증가한 반면, 유럽과 북미의 기업들은 아동노동을 넘어 다른 아동권리 문제를 식별하고 실사를 이행하는 데 있어 가장 진보적인 경향이 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기업들은 가장 활동이 적다.[146]

구제책은 가장 덜 진전된 요소로 보인다. 이는 구제책이 실사의 실제 이행을 보여주는 강력한 대리 지표이기 때문에 중대한 실상을 드러낸다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아동포럼 글로벌 벤치마크 2019는 공급업체 평가가 광범위한 고충처리제도보다 더 일반적이라 보고한다. 많은 기업이 인권 문제에 대해–항상 그렇지는 않지만–일종의 고충처리제도를 갖추고 있다(60%). 많은 경우에 그 제도는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없다. 모든 기업의 26%만이 대내외 이해관계자가 접근하여 인권 고충을 신고할 수 있는 고충처리제도를 갖추고 있다.[147]

호주 증권거래소(ASX)의 2022년 기업 연구에 따르면 S&P/ASX 200 지수 기업 중 81%가 아동노동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공시하지만, 이를 다루기 위한 구체적 구제책을 지니고 있다고 공시하는 기업은 1% 미만이다.[148]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일반논평 제16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은 일반적으로 법원이나 다른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으려 할 때 어려움에 직면한다. 또한 글로벌 기업 운영의 맥락에서 비용, 법적 지위의 부족, 그들의 권리 및 아동과 그 가족들이 이용 가능한 제도에 대한 제한된 지식, 아동과 기업 간의 힘의 불균형 때문에 특히 어렵다.[149]

---

143 World Benchmarking Alliance, 'The 2,000 Most Influential Companies'.

144 Global Child Forum and Boston Consulting Group, 'The State of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2021.

145 Global Child Forum, 'The State of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10 key takeaways', GCF, Stockholm, 2021, p. 5.

146 Global Child Forum and Boston Consulting Group, 'The State of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2021.

147 Global Child Forum and Boston Consulting Group, 'The State of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2019.

148 See: Ethical Partners Funds Management and UNICEF Australia, 'Integrating Child Rights across the ASX: A UNICEF Investor Tool Benchmarking Report', Part A and Part B, June 2022.

149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neral comment No. 16 (2013), para. 4 (c).

4.3 중소기업에 대한 제한된 데이터

중소기업은 대부분의 경제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이들은 기업의 약 90%와 전 세계 고용의 50%를 넘게 차지한다.[150] OECD에 따르면 이들은 OECD 가입국 전체 기업의 약 99%를 차지하며 일자리의 약 60%를 차지한다.[151]

중소기업이 아동권리을 비롯한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실사 및 기타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정도와 관련하여 현재 데이터의 가용성은 충분하지 않다. 이는 중소기업이 권리에 기반한 기업책임경영을 이행하는 데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152]

예를 들어, 태국과 베트남에서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 중소기업과 특히 글로벌 공급망과 연계되지 않은 국내 기업은 대기업보다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낮고 아동권리를 존중하거나 가족 친화 정책과 같은 특정 문제를 다루기 위한 조치를 이행할 가능성이 적다.[153] 게다가 중소기업이 직원 지원 정책 같은 정책을 취소하고 축소하면서 코로나19 대유행은 그동안의 진전에 찬물을 끼얹었다.

예를 들어, 2013년에 발표된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에서의 아동노동에 대한 기업 조치 관련 ILO의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에서의 실사에 대한 증거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154]

베트남의 아동권리 및 중소기업

2021년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와 유니세프는 베트남의 가장 중요한 두 산업인 의류 · 신발 부문과 여행 · 관광 부문 265개 중소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실사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도 검토에 나섰으며 핵심 도전과제와 행동 기회를 문서화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아동노동 철폐를 위한 관련 정책을 지니고 있지 않았으며 아동권리와 기업에 관한 국가 규정을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기업이 보고한 주요 문제는 자원 부족(71%), 관련 기술과 지식 부재(69%), 정부와 지역 사회(67%) 및 구매자(58%)의 충분한 지원 부재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아동권리 이행을 위한 지원을 받은 적이 전혀 없었다.

이 연구는 글로벌 구매자와 연계된 중소기업이 종종 더 나은 성과를 기록했는데 이는 공급망에서의 영향력의 힘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155]

150 World Bank,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Finance', accessed 13 October 2022.

151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ackground Note on Regulatory Developments Concerning Due Dilige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RBC): The role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OECD, 2021, p. 2.

152 Ibid., pp. 2–3.

153 UNICEF Thailand, 'Family-Friendly Policies and Practices in Thailand's Private Sector',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Bangkok, 2022; Viet 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nd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Research Report: Assessmen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children's rights in Viet Nam, VCCI and UNICEF, Hanoi, October 2021.

154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Business and the Fight against Child Labour: Experience from India, Brazil and South Africa', ILO, 2013.

155 Viet 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nd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Research Report: Assessmen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children's rights in Viet Nam, VCCI and UNICEF, Hanoi, October 2021, pp. vi, viii.

4.4 플랫폼들에 의한 이니셔티브는 변화의 원동력이거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국제 및 국가 비즈니스 플랫폼은 잠재적으로 중요한 행동 승수이며 아동권리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행동에 대한 재계의 신뢰할 수 있는 목소리이다. 플랫폼은 자율규제의 마련 및 시행 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OECD는 이 접근법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식별했다. 장점에는 규제 격차의 신속한 메움,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성 제고, 법적 요건을 넘어설 가능성, 법규준수도 향상이 포함될 수 있다(기업이 표준 개발에 참여했을 시 그러한 경우가 많다). 반면에 자율규제 제도는 타협에 기반을 두고 있어 약화될 수 있고, 준수 감독 제도가 결여되어 있으며, 정부 규제와 달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OECD는 **정부가** 자율규제 적용을 모니터링하고, 자율규제를 정부 기준과 연계시키고, 준수를 요구함으로써 **자율규제를 요구하고 지원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156]

지난 10년간 일부 산업부문별 단체들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해 기업의 지식과 조치를 촉진하는 리더로 부상했다. 반면에 다른 단체들은 중요한 조치에 반대하는 로비를 벌이거나 이행제도가 미미하거나 전무한 상당히 약한 자발적 조치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의 인권에 관한 이동통신사업자 지침에서 아동권리는 두드러지며 영향 평가, 아동 온라인 안전, 아동노동을 구체적으로 언급한다.[157]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엠파워 청년 이니셔티브(mPower Youth initiative) 는 모바일 기술이 아동의 삶에 할 수 있는 여러 긍정적인 기여와 이동통신사업자가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업행동기준을 결합한다.[158]

2018년 이후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을 위한 협의체(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의 5,000개가 넘는 회원국은 아동의 권리(와 성인의 권리)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개발 및 시행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여기에는 아동 보호 및 안전보호, 아동노동, 양질의 일자리, 교육 접근, 깨끗한 물, 위생 및 접근 가능한 개선책이 포함된다. 2020년 동 협의체는 아동권리를 더 효과적으로 포착하는 방법에 관한 공급망 내 제조사, 소주주, 행위자를 위한 강화된 해석지침을 발표했다.[159]

별개의 연구에 따르면 상기 협의체의 방안은 팜유로 인해 제기된 다양한 환경 및 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켰다. 그러나 기업들이 여전히 아동노동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 가운데 포괄적 이행은 여전히 진행 중인 작업으로 남아 있다.[160]

국가 차원에서 수십여 개의 플랫폼이 종종 시민단체 및 유니세프와 협력하여 영향 평가부터 가족 친화 정책 시행에 이르기까지 **아동권리에 대한 조치를 촉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베트남과 몽골의 상공회의소, 자그레브와 태국 증권거래소, 지속가능성 보고 템플릿을 통한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와 같은 감독기관, 볼리비아 · 콜롬비아 · 파나마의 현지 글로벌콤팩트 네트워크, 우간다의 소규모광업협회, 콜롬비아 · 도미니카공화국 · 잔지바르의 관광단체가 포함된다.

156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Industry Self Regulation: Role and use in supporting consumer interests', OECD Digital Economy Papers, No. 247, OECD Publishing, Paris, 1 March 2015.

157 GSMA, 'Human Rights Guidance for the Mobile Industry', GSMA Head Office, London, 2021. See also: #BetterFuture, GSMA.

158 GSMA and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Enhancing Children's Lives through Mobile: A guide for mobile network operators', May 2019. See, also: mPower Youth, 'Mobile Impact Areas', GSMA.

159 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RSPO Launches New Guidance to Further Strengthen Child Rights Protection', 9 December 2020.

160 Pasaribu, Stephany Iriana, and Frank Vanclay, 'Children's Rights in the Indonesian Oil Palm Industry: Improving company respect for the rights of the child', Land, vol. 10, no. 5, 8 May 2021.

이 분야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주요 국제기구의 예로는 국제사용자기구(IOE)가 있는데, 이 기구는 ILO와 함께 아동노동 문제 처리에 관한 공동 지침을 작성했다.[161]

한편, 비즈니스 플랫폼이 퇴행적인 입장을 취하는 몇 가지 예에는 멕시코의 비만 방지조치에 반대하는 로비를 한 미국 히스패닉 상공회의소[162], 이스라엘의 담배제품 광고 및 마케팅 제한법 개정안에 법적인 이의를 제기한 텔아비브 상공회의소가 포함된다.[163]

© UNICEF/UNI116998/Roger LeMoyne

161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nd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Child Labour: Global estimates 2020, trends and the road forward – Executive summary', ILO and UNICEF, Geneva and New York, June 2021.

162 SinEmbargo, La Cámara de Comercio Hispana le declara la guerra al etiquetado claro en productos chitarra (Hispanic Chamber of Commerce Declares War on Clear Labelling on Junk Products), 12 October 2020 (in Spanish).

163 The Tel Aviv Chamber of Commerce v. State of Israel – Ministry of Health et al, HC2951/19, Israel Supreme Court, 25 November 2019.

4.5 아동을 위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하는 투자자들

금융 부문에서의 아동권리에 대한 진전은 선두주자가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재된 상황에 있다.

2014년 글로벌아동포럼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책임 있는 투자자들은 아동권리에 제한적으로 초점을 맞추었고, 아동권리를 다룰 때 아동노동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는 전반적인 재계의 상황과 일치했다.[164] 그러나 일부 영향력 있는 투자자들이 이제 아동 문제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법을 수탁자 책임에 통합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노르웨이중앙은행 투자운영청(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은 기업들이 아동권리를 정책, 기업전략, 위험 관리, 보고 등에 통합할 것으로 예상한다.[165] 동 투자운영청은 처음에는 아동노동에 관심을 집중했지만, 현재는 아동권리 실사에 포괄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상기 투자운영청과 유니세프는 동료학습을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아동권리 존중 개선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의류 및 신발 기업 네트워크를 결성하는 데 협력했다.[166]

300명의 종교 기반 투자자들로 구성된 연합단체인 기업책임에 관한 범종교 센터(Interfaith Center on Corporate Responsibility)의 노력 같은 다른 예에는 기업과의 논의가 필요한 진전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의 조직적 공동실행 및 주주결의 이용이 포함된다.[167]

ESG 주주 관여 및 지속가능한 기업책임경영을 촉진하는 의결권 대리행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록시 임팩트(Proxy Impact)와 같은 단체는 투자자들과 협력해 주주 결의안을 상정했다.[168] 예를 들어, 2020년 투자자들은 애플, 페이스북, 구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인 버라이즌과 AT&T에 그들의 사업 전반에 걸쳐 잠재적 아동 성착취를 평가할 것을 촉구하는 안건을 제출했다.[169] 그 이후 버라이즌과 AT&T는 아동권리 위험 및 영향 평가를 수행했다.[170]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네덜란드 투자자협회(Dutch Association of Investors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노력: 아동 비즈니스 근절 동맹(Work: No Child's Business Alliance)과 협력하여 아동노동과 네덜란드 기관투자자의 접근법을 분석했다. 특히 이들 기관은 아동노동 시정과 방지에 대한 기업과의 소통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간주되지만 투자 배제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접근법이라는 것을 발견했다.[171] 이는 투자자들 사이의 주요 관심사가 아동을 위한 효과적 조치보다는 여전히 법규준수 및 평판 위험임을 시사할 수 있다.

유니세프와 서스테이널리틱스(Sustainalytics)는 ESG와 투자자 의사결정에 아동권리를 통합하는 것에 관한 투자자들을 위한 도구와 지침을 발표했다.[172] 투자자인권연맹(Investor Alliance for Human Rights)은 주요 아동권리 문제에 대한 정보통신기술 부문의 지침을 작성했다.[173]

---

164 Global Child Forum 'Investor Perspectives on Children's Rights', GCF, 2014.

165 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 'Children's Rights'.

166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and 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 'Network on Children's Rights in the Garment and Footwear Sector: Summary report (2017–2019)', UNICEF and NBIM, June 2020. See also: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and Article One, 'Children's Rights in the Garment and Footwear Supply Chain: A practical tool for integrating children's rights into responsible sourcing frameworks', UNICEF, June 2020.

167 Interfaith Center on Corporate Responsibility, 'About ICCR'.

168 See: Proxy Impact, 'The Power to Change Business as Usual'.

169 Investor Alliance for Human Rights, 'Sector-wide Risk Assessmen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 Salient Issue Briefing: Child rights', IAHR, 2022.

170 See: Verizon, 'Strategic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2022; AT&T, 'Issue Brief: Safeguarding children', 2022.

171 Heinsbroek, Sara, and Hester Holland, 'Child Labour and Dutch Institutional Investors: A study on incorporating child labour in responsible investment', VBDO and Work: No Child's Business Alliance, Utrecht, The Netherlands, November 2021, p. 5.

172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Tool for Investors on Integrating Children's Rights into ESG Assessment', UNICEF, 2021; 'Investor Guidance on Integrating Children's Rights into Investment Decision Making', Sustainalytics and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Hyllested, Ida, and Tytti Kaasinen, September 2019.

173 Investor Alliance for Human Rights, 'Salient Issue Briefing: Child rights', IAHR, 2022.

4.6 정부 및 법적 조치: 아동에 주목한 조치들의 "효율적 결합" 구축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서 요구하는 것처럼[174] **인권에 대한 기업 존중을 달성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기 위한 의무적이고 자발적이며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조치들의 더 강력한 "효율적 결합"**을 향한 추세가 아동권리에 대한 조치에서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자발적인 단일 사안 조치들이 여전히 우세하지만, 국가와 다른 기관의 새로운 활동들이 있다.

예를 들어 의무적 인권 실사 조치는 일부 국가에서는 아동노동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데, 독일(2021년)에서 채택된 법률이 아동노동을 유일한 아동권리 문제로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예에 속한다.[175] 네덜란드와 스위스의 실사 법률 모두 명시적 아동권리 영향으로서 아동노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176]

네덜란드 법률은 정부 주도의 자발적 약정 접근법으로 보완된다(p.25 참고). 각 협정은 서로 다르며 아동권리에 다양한 수준의 가시성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책임 있는 금채취 협정(Responsible Gold Agreement)은 아동권리와 경영원칙을 언급하고, 지속가능한 의류 및 섬유 협정(Sustainable Garments and Textile Agreement)은 아동노동 철폐를 우선과제로 삼았으며, 보험 부문에서의 국제책임투자협정(Agreement on International Responsible Investment in the Insurance Sector)은 가장 멀리 나아가 아동권리에 대한 ESG를 위한 툴키트를 제공했다.[177]

일부 정부는 또한 업계와 협력하여 자발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정부는 자발적 원칙 방안의 일환으로 다중 이해관계자 산업 실무그룹을 이끌어 채굴기업을 위한 아동권리 및 안전에 관한 점검목록과 지침을 마련했다.[178]

중남미에는 새로운 법적 조치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주인권재판소의 최근 판결은 미주인권협약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국가 의무를 이용하여 기업 활동의 맥락에서 아동권리 보호를 다룬다.[179]

©UNICEF/UN0665310/Bidel

174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Commentary on Principles 3 and 10, OHCHR, New York and Geneva, 2011, pp. 5, 12.

175 Supply Chain Due Diligence Act (Germany), 2021.

176 Child Labour Due Diligence Act (Netherlands); Ordinance on Conflict Minerals and Child Labour (Switzerland).

177 Agreement on International Responsible Investment in the Insurance Sector, ESG Investment Framework for the theme: Children's Rights (Netherlands), Version 2020.

178 UNICEF Canada, 'Child Rights and Security Checklist', 2017;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Child Rights and Security Handbook: An implementation companion to the Child Rights and Security Checklist', 2018.

179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Case of the Hacienda Brasil Verde Workers v Brazil (Judgment of October 20, 2016), and Case of the Workers of the Fireworks Factory in Santo Antonio de Jesus and their Families v Brazil (Judgment of July 15, 2020).

© UNICEF/UN0673616/Andrianantenaina

제5장:
특정 아동권리 주제 관련 진전사항

본 장에서는 기존의 또는 새롭게 등장한 아동권리 주제 4가지와 관련된 진전사항을 살펴보며, 선정된 다음 내용에 초점을 맞춘다.

- 아동권리와 기업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 (아동노동)
- 성인과 관련된 기업경영이 아동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양질의 일자리와 가족 친화 정책)
- 현재 접근법(아동안전보호)의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
- 기업 관행과 일상생활(아동과 디지털 환경) 모두에 스며들어 있는 주제의 전략적 중요성

5.1 아동노동 철폐

아동노동을 방지하고 완화하려면 국가와 기업은 아동권리를 보호할 의무와 존중할 책임을 각각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집단적이고 보완적 조치가 필요하며, 기업 간 협력과 여러 결합된 조치 중 중요 부분인 시민사회의 행동이 필요하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과 아동노동 문제를 다루기 위한 다수의 지침은 이러한 보완적 역할을 분명하게 명시한다.[180]

기업 관행 및 운영은 아동노동과 복합적인 관련성이 있다. 많은 기업이 아동노동 정책을 수립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최소한 자사의 운영 및/또는 공급망에서 기업의 아동 고용 금지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일부 정책에서는 작업장과 공급망에서 아동노동을 근절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도 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근거한 정책은 실사를 수반하며 구제책을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아동포럼 벤치마크 데이터는 아동노동에 대한 정책 보유와 아동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실사 및 구제책 실시 간에 격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아동노동에 대한 기업 조치를 유발하는 동인이 아동권리 존중을 위한 조치 이행보다는 법규준수라는 점을 시사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뤄진 한 가지 기업 발전은 아동노동 문제의 식별 · 모니터링 · 개선을 위한 제도의 창출로, 이는 주로 아동노동 문제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부문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의해 이뤄졌다. 가장 발전된 제도 중 일부는 코코아 부문에서 국제 코코아 이니셔티브(International Cocoa Initiative)의 지원하에 수립되었다.[181]

모니터링과 보고 체계의 범위와 구조 및 아동보호를 위해 구축된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 대한 여러 사안이 있다. 취약한 제도적 환경에서 발전한 아동보호 제도로부터 얻은 중요한 교훈은 특정 범주의 아동 또는 특정 유형의 학대에 기반한 제도가 흔히 비효율적이며 차별적이라는 점이다. 기업 주도 방안에서 이 제도는 특정 부문에서 일하는 아동 문제만 배타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 형태를 띠며, 더 넓은 지역사회의 아동은 무시한 채, 한 산업부문에서 다른 산업부문으로의 아동 이동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180 See, for example: Alliance 8.7 Knowledge Hub, 'Delta 8.7';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nd 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Employers, 'ILO–IOE Child Labour Guidance Tool for Business', ILO, Geneva, 15 December 2015; UNICEF Child Rights and Business, 'Child Labour and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A guidance note for action',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Geneva, June 2022.

181 International Cocoa Initiative, 'Effectiveness Review of Child Labour Monitoring and Remediation Systems in the West African Cocoa Sector', July 2021.

지침:

비즈니스를 위한 아동노동지침도구(2015)와 ***아동노동과 기업책임경영: 행동을 위한 지침노트***(2022)는 기업이 아동노동을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다룰 수 있는 방식을 소개한다.

한편 우수한 제도는 기업별 특정 실사 및 조치를 다른 행위자와 조율하고 공공제도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결합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여기에는 공공 정책과 프로그램의 설계, 목표 설정, 모니터링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 공유, 가능한 경우 예방, 완화, 구제책 중재를 위한 자금 지원 등의 공공서비스 활용이 포함될 수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포괄성의 정도를 비롯해, 현저성을 전제로 한 실사에 의해 문제가 파악되는 정도이다. 지역 기반 접근법은 사업부문 기반 접근법에 비해 아동 보호에 더 효과적이다.

기업 운영 또는 공급망에서의 아동노동 위험성을 인식하는 회사는 더 포괄적인 아동권리 실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동노동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 아동권리 침해의 원인은 대체로 상호 연계되어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된다. 흔히 그 원인은 기업이 운영되는 사회 · 경제 · 제도적 환경에 깊이 내재되어 있다.

조혼, 이주 또는 성착취와 같은 다른 문제는 일부 아동을 노동으로 이끄는 동일한 요인에 의해 야기될 수 있고, 기업 활동이 이에 일조할 수도 있다. 가령, 빈곤은 아동노동과 조혼의 주된 원인이고, 구매 관행과 임금 체계, 고용 조건이 빈곤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동노동을 운영과 공급망에서 제거하는 등 아동노동 철폐의 성공은 아동에 대한 기업의 부정적 영향을 측정 및 다루는 포괄적 접근법을 요건으로 한다. 아동노동에 국한해 좁게 정의된 실사는 아동노동이나 다른 형태의 아동권리 침해의 예방 또는 철폐를 위한 지속가능한 방법이 아니다. 또한 교육과 사회 보호 등 보호와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는 제도를 구축하려면 기업 조치가 더 광범위한 다수 이해관계자의 방안과 통합되어야 한다.[182]

일단 문제의 현저성이 정해지면, 그 다음 우선순위는 자원 할당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즉, 우선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사항을 해결하고 난 뒤 덜 현저한 다른 영향으로 이동한다. **기업이 가장 현저한 문제에 지속적 예방을 이끌어내는 식으로 중점을 두게 되면, 이를 통해 기업의 인권 실사, 공공정책, 국제개발을 가장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방법이 창출된다.**

아동노동 철폐의 성공은 아동에 대한 기업의 부정적인 영향을 측정 및 다루는 포괄적 접근법을 요건으로 한다. 아동노동에 국한해 좁게 정의된 실사는 아동노동 또는 다른 형태의 아동권리 침해의 예방 또는 철폐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니다.

© UNICEF/UN064360/Feyizoglu

182 UNICEF Child Rights and Business, 'Child Labour and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A guidance note for action',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Geneva, June 2022.

5.2 가족 친화 기업 정책과 관행 지원

더 많은 기업과 정부가 근로 조건과 고용관행이 성인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동에게도 상당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인식하고 있다. 근로와 양육 간에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점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첨예하게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고중소득국에서 직장문화를 재고하게 되었다.[183] 가족 친화 정책은 데이터상 이직률 하락과 결근 감소, 근로자 생산성 향상을 보여주고 있어, 이 우수한 정책을 지지할 만한 기업적 이유는 충분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184] 가족 친화 정책의 형태와 범위는 또한 입법과 시행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소르와테: 규모 잠재력이 있는 민관 협업

르완다에서 최대 규모의 차 생산업체인 소르와테는 하루 기준 대략 2,285명을 고용하며 협동조합으로 결성된 6,500명의 차 재배업자들이 이 공장에 의존하고 있다. 주변 지역사회의 약 9,140 가구가 차 공장으로부터 사회적 • 경제적 혜택을 얻고 있다.

소르와테는 유니세프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차 농장이 운영되는 구역 주변에 영유아발달(ECD) 센터 4곳을 설립할 수 있었고, 차 공장 주변 지역사회에 8개 유치원도 설립했다. 엄마들은 자녀들을 숙련된 전문 보육인에게 맡기고, 인근 차 농장과 공장에서 자신의 일에 전념하기도 했다. 아동 친화적인 시설은 부모가 일하는 동안, 자녀들은 쉬면서 놀고 학습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소르와테의 성공적인 운영은 유니세프가 이 이니셔티브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했다. 르완다 정부와 함께, 규제기관인 국립농산물수출개발위원회를 통해 모든 차 생산업체에서 영유아발달센터의 확대를 지원했고, 광업 및 벼농사 부문에서 영유아발달센터 설립을 지원했다.

가족 친화 직장 정책과 관행은 양질의 일자리와 관련된 핵심 사항이다. 여기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 유급 육아휴직
- 가족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생활임금
- 양질의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
- 유급 병가
- 모유수유 및 영양 지원
- 아동수당 및 적정 가격에 접근 가능한 양질의 보육
- 탄력근무제, 초과근무 및 적정 근로시간 규정

지난 5년 여에 걸쳐 규제기관과 기업의 많은 관심이 있었음에도, 격차는 여전히 상당하다.

14개국 다국적 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유급 출산휴가가 가족 친화 정책으로 가장 폭넓게 실시되고 있는 지원으로 밝혀졌지만, ILO가 권고한 18주를 기준으로 하면 그 기간과 보수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185] 출산휴가는 일반적으로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절반 미만의 기업들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공하며, 그러한 경우라도 기간이 상당히 제한된 경우가 많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 중 39%만이 모유수유에 대한 지원을 하며, 그런 경우 휴식시간의 형태로 지원한다. 모유 수유하는 엄마를 지원하는 더 포괄적인 프로그램은 전무했다.

적정 가격에 접근 가능한 양질의 보육은 가장 정책이 미흡한 영역으로 현금지원이 가장 일반적이었다. 비공식 경제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족을 위한 양육 지원 프로그램에 큰 격차가 있다는 점도 중요한 내용이다.

183 Beck, Julia, '4 Strengths of Family-Friendly Work Cultures', Harvard Business Review, 14 September 2020.

184 See, for example: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and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Family-Friendly Workplaces', UN Global Compact and UNICEF, 2020.

185 ILO's Maternity Protection Convention, 2000 (No. 183) defines a minimum international standard of 14 weeks paid maternity leave while ILO Maternity Protection Recommendation, 2000 (No. 191) suggests that maternity leave should be 18 weeks.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Family-Friendly Policies: A global survey of business policy', Working Paper, UNICEF, Geneva, January 2020, p. 9.

적정 가격에 접근 가능한 양질의 보육은 가장 정책이 미흡한 영역으로 현금지원이 가장 일반적이었다.[186] 검토된 다국적 기업의 60% 정도가 육아휴직에 대한 공개된 정책이 있었지만 보육이 포함된 경우는 30% 미만이었다. 보육에는 현장 보육, 외부 제공자와의 협업, 지역사회 기반 모델 지원뿐만 아니라 근로자 보육지원금 또는 당사 정책상 모유수유 규정 등이 포함된다. 지원이 있더라도 적용 대상자는 대부분 본사 사무실에 국한된다. 더욱이 정책은 흔히 특정 범주의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단기 계약직원이나 공식적으로 "직원"이 아닌 경우는 제외되었다.[187] 비공식 경제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족을 위한 양육 지원 프로그램에 큰 격차가 있다는 점도 중요한 내용이다.

가족 친화 정책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 다국적 기업일지라도 그러한 정책을 자사의 공급망 표준과 프레임워크에 내재화시키는 데 실패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예를 들어, 세계 벤치마킹 연합이 2020년 조사한 내용을 보면 36개 의류 · 신발업체를 분석해보니 오직 한 기업만이 출산휴가 규정을 공급업체 요건으로 명시했다.[188]

지침:

가족 친화 직장: 글로벌 공급망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과 관행(2021) 및 ***비공식 경제의 근로자를 위한 가족 친화 정책***(2021)은 정부와 기업에 제안과 지침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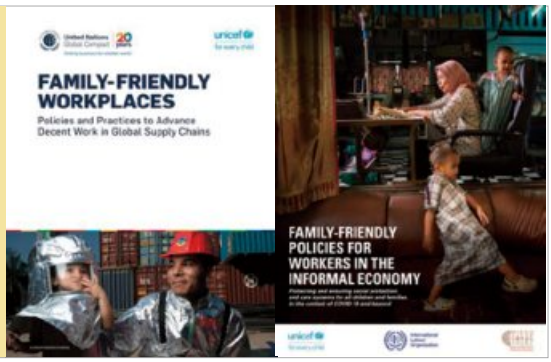

직업안전과 보건, 환경오염, 아동안전보호 등 직장에서의 도전과제에서 뿐만 아니라 임금이 생활 조건과 아동을 위한 기본 서비스 접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노력 면에서도 기업 조치가 뒤처진 상태이다.

지역 차원에서 중남미는 최근 몇 년 동안 어느 정도 진전을 보였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는 가족 친화 정책과 관행의 선구자로 해당 이니셔티브는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파라과이의 일부 기업은 지난 2년 동안 모유수유실과 직장 내 탁아소 운영을 도입했다. 육아휴직은 콜롬비아와 도미니카 공화국까지 확대되고 있다.

© UNICEF/UN0292119/Sokol

186 Ibid., p. 7.

187 Ibid., p. 9.

188 World Benchmarking Alliance, '2020 Gender Benchmark Baseline Assessment', 27 September 2020.

© UNICEF/UN0315744/Sokol

5.3 아동안전보호

몇몇 관할권에서 **아동안전보호는 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정책 접근법의 초석이다.** 국립 및 사립 학교, 스포츠 클럽, 사회봉사기관, 지방정부, 기타 공공분야 기관 등 아동과 접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법적 선관주의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핵심 요소이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법적 의무에 학대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기관 요건으로 포함되어 있다. 레고 그룹, 피어슨, 텔리아와 같은 기업들은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내용을 구체적 행동으로 옮기는 방식을 취하면서 자발적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선구자가 되었다.

기업에서의 아동안전보호는 걸음마 단계에 있으며, 모든 형태의 아동학대에 대한 국제 조치를 토대로 습득해야 할 중요한 교훈과 적용해야 할 기준이 여전히 남은 상태이다. 예를 들어 여기에는 동의 연령에 대한 국내법의 허점을 허용하지 않는 연령기준이 포함되는데, 일부 관할권에서는 동의 연령이 너무 낮게 설정될 수 있다.

본 보고서 연구 조사에서는 일부 관할권에서 공공기관 또는 비정부기구에 적용되는 요건에 상당할 정도의 기업에 적용되는 법적 아동안전보호 요건을 발견하지 못했다. 많은 기업이 아동과 접촉하는 정도를 고려하면 이 점은 심각한 법적 허점으로 보인다. 기업에 의한 아동안전보호는 규제기관과 기업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접근법이다.

텔리아의 여정

2015년 중요성 평가를 실시한 후, 텔리아는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수의 기업 이해관계자에 중요하다는 점과, 온라인 안전, 온라인상 유해한 영향의 예방, 디지털화를 통한 아동의 역량강화가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인정했다.

2016년 텔리아는 아동권리와 경영원칙을 준수하는 데 전념했고,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권리 및 비즈니스 센터(Centre for Child Rights and Business)와의 협력하에 처음으로 아동권리영향평가(Child Rights Impact Assessment)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아동권리를 명시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중점 분야로 정의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아동을 명백한 이해관계자 집단으로 규정하는 것과 발전, 평가, 법규준수 제도, 정책리뷰, 위험분석 및 보고를 위한 중요 분야의 식별이 포함된다.

텔리아는 온라인 생활에서 아동이 직면하게 되는 기회와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매년 아동자문패널(Children's Advisory Panel)을 통해 정기적으로 아동과 소통한다. 또한 텔리아는 아동권리단체와 협력하여 전문가의 전문지식을 제공한다. 2022년 텔리아는 유니세프가 개발한 MO-CRIA* 체계를 사용하여 새로운 영향 평가를 시작했다.

이 작업은 텔리아 이사회의 지속가능성 감독에 통합되어 있으며, 그룹경영진 구성원이 이끈다. 아동권리 책임자는 텔리아의 모든 시장에서 이 활동을 수행한다. 회사는 아동안전보호를 위해 주류 접근법을 채택했고, 아동권리 요소를 기존 정책에 통합하면서 회사 전 과정에서 이러한 경향이 주류가 되게 했다.

텔리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2021년 지속가능성 연차보고서를 참조하면 된다.

* 유니세프, 'MO-CRIA: 이동통신사업자를 위한 아동권리영향자체평가도구(Child Rights Impact Self-Assessment Tool for Mobile Operators), 2판, 2021.

5.4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권리

아동권리와 경영원칙이 발표된 때는 페이스북(현재 메타)이 창립된 지 불과 8년차였고 스냅챗은 1년, 틱톡은 4년 후에나 등장하게 되는 시기였다. 인터넷 밸류체인에서 기업의 성장 속도는 오늘날 안고 있는 문제의 전조를 나타내며, 여기에는 일부 법제도가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이 포함된다.[189]

2019년은 월드와이드웹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30주년이 되는 해로, 최근 수십 년 동안 디지털 기술의 확산으로 아동기에 얼마나 대단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150개국의 학교가 완전히 문을 닫으면서, 디지털 연결성과 기기에 대한 의미 있는 접근과 관련하여 아동에게 닥친 기회와 위험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190]

또 다른 주요 사례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2021년 3월 디지털 환경과 관련하여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25호를 발표한 것이다. 이 일반논평에서 "모든 아동의 권리는 디지털 환경에서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실현되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기업 영향과 관련된 국가 의무를 명확히 밝혔다.[191]

"기업은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디지털 환경과 관련하여 아동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시정해야 한다. 당사국은 기업이 그들의 책임을 다하도록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5호(2021) 35문단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디지털 관행에 아동의 권리를 진정으로 통합하고자 행동에 나섰는가?

업계 플랫폼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들은 온라인상 아동 보호와 더 광범위한 온라인 안전 문제와 관련된 난제를 정조준했다. 테크 연합(Tech Coalition)의 '업계투명성을 위한 자발적 프레임워크(Voluntary Framework for Industry Transparency)'[192]와 페어플레이 연합(Fair Play Alliance)의 '온라인 게임의 혼란과 피해(Disruption and Harms in Online Gaming)'[193]가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준다.

레고 그룹

레고 그룹은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아동권리와 경영원칙의 이행을 약속한다.

레고 그룹의 정책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책임 있는 마케팅, 아동안전보호, 디지털 아동 안전, 책임경영원칙을 포괄하며, 밸류체인 전반의 가족 친화 정책 지침 등 아동과 노동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대수준을 정하고 모범사례를 만든다. 이러한 정책을 지침으로 삼아 레고 그룹은 전면적인 아동권리 실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이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세계 및 지역 수준의 영향 평가와 밸류체인 전반에서 발견되는 사실을 통합하여 보고하는 체계까지 포함된다.

레고 그룹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와 안전에 대해 주력하는 부분은 온라인상 아동 보호를 넘어, 책임 있는 디지털 시민이 되도록 아동과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즐거운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올바른 디지털 습관을 습득하고 온라인에서 번성하도록 돕는 활동까지 확대된다.

189 WeProtect Global Alliance, 'Global Threat Assessment 2021', p. 29.

190 UNICEF Data, 'COVID-19 and School Closures: One year of education disruption',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New York, March 2021.

191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neral comment No. 25 (2021) on children's rights in relation to the digital environment, CRC/C/GC/25, United Nations, 2 March 2021, para. 4.

192 Tech Coalition, 'TRUST: Voluntary Framework for Industry Transparency', June 2022.

193 ADL Center for Technology and Society and Fair Play Alliance, 'Disruption and Harms in Online Gaming', December 2020.

하지만 다양한 업계 벤치마크에서 얻은 통찰력과 발견된 정보를 보면 더 넓은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진전 양상은 그다지 양호하지 않다.

2022년 글로벌아동포럼의 "기술 · 텔레콤 심층연구(Tech & Telecom Deep Dive)"는 정책 및 약속과, 그에 대한 공시된 시행이나 이행 방식 간에 불일치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여기에는 아동에게 미친 영향의 유무도 포함된다.[194] 연구 대상인 3가지 영향력 영역 중에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일부 영향력을 포착하는 "마켓플레이스"는 최저 점수를 보였다. 평가 대상 기업의 64%가 제품 안전에 대한 보편적 정책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아동을 언급한 기업은 20%에 불과했다. 영향력 분야의 전반적으로 저조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밝혀진 내용을 보면 산업 분야 간 격차가 크고, 통신업계가 이 부문을 주도하고 있다.

글로벌아동포럼의 평가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아동을 제품과 서비스의 의도적 사용자이든, 비의도적 사용자이든 간에 신중한 고려를 요하는 확실한 이해관계자 집단으로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세계 벤치마킹 연합이 2020년 처음으로 실시한 디지털 포용성 평가(Digital Inclusion Benchmark)는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하면서, 모든 기술기업이 아동 안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만 온라인상 아동 보호에 높은 강도의 의지를 보인 기업은 평가 대상 100개 기업 중 16개에 불과했다고 결론 내린다.[195]

이러한 실망스러운 결과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더 넓은 성과에서도 나타나며, 이는 권리 기반 접근법의 수용과 관련해 이 부문의 기본적 준비 상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예를 들어, 2021년 디지털 포용성 평가는 평가 대상 150개 기업 중 자사의 사업 관행에 인권 관련 위험 요인과 영향을 식별 및 평가하여 통합하는 기본적 과정을 갖춘 기업이 15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196]

현재까지 업계의 미온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심지어 몇 달) 동안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권리를 포함한 인권 보호를 위해 업계를 규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움직임에 가속이 붙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UNICEF/UN0378283/Panjvani

194 Global Child Forum, 'The State of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2022: Tech & telecom'.

195 World Benchmarking Alliance, '2020 Key Finding: Online child safety should be a concern of all technology companies, but it isn't'.

196 World Benchmarking Alliance, '2021 Digital Inclusion Benchmark', December 2021.

디지털권리순위(Ranking Digital Rights)가 발표한 2022년 빅테크 스코어카드(Big Tech Scorecard)는 14개 디지털 플랫폼[197]을 대상으로 기업 지배구조, 표현 및 정보의 자유, 사생활과 관련된 수백 가지 지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고, 공개 검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플랫폼들은 자사의 인권실사 수행, 온라인 콘텐츠 조정, 알고리즘 체계 검증 및 배치, 개인정보 사용 등의 방식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198] 한편, 디지털권리순위는 2015년 지표를 처음 평가한 이래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많은 기업들이 기업 지배구조 관행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현재까지 업계의 미온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심지어 몇 달) 동안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권리를 포함한 인권 보호를 위해 업계를 규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움직임에 가속이 붙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22년에 도입된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시장 등 '중개 서비스(intermediary services)'를 유럽에서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세웠다. 이 법은 아동을 겨냥한 표적광고 금지와 아동권리 등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위험성 평가 실시 의무화를 담고 있다.[199] 디지털서비스법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면서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세우게 될 것이다.[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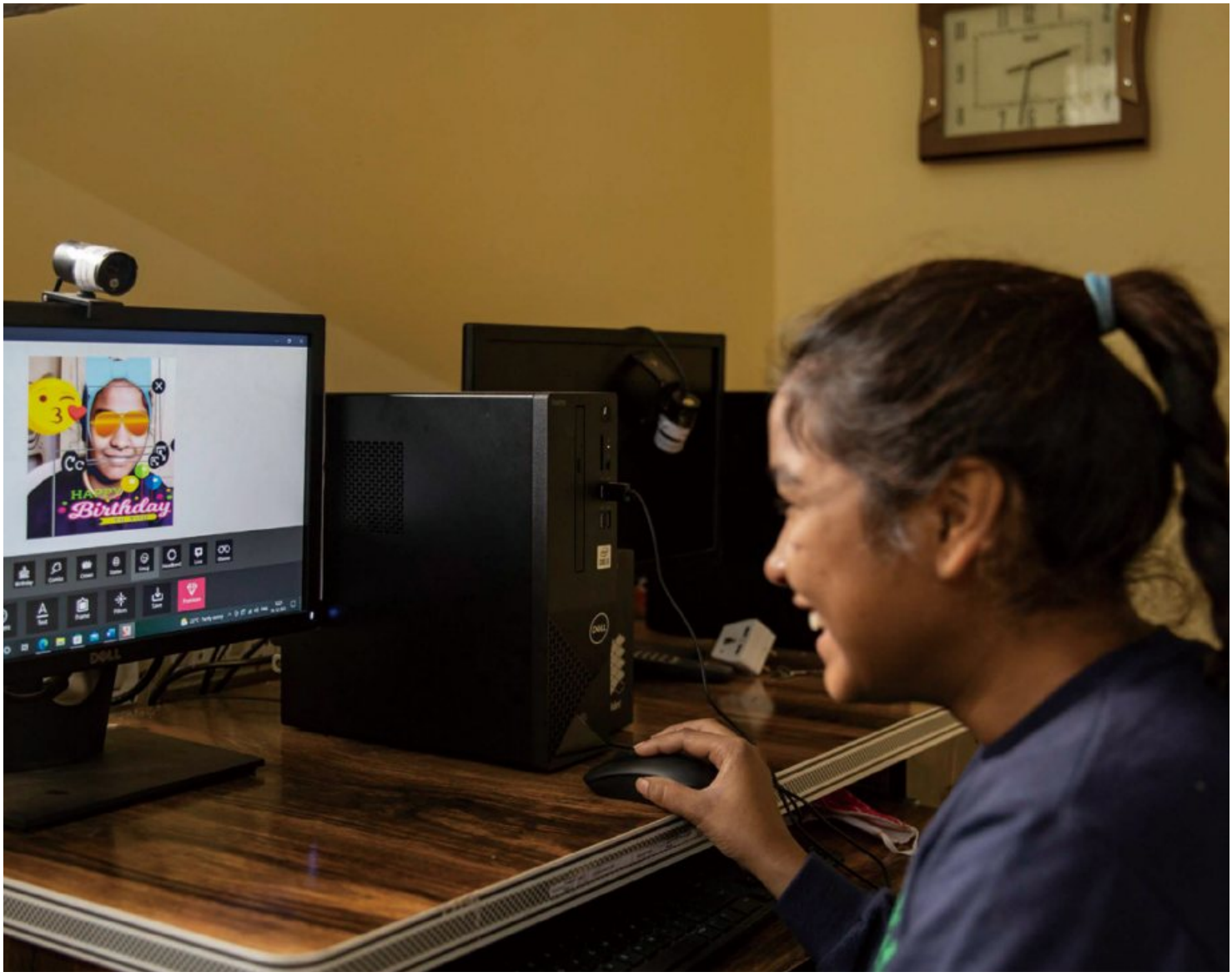

© UNICEF/UN0570184/Altaf Ahmad

197 The 14 digital platforms evaluated are: Twitter, Yahoo, Microsoft, Google, Meta, Apple, Kakao, Yandex, Baidu, VK, Alibaba, Samsung, Amazon and Tencent.

198 Ranking Digital Rights, 'The 2022 Ranking Digital Rights Big Tech Scorecard: Executive summary'.

199 European Commission, 'The Digital Services Act: Ensuring a safe and accountable online environment'.

200 Vosloo, Steven, 'EU Digital Services Act: How it will make the internet safe for children', World Economic Forum, 20 June 2022.

2020년 영국에서 발표된 연령적합설계규약(Age-Appropriate Design Code) 등 다른 사례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규약에서는 아동 최선의 이익 채택, 데이터 최소화, 아동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의 경우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등 15가지 원칙을 제시한다.[201] 2022년 9월 (동 영국 규약에서 착안된) 캘리포니아 연령적합설계규약법이 제정되었고 2024년 7월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은 아동의 사생활 보호와 온라인 안전 보호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게 될 것이다.[202]

위험과 기회, 안전과 사생활, 또는 보호와 역량강화 간의 적정한 균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답을 찾지 못한 채 여전히 남아 있다. 하지만 자발적인 업계 방안에 더해, 이러한 규제 노력이 기업 관행을 지속적으로 대폭 개선하는 데 중요하다는 공감대는 커지고 있다.

PLDT의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여정

PLDT[203]는 필리핀 최대 통신 및 디지털 서비스 통합 서비스업체이다. PLDT의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여정은 필리핀 내 온라인 아동 성착취 및 성학대 예방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작되었다. 온라인 착취 및 학대 문제에 대한 회사의 인식이 증대되면서,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권리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의 자문을 받기 시작했다. 목표는 온라인에서 아동 성착취와 성학대 및 기타 온라인 폐해로 인한 다양한 위험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아동권리에 대한 이러한 초기 조치의 결과로 PLDT는 아동권리와 안전보호 노력을 다양한 팀과 기능에 걸쳐 제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여러 부서에 분산하고 협력적 다기능팀을 구성했다. 특히 PLDT 이사회 의장과 PLDT 사장 및 최고 경영진 등 고위 경영진의 지원과 방향 제시는 아동권리를 자사의 핵심 사안으로 인식하게 하는 강력한 동인이 되었다.

2021년 초 PLDT는 이동통신사업자를 위한 아동권리영향자체평가도구(Child Rights Impact Self-Assessment Tool for Mobile Operators, MO-CRIA)의 최신 버전을 사업체(해당하는 경우 이동통신 운영 및 유선 부문) 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고, 해당 도구의 실제 사용과 관련된 피드백을 유니세프에 제공했다. MO-CRIA 자체평가 과정은 밸류체인과 공급망 관리 등 회사의 더 많은 운영 영역에 아동권리를 통합 및 확장하는 구체적 계획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기본 틀을 PLDT에 제공했다.

201 International Commissioner's Office, 'Introduction to the Age Appropriate Design Code'.

202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AB-2273 The California Age-Appropriate Design Code Act (2021-2022).

203 Reference to PLDT, Inc. includes PLDT and Sm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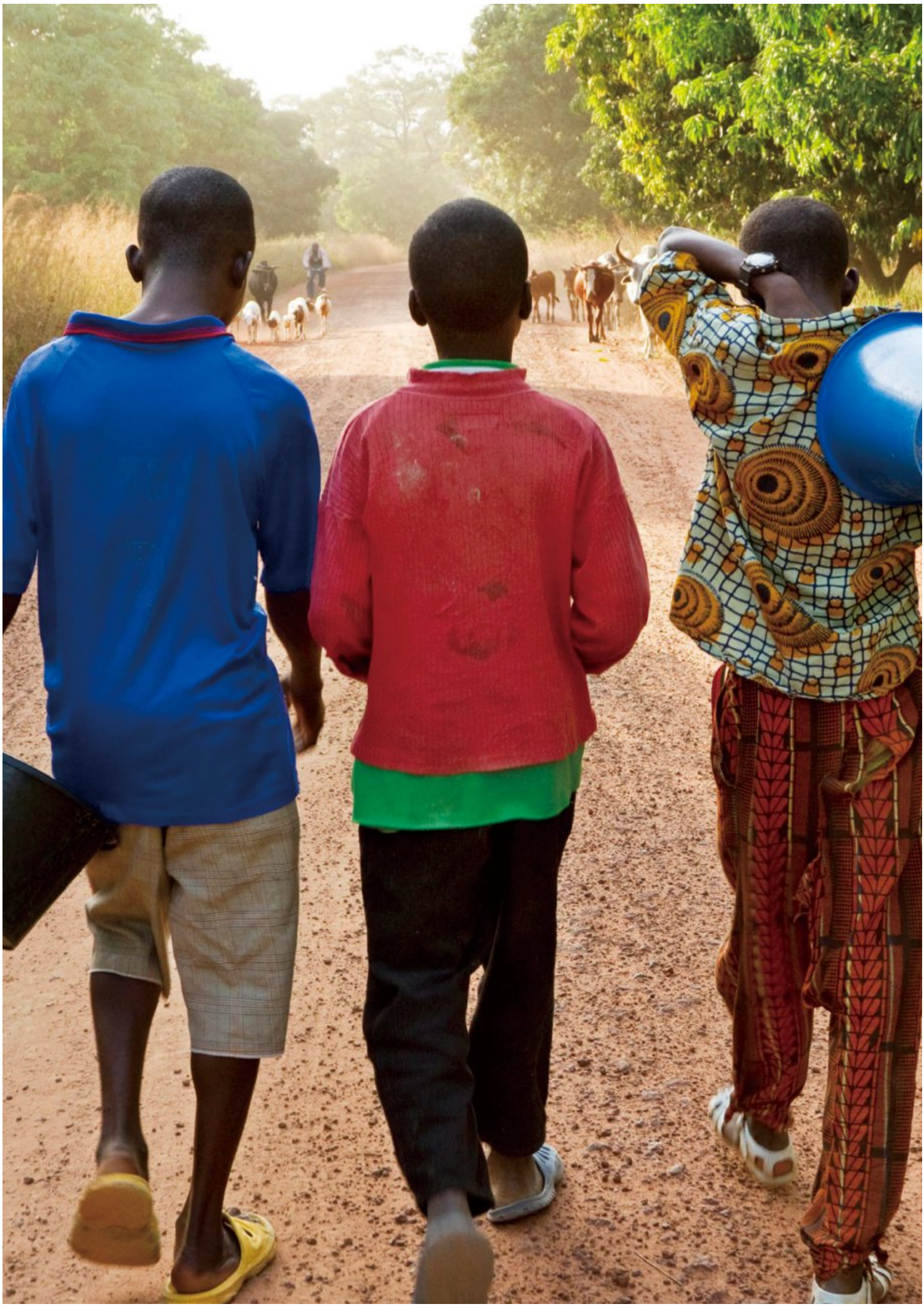

© UNICEF/UNI179423/Lynch

제6장: 향후 10년을 위한 경로 개척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생태계에는 정부, 투자자와 금융기관, 비즈니스에 영향을 받는 개인과 집단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 간의 관계가 얽혀 있다. 그러한 관계는 또한 법과 관행, 사회적 규범, 기타 요소의 기본 체계 내에서와 사이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아동권리를 기업책임경영에 통합하려는 시도를 가속화하려면 이 체계 전반에 걸친 일관된 조치가 필요하다.

제6장은 일련의 기업 조치 전반의 3가지 주요 작업의 규명으로 시작하고, 뒤이어 실사와 구제책 접근 모두를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와 기업 체계에서 필요한 활동의 개요를 설명한다. 그런 다음 인권과 아동권리의 완전한 통합을 보장한다는 목표하에 모든 당사자가 아동과 모든 소외된 집단을 행동의 최전선에 둘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6.1 3가지 상호 의존적 조치를 수립하는 법과 기준 및 관계

법과 기준에 따라 구축된 관계 속에서, 기관이 참여하는 3가지 상호 의존적인 조치를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각 조치는 상호 보완적이며 3가지 범주의 조치가 모두 아동을 위한 양질의 조치를 개선하고 대규모로 이행에 박차를 가하는 데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들은 함께 작용하면서 서로를 강화한다.

첫 번째 범주의 조치는 자발적 조치이든 의무적 요건이든 간에 기업이 직접 조치를 취하는 것을 수반한다. 핵심 요소는 아동권리를 포함한 포괄적인 인권 및 환경 실사이다. 이는 운영과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영향을 평가하고 현저성을 확립하고자 하며, 결국 가장 어려운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행의 변화로 이어진다.

지난 10년 간의 이행을 통해 무엇이 효과적인지와 방안이 한가지 주제에만 집중하였을 때 발생하는 의도치 않은 결과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다. 대체로 이 범주의 조치는 더 광범위하게 인권과 지속가능성 관련 조치에 통합되어야 한다. 고용주와 기업협회, 플랫폼은 기업 조치와 지식을 증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다른 사업부문에서는 사업부문별 기준과 방법론을 개발한다.

두 번째 범주의 조치는 기업의 우호적 환경에 대한 더 심층적이고 더 폭넓은 접근법을 수반한다. 국가가 핵심이며, 의무적 인권 실사를 규정하는 입법을 향한 오늘날의 움직임이 중요한 기회를 창출한다.[204] 의무적 인권 및 환경 실사를 도입하고자 하는 유럽연합 지침 초안이 최근 중요한 사례이며[205]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행동 가속화를 위해서는 동일한 방향을 지향하는 다른 지역의 참여가 필요하다.

---

204 See, for example: UN 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at 10: Taking stock of the first decade',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A/HRC/47/39, United Nations, 22 April 2021.

205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 adopted 23 February 2022.

더욱이 국가 조치가 실사 입법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아동에게 기업의 전반적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경우, 입법 및 규제 조치가 가장 효과적인 제도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건강에 해로운 식품의 구성, 마케팅, 판매와 관련된 자발적 조치가 공중 보건을 지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거의 없다.[206]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유니세프 자체 조사를 통해 국제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일지라도, 국내법 요건 이상의 수준으로 가족 친화 정책을 실시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207]

사업 수행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책임 있는 투자자와 금융기관의 행동으로,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ESG 평가에 아동권리 관련 고려사항을 포함하고, 피투자자 기업의 아동권리 관련 성과 증진을 위해 투자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사업 수행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책임 있는 투자자와 금융기관의 행동으로,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ESG 평가에 아동권리 관련 고려사항을 포함시키고, 피투자자 기업의 아동권리 관련 성과를 증진하기 위해 수탁자 책임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다.

ESG 벤치마킹 이니셔티브와 신용평가사는 아동에 대한 유해한 영향을 다루기 위해 기업 영향과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 활용에 더 명시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책 유무나 기업에 의한 다른 투입 또는 산출보다는, 권리보유자에 대한 성과 측정에 근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모든 활동은 기업의 자발적인 아동권리와 관련된 정보 공시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은 아동권리 관련 성과의 공시를 보편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 번째 범주의 조치는 기업의 부정적 영향의 예방과 완화 및 보건, 영양, 교육, 아동 보호나 기후행동과 같은 분야에서 아동에 대한 더 폭넓은 정책과 관행 간에 더 엄격한 연계성을 구축하는 것이다. 하나의 예는 가족 친화 근로 조건에 기업 의제와 정부 의제를 결합시키는 것이다. 가족 친화 기업 정책과 관행은 특히 영유아기 발달, 아동노동 예방 및 아동 건강 면에서 아동에 대한 성과 개선에 기여한다. 실제로 인권 보호와 존중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세부목표 달성과 명백한 관련이 있다.[208]

©UNICEF/UN0304067/Dejongh

206 Erzse, Agnes, et al., 'A Realist Review of Voluntary Actions by the Food and Beverage Industry and Implications for Public Health and Policy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Nature Food, vol. 3, August 2022, pp. 650–663.

207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Family-Friendly Policies: A global survey of business policy', Working Paper, UNICEF, Geneva, January 2020, p. 9.

208 See: Blackwell, Sara, 'The Human Rights Opportunity: 15 real-life cases of how business is contributing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by putting people first', Shift Project Ltd., New York, August 2018.

현재의 상황을 보면, 이 세 번째 범주의 활동 중 상당 부분이 인권 또는 아동권리 실사와 별개로 이루어졌고, 다른 고려사항에 기반한다. 그러한 활동은 아동에게 중요하지만, 이 활동이 가속화되고 시간에 걸쳐 지속되려면 명시적인 인권 방법론을 통해 기업의 현저한 영향도 다룰 필요가 있다. 기업의 자발적 약속과 기여는 환영할 일이고 활성화되어야 하지만, 기업 활동 또는 사업 관계의 결과로 야기되는 피해를 상쇄하지는 못한다.

6.2 가장 소외된 이들을 포용하는 모두를 위한 체계

실사 제도 등 기업책임경영 제도와 절차에서 아동의 가시성을 높이는 것이 향후 10년 동안의 우선과제여야 한다.

지침을 통해 아동과 소외될 위험이 있는 다른 집단이 직면한 별개의 도전과제를 인식한다는 것은 가치 있는 기여라 할 수 있지만, 아동을 포함한 가장 취약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행 제도가 모든 이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국제개발업계에서 불평등을 다루는 원칙, 즉 가장 소외된 이들까지 포용하는 제도가 결국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현재의 주류 신조를 반영한다.

절차는 특별 지원이 필요한 가장 취약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신, 소외될 위험이 가장 높은 이들을 기본적 필수 요소로 포함하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이 방식은 실용적이면서도 원칙에 근거한다 볼 수 있다. 공통적으로 간과될 위험이 있는 모든 집단을 합치면 사실상 세계 인구의 대다수가 되기 때문이다.

절차는 소외될 위험이 가장 높은 이들을 기본적 필수 요소로 포함하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이 방식은 실용적이면서도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통적으로 간과된 위험이 있는 모든 집단을 합치면, 사실상 세계 인구의 대다수가 되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설계 조치는 제도 설계와 이행 시 아동권리와 다른 취약집단의 중요성에 대한 핵심 문구를 포함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가 특별 조치가 아닌 **표준 요건**이란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과 아동권리와 경영원칙을 비롯해, 유엔아동권리협약과 ILO 협약과 같은 관련 법체계를 명시적으로 언급해야 한다.

지원 지침은 피해의 공통 원인과 기업 활동이 어떻게 이에 일조하는지에 대한 기술을 비롯해, 아동권리와 기타 취약 집단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소외될 위험이 가장 높은 이들이 직면하는 특별한 도전과제를 파악하는 방법을 규제기관 또는 기업협회가 제공하는 주요 지침에서 이목을 끄는 서문 형태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아동과 관련해 이는 **실사 제도와 ESG 프레임워크**가 아동 문제의 적절한 이해관계자의 범위에 대한 당연한 수순으로 올바른 질문을 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동권리와 관련해, 정당한 이해관계자에는 아동들 자신, 부모와 양육자, 아동의 이익을 적법하게 대변할 수 있는 기타 개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다.

이는 아동과 기타 당사자들의 실사 과정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고충처리제도와 구제절차**가 아동 또는 그들의 적법한 대리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아동과 관련해 접근성은 단순히 물리적 접근성이나 아동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과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시의적절성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아동의 성장과 발달은 부적절할 정도로 매우 긴 절차를 감안하지 않는다. 이 모든 설계 요소는 기업 실사 요건을 규정하는 법률에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변화가 실사의 도달범위와 효율성뿐 아니라, 아동과 소외될 위험이 있는 다른 이들을 위한 구제책 접근성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다.

6.2.1 실사 입법 시 아동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 필요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다른 관할권에서도 아동을 포함해 배제될 위험이 가장 높은 이들의 권리를 중심으로 일관되고 엄격한 인권 실사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그 발전의 정도가 향후 10년 동안 전환을 일으키는 핵심이 될 것이다.

가속화는 아동노동이 아동권리 옹호에 핵심인 주요한 또는 유일한 사업상 문제라는 인상을 남기는 그 이상을 요구하며, 이는 다수의 입법동향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4.1.2 참조).*

실사 입법을 향한 움직임은 환영할 만한 경향이다. 유럽연합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발의는 기업책임경영을 지역 및 세계 차원에서 향상시키고, 다른 입법자들에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세계 밸류체인을 구성하는 여러 국가에서 국내 제도의 강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유럽연합 절차가 일반적으로나 아동과 기타 취약 또는 소외 집단과 관련해서도 잘 설계되었다는 사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유럽연합과 같은 주요 무역지대에서의 절차가 적절하지 못하면 기업의 인권 및 환경 실사의 효과는 수년 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인권 실사는 당연히 유럽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다른 관할권에서도 아동을 포함해 배제될 위험이 가장 높은 이들의 권리를 중심으로 일관되고 엄격한 인권 실사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그 발전의 정도가 향후 10년 동안 대변환을 일으키는 핵심이 될 것이다. 제도들의 호환 가능성과 일관성이 중요할 것이다.

의무적 조치에 정부의 관심이 증폭되는 추세는 인권 보호 의무를 수용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이자, 몇몇 기업이 보인 리더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수단에만 의존한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다.

6.2.2 밸류체인 전반의 아동권리 실사

본 보고서 제3장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아동에게 미치는 기업의 부정적 영향은 복잡한 방식으로 사실상 사업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밸류체인 전 영역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실사는 제품과 서비스의 조달 방식, 제조 또는 제공 방식만큼이나 마케팅과 광고, 디지털 환경의 영향, 제품 생산과 폐기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마케팅과 광고가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기업이 조치를 취할 때에는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와 전달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아동 역시 성인 소비자를 주 대상으로 겨냥한 마케팅에 노출되기 때문에, 마케팅과 광고 활동 전반에서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다룰 필요가 있다.

식품 마케팅을 예로 들어 보자. 식음료 부문에서 생산되는 당분과 기타 첨가제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은 전 세계적인 아동 비만 증가와 연관되고, 때로는 아동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거나 아동의 부모와 기타 양육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광고되거나 판매된다. 하지만 글로벌아동포럼 벤치마크에서 알 수 있듯, 유해 제품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마케팅과 광고를 집행하는 소비자 대상 기업은 많지 않다.

6.2.3 구제책 접근 향상

사법 및 효과적 구제책에 대한 접근이 기업과 인권의 맥락에서 아동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이며, 책임 있는 기업 관행의 핵심 요소이다. 의무적 인권 및 환경 실사법 등 기업경영에 대한 법적 · 규제적 기본 체계의 구축과 강화는 기업이 아동권리를 침해하였을 때 효과적이면서도 아동이 접근 가능한 구제책을 제공하는 제도의 확립 및 이행과 함께 가야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힌다. "권리가 의미가 있으려면 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효과적 구제책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의 특별하고 의존적인 지위로 인해 이들 권리의 위반에 대한 구제책을 모색할 때 실제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국가는 아동과 그들의 대리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아동 민감성을 고려한 절차를 보장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209]

지침:

토론 문건: 아동에 적합한 운영 차원의 고충처리제도 (2018) 에서는 기업이 아동의 고충 제기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법을 탐구한다.

기업은 운영 차원의 고충처리제도 확립 등 구제책을 제공하거나 이에 협력할 책임이 있는 반면, 정부는 기업의 아동권리 침해에 대한 효과적 구제책 및 보상을 제공해야 하는 근본적이고 포기할 수 없는 의무가 있다.

아동을 위한 사법 접근과 효과적 구제책은 본 보고서에서 주목하는 가장 진전을 이룬 의미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책임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책임이 없다면, 인권에 대한 기업 책임과 국가 의무는 일부만 충족될 뿐이다.

포용적이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제도를 구축하려면, 아동이 접근 가능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사법 및 개선 체계와 제도의 설계 및 강화에 있어 기업과 정부의 행동 가속화가 시급하다.

연령과 상황 때문에 아동은 국가 및 비국가 제도를 통한 사법 접근에 있어 특정한 장벽에 직면한다. 아동의 발달적 특성은 구제절차 설계 및 이행 시 좀처럼 고려되지 않는데, 이러한 경향은 사실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아동에게서 빼앗는 것일 수 있다. 사업부문과 관련해 기업과 기업이 활동하는 지역사회 간 상호 관계를 종종 특징짓는 권력 불균형이 아동과 관련해서는 더 확대되어 나타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그러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확인했다.[210] 법원 외에 국가인권단체와 근로감독관과 같이 감독권이 있는 다른 단체와 기관은 구제책 제공과 더불어, 사업부문과 관련해 아동권리를 모니터링하여 이행하는 데 일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209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neral comment No. 5 (2003) General measures of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rts. 4, 42 and 44, para. 6), CRC/GC/2003/5, United Nations, 27 November 2003, para. 24.

210 Ibid., para. 68.

6.2.4 이해관계자 개입과 의미 있는 아동 참여

이해관계자 참여는 아동이 겪은 문제점을 밝히기 위한 영향 평가를 포함해, 실사의 실효성과 개선 과정과 관련해 중요하다. 이 두 가지 목표를 위해 여기에는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 양육자, 적절한 시민단체 등 아동을 적법하게 대변할 수 있는 자들의 참여 보장이 포함된다.[211] 아동 참여는 많은 기업에 생소할 수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미 흔하며 아동이 포함된 협의과정 설계 방식에 대한 양질의 지침도 존재한다.[212]

지침:

기업과 아동의 참여: 기업은 아동 참여를 위한 기회를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가 (2015)와 ***의미 있고 윤리적인 아동 참여를 위한 9가지 기본 요건***(2021)은 10가지 아동권리와 경영원칙과 관련되는 것으로 세이브더칠드런이 아동의 피청취권을 지원하고 양질의 아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도구 제공을 위해 각각 개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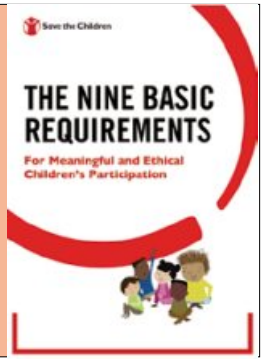

6.3 금융 부문의 리더십 가속화

기관투자자의 힘과 도달범위는 이들이 투자 활동에서 아동권리 등 인권 존중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변화의 주요 동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잠재력을 지닌다는 의미이다.[213]

아동과 관련된 효과적인 투자자 행동의 중요한 전제조건은 기업 생태계의 다른 행위자와 마찬가지로, 투자자가 아동노동 문제를 넘어 포괄적 관점에서 아동권리를 바라보고 이해하며, 이를 통해 투자자 수탁자 책임 및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기타 행동들을 이끌어 가는 것이다.

공통의 기준과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자들 간에 협력이 확대되면 기업 예측에 대한 명확성을 비롯해, 수탁자 책임의 효과와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피투자자 기업의 인권정책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자 기업 간의 협력을 확장시킬 잠재력은 충분하다.

더 전반적으로 보면, 금융 부문에서의 가속화는 개선된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 및 관행**과 밀접하게 연관되는데, 이 내용은 다음 절에서 다룬다. 포괄적 평가를 참작하는 기관들 간에 균형을 모색하고, 투자 의사결정 과정 내에서 이러한 평가를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다.

지속가능성 보고 내 표준의 부합성, 일관성 결여 제거, 이용 가능한 기업 관행 데이터를 확보하여 아동권리에 대한 투자자 분석을 촉진하는 것도 아동권리를 ESG 평가에 통합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

211 See: Save the Children Europe and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Advancing Child Rights in the Proposed EU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Joint position paper', Save the Children and IJC, Brussels and Geneva, May 2022, p. 6.

212 See, for example: UNICEF Office of Research–Innocenti, Championing Children's Rights: A global study of independent human rights institutions for children, Chapter 7,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Florence, Italy, 2013, pp. 85–99;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Engaging Stakeholders on Children's Rights: A tool for companies', UNICEF, Geneva, September 2014; Save the Children Sweden, 'A Mapping on Child Participation Initiatives: In public decision making and monitoring processes', 2020; Ethical Research Involving Children (ERIC).

213 See, Goal 1.1: UN 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Raising the Ambition, Increasing the Pace: UNGPs 10+ – A roadmap for the next decade of business and human rights', United Nations, Geneva, November 2021, p. II.

©UNICEF/UN0299499/Keita

지침:

아동권리를 투자 의사결정에 통합하기 위한 투자자 지침(2019)과 ***아동권리를 ESG 평가에 통합하기 위한 투자자 도구***(2021)는 책임투자와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비롯해, 인권실사의 일부로 아동권리와 관련된 기업 분석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6.4 ESG 보고의 효과 제고

기업의 행동 가속화를 위한 또 다른 필수 요소는 ESG 보고의 사회적 맥락 내에서 아동권리의 가시성을 한층 더 높이는 것이다. 기업의 아동권리 정책 및 성과 공시를 막는 것은 없지만[214], 4.2에서 분석한 데이터는 정책과 대조적으로 실제 성과 보고가 여전히 부족함을 보여준다. 이는 현저한 아동권리 영향과 문제의 공시에 제대로 초점을 맞춘 ESG 보고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수의 사례에서 성별뿐만 아니라 연령별로 사회적 보고 표준을 세분화하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문제를 조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와 국제지속가능표준위원회(ISSB)와 같은 표준제공기관들은 표준에 이런 예측을 규정하는 명료한 텍스트와 함께 분류방식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215] 더욱이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는 자체적인 보편적 보고 기준을 계속 갱신하여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및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과 더 긴밀하게 부합할 수 있게 했다.

214 UNICE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Unit, 'Children's Rights in Sustainability Reporting: A guide for integrating children's rights into the GRI reporting framework',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Geneva, December 2013.

215 See, for example: Eastwood, Sam, et al., 'Business and Human Rights: Revised GRI Standards integrat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and foreshadow emerging mandatory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due diligence legislation', Mayer Brown, 12 October 202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은 유럽연합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의 채택을 구상하고 있으며, 현재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이 동 표준의 초안을 작성하는 중이다. 이 표준은 유럽연합 정책에 맞게 설계될 것이며, 국제표준화에 기반하면서 이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216]

유럽연합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은 이와 유사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이 이행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고, 그 결과 유럽을 넘어 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 과정은 유럽연합에 아동권리와 비즈니스에 대한 리더십을 행사할 기회를 준다. 유럽연합 보고 표준들이 적절하면서 명시적으로 아동권리를 담도록 보장하는 것이 행동 가속화를 위한 중요한 단기 사안이다.

감사 평가 수준을 넘어 나아가기: 가장 근본적으로, 단순히 체크리스트 모니터링과 보고 수준을 넘어서 측정 가능한 행동지표를 만드는 것은 다른 ESG 사안과 같이 선두적인 이슈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기업은 위험과 정책을 중심으로 공시하고, 기업 조치가 아동을 포함한 권리보유자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좀처럼 공시하지 않는다.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가 ESG 표준을 영향 평가의 방향으로 진전시키고 있지만, ESG 보고 및 감사 실태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의미 있게 포착하는 방식으로 공급업체 및 기타 사업 관계를 평가하는 것 사이에는 여전히 단절이 있다. 공급망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확인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재 적용되는 감사 평가 접근법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판이 있다.[217]

ESG를 강화하려면 아동뿐만 아니라 기타 권리보유자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괴리가 해결되어야 한다.

6.5 중소기업의 조치 강화

중소기업 수와 구성 기업의 비율을 감안하면, 아동에 대한 기업의 부정적 영향을 다루기 위한 행동 가속화에 있어 중소기업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국제사용자기구와 ILO 보고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흔히 기업책임경영 실사 표준을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의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정책 약속 이행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218]

의류와 신발 관련 산업부문 중소기업이 수행한 인권 실사에 관한 OECD 연구는 공급망에서 중소기업의 영향력이 더 낮다는 사실에 주목한다.[219] 중소기업의 규모와 구매량은 공급업체 전체 생산량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의 실사 비용은 비율적으로 보면 더 높으며 그 실행을 지원할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반대로 다국적 기업과 비교해 더 비공식적인 과정과 경영구조는 실행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민첩성과 더 적응력이 뛰어난 조직문화를 중소기업에 선사한다.[220]

의무적 실사에서 중소기업을 배제하면 그 대가는 규제 효율성의 저하로 나타날 것이며, 대기업의 기업책임경영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기업협회의 규제, 지원, 역량강화가 중소기업의 책임 있는 기업 관행 채택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이 될 것이다.

216 European Commission,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217 See, for example: Short, Jodi L., Michael W. Toffel and Andrea R. Hugill, 'Monitoring Global Supply Chain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37, no. 9, September 2016, pp. 1878–1897.

218 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Employers and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SMEs and Human Rights: What is the current state of play, what are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what kind of support is needed?', IOE and ILO, Geneva, November 2016.

219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Introductory Paper on SMEs and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in the Garment and Footwear Sector: Survey results and key considerations', Draft for consultation, OECD, n.d., p. 6.

220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ackground Note on Regulatory Developments Concerning Due Dilige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RBC): The role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OECD, 2021, pp. 3–4.

©UNICEF/UN0299499/Keita

아동권리를 포함한 인권 존중의 책임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확대된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과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이 책임을 이행할 때 사용하는 수단은 다른 요소들 중에서도 특히 기업 규모에 비례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221] 이행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무적 실사 범위에서 중소기업을 배제하면 그 대가는 규제 효율성의 저하로 나타날 것이며, 대기업의 기업책임경영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대기업 공급망 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222]

OECD는 중소기업 대상 실사에 협력하는 접근이 제공하는 이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협력적 접근법에는 영향력을 높이고 규모의 효율성을 통해 실사 비용을 줄이며, 인권 위험에 대한 공유된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업계 이니셔티브가 포함된다.[223] 궁극적으로, 정부와 기업협회의 규제, 지원, 역량강화가 중소기업의 책임 있는 기업 관행 채택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이 될 것이다.

6.6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권리 기반 접근법 증진하기

디지털 환경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아동권리 존중 강화와 관련해 갈 길은 멀지만 낙관할 만한 이유가 있다.

일반논평 제25호는 하나의 방향 지침을 제공하면서, 국가의 의무를 분석하고 기업의 비즈니스 영향과 관련해 취해야 할 구체적 행동을 식별한다. 여기에는 아동권리 실사를 비롯하여,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의 설계 · 엔지니어링 · 개발 · 운영 · 배포 · 마케팅과 관련하여 가장 높은 윤리, 사생활,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규제 체계, 업계 규범, 서비스 약관을 이행하도록 기업에 요구하는 것이 포함된다.[224]

"당사국은 기업 부문이 아동권리 실사에 착수하도록 해야 하며, 특히 디지털 환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차등적 혹은 심각한 영향을 특별히 고려하여 아동권리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중에 공개해야 한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5호(2021) 38문단

221 Se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Principle 14, OHCHR, New York and Geneva, 2011, p. 15. Per OECD: "The nature and extent of due diligence, such as the specific steps to be taken, appropriate to a particular situation will be affected by factors such as the size of the enterprise, context of its operations, the specific recommendations in the Guidelines, and the severity of its adverse impact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2011 edition,' OECD Publishing, 2011, para. 15).

222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ackground Note on Regulatory Developments Concerning Due Dilige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RBC)', 2021, pp. 6–7.

223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Introductory Paper on SMEs and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in the Garment and Footwear Sector', Draft for consultation, OECD, n.d., p. 7.

224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neral comment No. 25 (2021), para. 39.

지침:

MO-CRIA: 이동통신사업자를 위한 아동권리영향자체평가도구 - 지침 2판(2021)과 ***온라인 아동보호를 위한 업계 가이드라인***(2020)은 아동권리의 디지털 환경 통합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도구 사례이다.

기업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이 많다. 여기에는 보호장치와 기타 조치를 변경하는 대신 설계에 의한 아동권리의 내재화가 포함된다.[225] 호주 온라인안전국의 '설계에 의한 안전' 접근방식[226] 등 이 원칙의 이행을 지원하는 여러 틀이 등장했다.

업계 조치에 대한 일련의 권장사항은 국제전기통신연합과 유니세프의 '온라인 아동보호를 위한 업계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Industry on Child Online Protection)'과 같은 지침에 잘 반영되어 있다. 동 지침은 2015년에 처음 발표되었고 2020년에 최신 개정되었다.[227] 이동통신사업자를 위한 아동권리영향자체평가도구(MO-CRIA)는 밀리콤과의 협업으로 2012년에 처음 개발된 후 2021년 최신 개정되었다.[228]

하지만 구체적 조치의 이행과 아동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관련해,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증거중심의 체계를 수립해야 할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아동 자신의 경험과 의견이 여기서 가장 핵심 요소이다.

이러한 조치와 권장사항은 기술 부문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 장난감에서부터 일용소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에 걸쳐 여러 유형의 기업이 디지털 환경을 통해 점차 아동과의 소통을 늘려가고 있다.

기업은 또한 아동들이 디지털 기술의 직접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도 여전히 그 사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온라인에 유포되는 아동 성학대물에서 묘사되는 아동의 경우가 그러한 예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최종 사용자로 설정하거나, 아니면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기업은 아동권리에 대한 고려사항을 자사의 정책, 관행, 활동에 우선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기술로 조장된 아동 성착취와 성학대 근절을 우선사항으로 두는 것과 관련해, 위프로텍트의 국가대응모델(Model National Response) 이행 현황을 최근 분석한 내용은 업계의 향후 조치에 영향을 주는 유용한 교훈을 제공한다. 이러한 교훈에는 산업 투명성에 대한 공통 표준 또는 지표가 필요하다는 국가의 요청이 포함되며, 업계 행위자 간의 훈련과 인식 제고 지원, 공통 의제와 명확한 책임 분담을 위해 산업부문 간 대화의 필요성을 다루는 것도 포함된다.[229]

225 Digital Futures Commission, 'Designing for Child Rights by Design', 5Rights Foundation, 5 July 2021.

226 eSafety Commissioner, 'Safety by Design'.

227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and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Guidelines for Industry on Child Online Protection', ITU, Geneva, 2015;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Guidelines for Industry on Child Online Protection', ITU Publications, Geneva, 2020.

228 Pietikainen, Milka, and Amaya Gorostiaga, 'Assessing the Impact of Mobile Network Operators on Children's Rights: The Millicom experience', Millicom International Cellular SA and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September 2017

229 See: WeProtect Global Alliance and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Framing the Future: How the Model National Response framework is supporting national efforts to end child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online', May 2022;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Ending Online Child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Lessons learned and promising practices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UNICEF, New York, December 2021.

'Disrupting harm'은 온라인 아동 성착취 및 성학대를 주제로 국가 차원에서 수행된 현재까지 가장 포괄적이며 최대 규모의 연구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가 업계에 제공하는 권장사항에는 온라인 플랫폼 내 공식 보고제도를 알기 쉽고 아동이 접근 가능하게 마련하며, 법원과 법집행기관의 자료 요청에 우선적으로 대응하라는 기업 대상의 조언이 포함된다.[230]

현재 아동의 온라인 경험은 그들 일상 속으로 깊이 들어와서, 양 공간에서 아동 대상 폭력을 다루어야 할 필요성은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231]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등장한 이행원리의 반복되는 핵심 문구는 아동을 단순히 온라인 위험과 피해의 무력한 현재의 또는 잠재적 희생자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온라인 서비스는 아동의 복지, 정보접근권, 참여권을 동시에 최적화해야 한다.

하지만 인터넷 지배구조 분야 내에서는 이 사항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232] 이와 대조적으로 유럽연합의 아동을 위한 더 나은 인터넷(Better Internet for Kids) 전략은 2022년 채택되었으며 보호와 보건, 역량강화, 적극적 참여를 핵심 내용으로 삼은 사례이다.[233]

이러한 원칙을 구체적인 조치와 결과로 전환하려면 헌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아동을 위한 책임 있는 기술 혁신(Responsible Innovation in Technology for Children) 프로젝트는 2022년 착수되었으며 아동의 디지털 경험의 설계가 이들의 행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틀을 마련하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설계의 선택이 어떻게 긍정적인 복지 결과를 증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234] 전 세계 아동들의 관점과 의견이 이 틀의 기본 토대였다. 그 비전은 아동이 접근하는 디지털 경험을 설계하는 모든 기업이 아동의 행복에 이러한 경험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신중히 고려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구축된 추진력은 향후 10년 동안의 진전을 약속한다. 물론 이 진전을 전 세계 모든 어린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려면 헌신적인 노력이 필수이다. 혁신의 바퀴가 계속 굴러감에 따라 메타버스와 확장현실(XR), 지속적인 경계, 부문을 넘나드는 조치, 양질의 증거의 꾸준한 공급과 같이 새롭게 부상하는 사업 기회를 촉진하는 것은 아동을 위해 가능한 한 최상의 결과를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인권 존중에 대한 기업 책임에서 예방이란 요소를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효과가 단기간에 그치지 않게 하려면, 그와 관련된 현저한 인권 침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6.7 기업, 아동권리, 지속가능발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은 기업의 인권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통합하기 위한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 기업은 변화에 대한 회사의 기여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식별하기 위해 원칙에 기초한 일관된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 인권 및 환경 실사, 현저한 위험과 영향을 다루기 위한 조치, 진행사항 추적 및 전달, 구제책 활용이 확실히 되도록 적정 역할 담당 등이 주요 구성요소이다.[235] 향후 10년 동안 어느 정도의 규모에 도달하려면 국가 주도의 의무적 실사 요건이 필요할 것이다.

230 End Violence Against Children, 'Disrupting Harm'.

231 Kardefelt-Winther, Daniel, and Catherine Maternowska, 'Addressing Violence against Children Online and Offline', Nature Human Behaviour, vol. 4, no. 3, March 2020, pp. 227–230.

232 Livingstone, Sonia, John Carr and Jasmina Byrne, 'One in Three: Internet governance and children's rights', Discussion Paper 2016-01, UNICEF Office of Research – Innocenti, Florence, Italy, January 2016.

233 European Commission, 'A European Strategy for a Better Internet for Kids (BIK+)'.

234 UNICEF Office of Research – Innocenti and Western Sydney University, 'Responsible Innovation in Technology for Children: Digital technology, play and child well-being',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Florence, Italy, 2022.

235 Blackwell, Sara, 'The Human Rights Opportunity: 15 real-life cases of how business is contributing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by putting people first', Shift Project Ltd., New York, August 2018.

아동권리를 명시적으로 포함한 포괄적인 인권 및 환경 실사가 없다면, 기업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처와 더 광범위한 공개된 개발 정책 간 연계가 불완전한 채로 남게 될 것이며, 부정적 영향을 다루는 기업 조치의 개혁적 잠재력이 충분히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실용적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자사 사업과 관련되는 아동에게 미치는 위험의 완화 또는 예방이 담긴 방안으로 시작해야 하며, 그런 다음 이와 관련되지 않은 별개의 방안을 살펴야 한다.

이는 기업이 그러한 부정적 영향에 일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운영, 제품,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나타난 부정적 영향을 예방해야 하는 기업 책임의 결과와 긴밀히 연관된다*(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13 참조)*. 최소한의 "예방"은 즉각적 또는 단기적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이지만, 아동권리 침해의 근본 원인을 영구화하거나 심지어 그러한 원인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기업 활동 및 사업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업이 단독으로 모든 아동권리 문제에 대해 책임질 수는 없지만, 기업의 밸류체인에서 이들의 활동이 야기하거나 일조하거나 이들의 활동과 관련되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기업이 사회구조에서 특히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 즉, 책임과 자발적 행동 간 경계를 긋는 일이 간단하지 않고 문제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 UNICEF/UN0364303/Gil

인권 존중에 대한 기업 책임에서 예방이란 요소를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효과가 단기간에 그치지 않게 하려면, 그와 관련된 현저한 인권 침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동노동에 대한 조치에서 잘 드러나지만, 이는 기업 활동과 관계가 침해를 발생시키거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거나 원인이 되는 모든 문제에 적용된다. 본 보고서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빈곤과 저임금, 근로 조건과 계약 방식 등 아동노동을 야기하는 원인은 모두 아동노동을 영구화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운영 장소에 대한 기업 차원의 선택은 저임금 환경을 일부 활용하는 데 그 근거를 둘 수 있다. 노동의 비공식성은 또 다른 요인이다.

이 경우, 단순히 아동노동을 식별, 제거, 개선하는 것은 단기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아동노동을 야기하는 근본원인을 다루지 않으면, 아동은 결국 다른 곳에서 노동 상황에 놓일 위험이 높다.

발전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기업 기여는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선 아동에게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 노력은 증상을 다루는 것 이상이어야 하며 증상을 일으킨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투자까지 포함해야 한다. 아동권리와 경영원칙은 아동권리 "지원 약속"이란 개념을 포괄하며, 이는 본질적으로 지속적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식별 및 실시하는 실사 과정 내에 위치한다.

부정적 영향을 다루게 되면 더 넓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심적 기여를 하게 된다. 이는 도전과제에 대한 공통의 이해, 공통된 변화 이론, 상호에 가장 관련성이 높은 방식을 인식하지 못했을 다수의 이해관계자들 간에 연합과 협력을 창출하기 위한 단계이다.

라바짜 그룹: 협력을 통한 진보

지속가능성을 자사의 글로벌 활동에 통합하려는 라바짜 그룹의 여정은 1988년 커피 재배 지역사회의 지역사회 개발프로그램의 출범과 2004년 주세페와 페리클 라바짜 재단(Giuseppe and Pericle Lavazza Foundation)의 설립과 함께 시작되었다. 2015년 라바짜 그룹은 지속가능발전을 승인하고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했으며 첫 번째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아동권리를 기업 관행에 더 깊숙히 통합하려면 세이브더칠드런 이탈리아, ILO, 옥스팜, 기타 비정부기구와 파트너 기관과의 상당한 협력이 필요했다. 라바짜 그룹은 장기간 이어온 자선 협력을 확장하면서 세이브더칠드런과 협력하여 공급업체의 행동강령을 검토하여 아동권리에 대한 명시적 문구를 삽입했다.

회사의 2019년 지속가능성 계획인 '모든 발걸음에 목표를 담아*(A Goal in Every Cup)*'를 이행하면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영향평가와 인식제고 및 내부 플랫폼에 통합하고 성평등, 양질의 일자리, 책임 있는 소비, 기후행동에 우선 순위를 두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세부목표 8.7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은 "파트너십 강화와 공급업체가 활발히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공급망을 따라 행해지는 공정근로 조건 증진, 인권 존중, 아동노동 철폐"에 초점을 맞춘다.

그런 다음, 이는 중국과 베트남에서 프로젝트와 관련해 세이브더칠드런과 협력을 강화한 활동으로 이어졌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공급망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기업 정책과 행동강령, 베트남 커피 공급망을 따라 아동노동 금지와 개선 정책 및 지침(Child Labour Prevention and Remediation Policy & Guidance) 템플릿 수립하는 프로그램에 아동권리가 반영되었다. 2022년 베트남 업계 전반의 작업장에서는 커피 생산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아동노동을 철폐하고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아동권리를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인식 제고를 지속적으로 해 나갔다.

라바짜 그룹의 참여에서 얻은 핵심 교훈은 시민사회 행위자와의 신뢰 있는 파트너십 구축의 가치였으며 그 효과성은 직무 전반에 걸쳐 아동권리의 관점을 기업 지속가능성 정책에 통합하는 것을 수반한다.

©UNICEF/UN0277463/Bindra

6.8 협력과 공동실행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실무그룹은 **기업 관련 여러 인권 영향의 근본 원인이 되는 전면적 도전과제를 다루기 위해** 공동실행의 필요성에 주목했다. 공동실행과 협력은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와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축소하거나 대체하지 않으면서, 영향력을 증대하고 신뢰를 구축한다.[236]

아동권리 문제에 대해 협력적 행동을 취한 사례는 많다.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의류와 신발 기업을 소집하기 위한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중앙은행 투자관리청과 유니세프의 협력 같은 파트너십에서부터, 국제 협력으로 뒷받침되는 특정 영역에서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집중된 노력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는 다양하다.

한 가지 예는 우즈베키스탄의 강제노동 • 인신매매 척결국가위원회와 ILO의 제3자 모니터링 프로젝트(Third–Party Monitoring Project) 간에 이루어진 협력으로, 세계은행과의 협약에 따라 2015년부터 우즈베키스탄 목화 수확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면화 부문에서 개혁 과정이 시작된 이래, 약 2백만 명의 아동이 아동노동에서, 약 50만 명의 성인이 강제노동에서 벗어났다.[237]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의 핵심은 인권 기반 접근법의 기본요소를 인식하는데 있다.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을 중심으로 설계되지 않은 이니셔티브는 시간에 걸쳐 광범위한 효과를 내는 핵심 도구와 접근법을 잠재적으로 누락하고 있는 것이다.

236 See Goal 1.2: UN 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2021, 'Raising the Ambition, Increasing the Pace', United Nations, Geneva, November 2021, p. II.

237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Uzbek Cotton is Free from Systemic Child Labour and Forced Labour', ILO News, Geneva, 1 March 2022.

또한 공식적인 대규모 운동도 있는데,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단합된 국제적 노력이 이의 적절한 예이다.[238] **연합 8.7(Alliance 8.7)**이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정부, 노조, 국제기구, 비즈니스 플랫폼, 기업과 시민사회를 협력적 이니셔티브로 한데 모은다. 이 이니셔티브는 공통 목표를 향해 이러한 사회 다양한 구성원의 보완적 역할을 결집시킨다.[239]

여러 면에서 연합 8.7은 아동권리와 기업을 위한 보다 광범위한 행동에 대한 하나의 교훈을 준다. 연합 8.7은 권리를 기반으로 하며 실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핵심 이해관계자들을 결집시킨다. 모범 관행의 실시와 적절한 규제 모두를 목표로 한다. 근본 원인과 지식에 중점을 둔다.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효과가 떨어지는 대한 연구와 탐구를 촉진했다. 하나의 사안으로서 아동노동의 정치적 • 실질적 가시성을 한층 강화한다. 야심찬 목표와 목표 이행 시점을 설정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의 핵심은 인권 기반 접근법의 기본요소를 인식하는 데 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중심으로 설계되지 않은 이니셔티브는 시간에 걸쳐 광범위한 효과를 내는 핵심 도구와 접근법을 잠재적으로 누락하고 있는 것이다.

© UNICEF/UN0292143/Sokol

238 SDG target 8.7: Take immediate and effective measures to eradicate forced labour, end modern slavery and human trafficking and secure the prohibition and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including recruitment and use of child soldiers, and by 2025 end child labour in all its forms (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239 See: Alliance 8.7.

© UNICEF/UNI62112/Sokol

제7장
아동권리 증진과 기업: 결론과 권고사항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10주년」은 인권과 기업책임경영에 대한 담론과 이행 내에서 아동권리 가시성의 경로를 추적한다. **기업이 일상적으로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는 세계가 변모하더라도, 아동권리는 종종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정부와 기업, 투자자들은 아동권리를 기업책임경영에 통합하는 데 있어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그 진전은 종종 불완전하며 체계적이지 않다. 아동은 비즈니스의 핵심 이해관계자이지만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성인의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아동의 권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비즈니스 관련성이 있다고 흔히 인정되는 사안에서도 정책적 수사와 이행 간에는 눈에 띄는 격차가 존재했다.

본 보고서를 위해 검토된 문헌은 또한 단순히 아동과 관련된 것만 아니라, 인권에 기반한 기업책임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사안을 지적한다. 인권을 기업의 모든 유형의 사회적 • 환경적 영향을 다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틀이라기보다 사안목록의 하나의 단독 구성요소로서 개념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인권 기반 접근법이 정책문서에서 언급되더라도, 그 실질적 의미는 아직 완전하게 파악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제7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를 강조하고, 중요한 결론을 요약 정리하며, 기업 책임경영에 아동권리를 통합하려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아동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12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인권을 기업의 모든 유형의 사회적 · 환경적 영향을 다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틀이라기보다 사안 목록의 하나의 단독 구성요소로서 개념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인권 기반 접근법이 정책문서에서 언급되더라도, 그 실질적 의미는 아직 완전하게 파악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UNICEF/UN0202375/Dejongh

7.1 결론

본 보고서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인권은 지속가능성의 전제조건이다. 환경행동이 효과적이려면 인권 기반 접근법을 반드시 취해야 하고, 정의와 형평성은 저탄소 세계로의 전환에서 핵심 부분이 되어야 한다.

아동이 이러한 비전의 핵심이다. 아동이 기후변화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오늘날 아동에게 일어난 일은 현재 이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향후 사회의 가능성을 형성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인권 및 환경 실사는 권리 기반 접근법의 핵심인 기업 존중과 행동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핵심 제도이다. 아동의 관점에서, 실사는 아동권리와 아동에 대한 기업의 잠재적 및 실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토대로 구축되어야 한다. 구제책은 또 다른 핵심 요소이지만, 아동 민감성을 고려한 구제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사와 구제책 접근 등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결정에 아동의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아동권리 기반 접근법의 중심을 이룬다. 통합은 아동을 비롯한 배제의 위험이 가장 큰 이들을 가시화하는 제도, 틀, 과정에서 기본 설계의 필수 요소여야 한다.

기업과 정부, 개발단체 모두 핵심적이고 때로는 상호 연계된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는 기업의 주된 기여 없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다수의 기업은 양자 협력관계에서 개발단체와 긴밀히 협력 활동을 하거나, 건강 · 교육 · 기타 개발문제에 중점을 둔 집단 플랫폼의 일부로서 도전과제를 수용하고 있다.

민관 협업이 미래 건설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진정한 대변환을 이루려면, 기업이 아동권리를 비롯한 인권보장에 미치는 현저한 영향에 대한 논의를 가장 먼저 해야 하며, 그 후 다른 방식의 자발적 기여로 이어져야 한다.

더욱이 기업 관행과 관련된 아동권리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근본 원인을 다루게 되면 국제발전업계와의 지속적인 공통 관심사가 창출된다. 이는 기업 책임과 의무 및 자발적 기여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그 선은 명확하지 않으며 사안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그 선은 공유된 변화 이론에 기반해 사회적 목표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협력 및 공동실행의 문을 열기도 한다.

기업 관행과 관련된 아동권리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근본 원인을 다루면 국제발전업계와의 지속적인 공통 관심사가 창출된다. 그리고 사회 목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협력과 공동실행의 문을 열기도 한다.

자발적 접근법만으로는 필요한 규모의 전환적 조치를 이끌어낼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의무적 인권 및 환경 실사를 향한 움직임은 중요한 진전이며 전 세계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서비스 외주에 인권 의무를 포함하거나 경제 주체로 활동할 때 투자 목표로 추구하는 등의 다른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240] 물론 특정 기업 관행이나 제품이 아동에게 전반적인 극심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그러한 관행과 제품을 불법화하는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국적 기업은 그 규모와 국제적 도달범위로 인해 기업책임경영 추진 시 주도적 주체가 되고, 밸류체인 전반에서의 인권 존중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대전환을 위한 핵심 지렛대가 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모든 기업의 95%를 차지하며, 이들 기업을 대기업의 영향을 받는 다른 이들의 공급망에서의 단순한 행위자로 여겨서는 안 된다. 다수의 중소기업에서 발견되는 더 제한된 역량을 감안하는 효과적인 인권과 환경권 실사 및 다른 제도 마련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과 함께 정부, 기업협회, 투자자들은 이를 달성하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240 See Goal 2.1: UN 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Raising the Ambition, Increasing the Pace', United Nations, Geneva, November 2021, p. IV.

투자자들이 아동권리와 경영원칙과 부합하는 정책과 실사 및 고충처리제도를 마련하고, 그들 스스로의 활동에 개선된 아동 가시성을 포함하고, 피투자자 행위 시 그러한 가시성을 요구하여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하다. 집단적 수탁자 책임을 통해 투자자 전반에서 이에 일관성을 부여하면 영향력이 더 강화될 것이다. 또한 ESG에서 '사회'를 아동권리 등의 인권으로 체계를 세운 더 나은 개념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아동에 대한 기업의 부정적 영향은 보통 부모와 양육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통해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기업이나 입법자들이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을 양질의 일자리 또는 가족 친화 정책 같은 사안에 다른 관점을 덧붙이게 된다. 그리고 이는 시민사회의 역할과 연결된다.

아동노동, 온라인 아동 학대, 마케팅과 광고 같은 가장 빈번한 영향을 받는 아동 문제가 세간의 주목을 받는 문제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한편으로는 기업 활동의 공통된 동력이 되는 실사를 향한 느린 진전 양상을 가리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문제를 가시화하는 데 있어 평판의 중요성과 시민사회의 영향력 있는 역할을 지적한다.

아동권리에 기업이 미치는 실질적, 잠재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더 광범위한 이해는 또 다른 핵심 요소이다. 기업 활동 변경 시 "무엇이 아동(과 기업)에게 효과가 있는지," 즉 어떤 조치가 아동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더 자세히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를 식별하여 동료들과 공유하는 기업 혁신이 장려되어야 한다. 호환 가능한 결과 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기업, 정부, 개발단체 간의 결과 설명 공유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결과 추적을 개선하는 것이 향후 10년간 계획의 핵심이다.

아동노동, 온라인 아동 학대, 어느 정도의 마케팅과 광고 같은 가장 빈번한 영향을 받는 아동 문제가 세간의 주목을 받는 문제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문제를 가시화하는 데 있어 평판의 중요성과 시민사회의 영향력 있는 역할을 지적한다.

© UNICEF/UN0120662/Brazier

7.2 권고사항

우리는 다음 조치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기업과 정부,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아동권리의 가시성을 높이고, 기업책임경영에 대한 아동권리의 통합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1. *아동과 이들의 적법한 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아래 몇 가지 권고사항은 실사와 구제책 설계 및 이행 시의 아동 참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하지만 아동의 의견 청취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독자적인 권고사항을 제공할 만하다.
   - 정부, 기업, 투자자, 기타 관련 행위자는 제도의 기본 요소로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기업, 기업협회, 규제기관과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의 역량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2. *인권과 환경 실사를 위한 기본 설계 기준 및 기업책임경영에 인권을 통합하기 위한 기타 제도와 절차가 소외될 위험이 가장 높은 자들의 인권을 확실히 다루도록 한다.* 이렇게 소외될 위험이 가장 높은 그룹에는 아동, 여성, 장애인, 원주민, 소수 민족 및 민족집단, 소수 종교 및 언어 집단,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가족들, 비공식 노동자가 포함된다.
   - 실사는 밸류체인과 온 · 오프라인 전반에 걸쳐 아동권리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평가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 반영되어야 한다.
   - 법률과 지침의 주요 문구는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이는 설계 요건이다. 지침은 이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현성 있는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그 선택의정서, ILO 협약 제138호(취업 최저연령)와 제182호(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등의 관련 법체계를 명시적으로 언급해야 한다.
   - 실사 제도에는 아동과 부모, 양육자, 아동의 이익을 적법하게 대변할 수 있는 기타 개인 또는 기관의 의미 있는 참여가 제도 수립 단계뿐만 아니라 그 이행 등에서 포함되어야 한다.
   - 성인에 대한 기업의 부정적 영향이 아동에게 미치는 결과의 현저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어야 한다.
   - 아동권리에 대한 성과 평가는 모니터링, 평가, 보고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아동에 대한 결과 측면에서 기업 조치의 효과를 추적하는 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아동의 구제책 접근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한다.* 여기에는 아동, 여성, 장애인, 원주민, 소수 민족 및 민족집단, 소수 종교 및 언어 집단,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가족들, 비공식 노동자가 포함된다.
   - 아동은 국가 · 비국가 기반, 사법 · 비사법 기반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 · 비국가 차원의 구제제도 설계와 이행 과정에서 아동과 그들의 적법한 대리인의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이용 가능한 구제 절차와 관련해 접근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과 그들의 적법한 대리인의 법적 또는 행정적 지위를 보장하며, 비용, 물리적 접근성, 절차의 시의 적절성이 접근성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 구제책과 관련된 정책과 지침 문서는 아동권리 보장을 명확히 약속하고, 아동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명시해야 한다.
   - 아동 최선의 이익은 아동과 관련된 모든 구제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
   - 구제제도 구축과 설계 과정에 아동이 참여해야 한다.
   - 아동은 보호받을 권리와 피청취권을 가진다. 민 · 형사 절차에서 아동 피해자와 증인을 위한 특별 장치와 운영상 고충처리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비밀유지와 사생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 아동권리에 대한 성과 평가는 모니터링, 평가, 보고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 정부는 아동권리의 심각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기업을 포함한 법인에 대해 형법상 책임 또는 동등한 억제력을 지닌 다른 형태의 법적 책임을 채택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4. *법규준수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으로 나아간다. 현저한 부정적 영향을 다루는 것이 아동권리 존중을 위해 기업에 부여된 책임의 본질이다.* 이는 기업과 함께 지속가능한 세계를 구축하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수단이다.
   - 아동권리에 대한 정책과 성과는 기업 전 부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며, 이사회 수준의 책임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한 행동에 명시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최우선과제는 인권 및 환경 실사여야 하며, 여기에는 위반 사례에서의 개선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 기업이 혁신과 자산 또는 자원을 통해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장려해야 하지만, 부정적 영향을 다룰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그 전제가 되어야 한다.

5. *기업은 활동과 밸류체인을 통해 연계되어 있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다루어야 한다.* 이 말은 기업이 아동권리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떠맡을 책임이 있다든가, 기업이 모든 형태의 아동 박탈이나 권리침해의 모든 원인을 다루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지만 기업이 연관된 문제의 근본 원인을 다루는 데 기여하는 것은 아동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기업 책임에 속하며, 규모에 맞게 지속가능발전에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과 정부, 시민사회 간에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단기적 기회를 제공한다.
   - 실사를 통해 아동권리에 대한, 특히 기업 활동 및 관계와 관련된 부정적 영향의 근본 원인을 식별해야 한다.
   - 기업과 정부, 시민사회는 각각의 보완적인 역할을 규명하는 공유된 변화 이론을 기반으로 여러 형태의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
   - 원칙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다루고자 하는 기업 조치는 공공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이에 통합되어야 하며, 이를 재현하거나 대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 공공서비스가 취약한 환경에서 기업은 공공서비스의 (재정적, 운영적, 기술적) 역량을 지원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기업은 또한 공공서비스의 설계, 목표, 모니터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방 및 국가 당국과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 기업은 해결책을 대규모로 제공하기 위해 다른 기업과의 공동실행을 고려해야 한다.

6. *기업의 인권 책임조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력을 활용한다.*[241]
   - 정부는 실사와 비재무 공시, 투명성, 개선책과 법적 의무에 대한 기업의 규제 프레임워크에 아동권리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이러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접근 가능하고 아동 친화적인 방식으로 작동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기업의 이행 실태 모니터링과 아동에게 구제책을 제공하는 국가의 사법적 • 비사법적 제도에 적절한 자원과 역량이 할당되어야 한다.
   - 전 세계 중앙 정부와 지역기구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OECD 실사 지침, 본 보고서에서 언급된 아동을 포함한 소외 위험이 있는 이들을 위한 설계 기준 등에서 규정된 기준을 토대로, 의무적 인권 및 환경 실사의 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유럽연합 소속기관과 회원국은 유럽연합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과 현재 진행 중인 기타 관련 입법 개혁을 아동권리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241 See Goal 2.2: UN 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Raising the Ambition, Increasing the Pace', United Nations, Geneva, November 2021, p. IV.

- 아동권리 관점을 적용한 정책 일관성이란 정부가 모든 기업 관련 정책과 규정에 아동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 정부는 아동과 접촉하는 공공서비스와 비정부기구에 대해 일부 관할권에서 시행 중인 조치와 유사한, 기업 대상의 의무적 아동안전보호 요건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7. *투자자의 영향력을 증대해야 한다.*
   - 투자자와 기타 금융 분야의 행위자들은 자신들의 투자 활동과 연관되어 발생한 위험을 알고, 그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보여줌으로써, 아동권리를 포함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아동권리 존중이 수탁자 책임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 참여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아동은 투자가 이들의 권리와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투자의 주요 이해관계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 투자자들은 광범위한 영향력을 구축하기 위해 아동권리에 대한 집단적 수탁자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 투자자들은 관여를 위한 유용하고 적절하며 영향력 있는 아동권리 지표를 정의하기 위한 대화에서 기업과 정부, 표준기구, 규제기관, 아동권리단체들과 활발히 협력해야 한다.

8. *아동에 대한 성과 지향적 ESG를 개발한다.* 아동권리를 포함한 인권은 이러한 사회적 요소를 이해하고 이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이다.
   - 아동권리는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상의 인권과 ESG에 근거한 관점에서 명시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 아동에 대한 핵심 지표는 아동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된 ESG 기준을 정의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보고와 ESG 평가 이니셔티브에 포함되어야 한다.
   - 모든 사회적 보고 표준은 연령과 성별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한다. 표준제공기관들은 분류방식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제공해야 한다.

9. *정부와 기업협회, 시민사회는 중소기업에 의한 실사와 개선책을 지원하는 지침과 도구를 마련해야 하며, 이행을 촉진하는 제도도 구축해야 한다.*[242]
   - 정부가 실사 설계와 기업책임경영을 지원하는 기타 입법에 비례성원칙을 도입함에 따라, 아동권리에 대한 포괄적 이해는 지리적 위치, 사업모델, 공급모델과 함께 중소기업의 위험노출도 분석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 정부와 기업협회는 중소기업을 위한 실사 및 개선책에 대한–아동권리와 소외 위험에 있는 기타 집단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식 제공을 지원하는– 맞춤형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정부는 중소기업이 효과적인 실사를 수행함에 있어 직면하게 되는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도입해야 한다.
   - 정부와 기업협회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사 과정 이행 교육에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시켜야 한다.
   - 중소기업은 다른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기업책임경영 영향을 강화하고, 운영비용을 절감하며, 아동에게 미치는 광범위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권장된다.

242 These recommendations are based on discussion in: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ackground Note on Regulatory Developments Concerning Due Dilige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RBC): The role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OECD, 2021.

10. 국제개발기구는 기업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전면적 조치를 더 광범위한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통합시켜야 한다.

정부발전전략과 국제개발기구는 재계와의 소통 수준을 특정 도전과제에 대한 개별 파트너십 구축, 그 자체로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를 넘어 아동을 위한 긍정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실사 중심의 기업책임경영 역할을 전면적으로 고려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 개발주체는 비즈니스 행위자 및 규제기관과 협력하여 아동권리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즉각적이고 장기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실사 및 기타 조치를 추진하고 지원해야 한다.
- 아동에 대한 기업의 부정적 영향 식별과 그에 대한 해결책 모색은 아동이 처한 상태에 대한 개발기구의 기본 분석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은 기업책임경영 차원에서 입법자, 규제기관, 기업들과 공유되어야 한다.
- 필요한 경우 인권 존중에 대한 기업 책임을 더 광범위한 변화 이론에 통합시켜야 한다.
- 국제개발기구와 국가, 기업, 기업연합은 서로 협력하여 영향 측정과 결과 설명의 명료화를 위한 공통의 기본 틀을 모색해야 한다.

11. 아동을 위한 효과적 조치의 필수 토대로서 증거 기반을 개선하고 이해와 지식 공유를 강화하는 역량을 구축한다.

- 정부, 기업, 기업협회, 시민사회, 학계는 모두 다음 사항에 대한 증거를 개선하고 공유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 아동에 대한 기업의 부정적 영향과 근본 원인
  - 아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가장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조치와 이러한 조치를 더 넓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치에 통합시키는 방법
  - 아동에게 효과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 아동과 관련된 "사회적 영향"의 정의와 그 측정 방법
  - 기업책임경영에 대한 아동권리 기반 접근법 이행의 진행사항 추적
  - 아동에 대한 성과에 초점을 둔 일관되고 보완적인 결과 설명 개발

12. 증거 수집 및 교환 증진 및 지원 지향

- 정부는 기업 활동 및 관계의 맥락에서 아동권리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와 이러한 책임을 이행하는 능력을 이해하는 데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과 아동 및 기타 배제 위험이 있는 집단의 권리를 포함한 기타 권리에 기반한 기업책임경영 지침에서 규정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역량 구축을 위해 협력적이고 전략적인 접근법을 개발해야 한다.

© UNICEF/UN0484603/Diarassouba

용어 해설

아동 최선의 이익: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 1항은 아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있어서 당사국에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핵심 원칙 중 하나로 당사국은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업 활동 및 운영과 관련된 모든 입법 · 행정 · 사법 절차에 이 원칙을 통합하여 적용할 의무가 있다.

사업 관계: 기업 운영, 제품 또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으며, 사업 파트너, 밸류체인 내 조직체, 여타의 국가 또는 비국가(정부 또는 비정부) 조직체와의 관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합작투자에 참가하는 대주주와 소주주뿐만 아니라, 기업 밸류체인 1단계를 넘어서는 간접적 사업 관계도 포함된다.

아동: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조에 따르면 아동은 "적용되는 법에 따라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더 빠르지 않는 한,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243]

아동노동: 아동들에게서 이들의 어린 시절, 잠재력과 존엄성을 박탈하고, 신체적 · 정신적 성장에 해가 되는 노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또는 도덕적으로 위험하고 아동에게 유해한 일, 학업에 지장을 주는 일, 국내법이나 국제기준에 의한 취업 최저연령 미만의 노동 아동이 포함된다. *위험한 일*이란 본질적으로 또는 일이 수행되는 상황에 따라 아동의 건강, 안전 또는 도덕관념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에는 위험한 일, 인신매매, 성착취, 채무노동, 강제노동, 안보나 군사 목적을 위한 그리고 불법물질의 생산과 배포를 위한 미성년 아동 모집 또는 이용이 있다.

ILO협약 제182호는 18세 미만의 모든 자의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제138호 취업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은 의무교육 완료 연령 미만의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어떤 경우에도 15세 미만의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아동 참여: 아동 참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핵심 원칙 중 하나인 아동의 피청취권을 규정하는 것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아동 참여에는 아동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명확히 자신의 의사를 표명 및 전달하도록 장려하고 그러한 것이 가능하게 하는 과정이 포함되며,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는 환경에서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아동과 성인 간 정보 공유와 대화도 포함된다. 그러한 과정은 진정성 있고 포용적이며 유의미해야 하며, 보호에 대한 보완적 권리를 인정해야 하며, 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아동이 그들 주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적인 방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가장 소외된 아동과 취약한 환경의 아동, 다양한 연령과 능력의 아동 등 모든 아동의 의견을 고려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과 행위에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청취하고 고려하여야 한다. 참여는 형식적 행위여서는 안 되고 아동을 악용해서도 안 된다.

아동 빈곤: 양호한 영양, 건강, 물, 교육, 주거 등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 • 사적 물질적 자원이 결여된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가 박탈되면 아동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강탈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이러한 박탈로 인해 빈곤 아동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쌓을 기회는 감소된다. 이 박탈은 아동과 미래 세대, 사회에 파괴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며 심각한 파장을 가져온다.[244]

---

243 For statistical purposes, UNICEF refers to "adolescents" as aged 10–19 years (UNICEF Data, 'Adolescents',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New York, April 2022,). Regarding "youth" (or "young people") as noted by the United Nations: "There is no universally agreed international definition of the youth age group. For statistical purposes, however, the United Nations –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definitions made by Member States – defines 'youth' as those persons between the ages of 15 and 24 years" (United Nations, 'Global Issues: Youth').

244 See: UNICEF Data, 'Goal 1: No Poverty',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New York.

아동 보호: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기타 인권, 인도주의 및 난민 조약과 협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아동에게는 모든 상황에서의 폭력, 착취, 학대, 방치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 보호는 이러한 권리의 증진, 보호, 실현을 아우른다. 아동을 필수 사회서비스 및 공정하고 접근가능한 정의에 연계하여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양질의 일자리: 생산적이고 공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양질의 일자리는 안전한 직장, 가족에 대한 사회적 보호, 직장에서의 권리, 사회적 대화, 개인적 발전과 사회통합에 대한 더 나은 전망을 제공한다. 노동 연령대의 청년층을 포함해 사람은 우려를 표현할 자유와 단결할 자유가 있어야 하고, 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평등한 기회와 대우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환경 • 사회 • 지배구조(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회사 성과의 측정 및 관리에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ESG 프레임워크는 주주 외에도 직원, 공급업체, 고객과 지역사회에 국한되지 않고, 환경과 모든 조직 이해관계자에 대해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행동을 요구한다. ESG는 회사 성과를 확인하고 평가하며 관리하려는 회사와 전체론적 관점에서의 지속가능한 투자를 알리고 측정하고 관리하려는 윤리적인 투자자들 모두에 의해 활용된다.

인권 실사: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아동권리를 포함해 인권에 미치는 실제적, 잠재적 영향을 식별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합 및 반영하여 행동하며, 그 반응을 추적하고 그 영향을 어떻게 다루는지 의사소통하기 위한 기업의 지속적인 과정을 말한다. 인권 실사는 기업이 자체 활동을 통해 초래하거나 일조하게 되는 부정적 영향, 또는 사업 관계에 의해 기업 운영, 제품 또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다루어야 한다.

공정한 전환: 인권과 생계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개입을 포괄하는 저탄소경제를 지향하는 움직임을 말한다. 아동권리를 전환을 위한 조치에 가시적으로 통합시키고 아동이 의존하는 서비스의 기후 회복력을 구축하는 것이 공정한 전환의 핵심이다.

영향력 (레버리지): 부정적 인권 영향을 초래하거나 그러한 영향에 일조하는 당사자의 잘못된 관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말한다. 기업이 사업 관계로 인해 기업 운영, 제품 또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영향력이 있는 경우, 그러한 영향력을 이용해야 한다. 영향력이 부족하다면, 예를 들어 역량을 강화하거나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다른 행위자와 협력하는 식으로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기업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19에서 명시된 접근법을 준수하면서, 사업 관계의 중요도, 영향의 심각도, 사업 관계 종료가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마케팅: 특정 제품과 서비스의 인지도와 호감도가 높아지거나 소비가 증가하도록 설계되거나 그러한 효과가 있는 모든 형태의 상업적 소통 또는 메시지를 말한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거나 달리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여기에는 광고비 지급, 제품 배치, 포장 디자인, 브랜드 홍보대사, 후원(스포츠나 문화행사), 기업 홍보가 포함된다.[245]

중요성: 특정 청중에게 하나의 사안이 갖는 중요성의 정도. 비즈니스 맥락에서는 주주만 의미하거나 기타 이해관계자를 지칭하기도 한다. 청중의 선택 또는 목표는 중요한 사안의 선택을 결정한다.[246]

---

245 World Health Organization, 'A Framework for Implementing the Set of Recommendations on the Marketing of Foods and Non-Alcoholic Beverages to Children', WHO, Geneva, 2012.

246 Shift and Mazars, 'Introduction to Salient Human Rights Issues', February 2016.

정책 약속: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에 설명된 바와 같이, 권리(아동권리 포함)를 존중해야 하는 기업 책임을 제시한 성명을 말한다. 정책 약속은 기업 대표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업의 운영, 제품 또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원과 기업 파트너 등의 기대사항이 명시된다. 정책 약속은 공개적으로 활용 가능해야 하며, 기업 대내외적으로 알려져야 하며, 관련된 정책과 절차에 포함되어야 한다. 정책 약속에는 권리 지원에 대한 기업 의지를 보여주는 성명이 포함될 수 있다.

구제책: 부정적 인권 영향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한 인권 피해를 상쇄하거나 보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도 말한다. 국가 기반의 사법적 및 비사법적 고충처리제도는 더 광범위한 구제제도의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초기 단계에 보상과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운영상 고충처리제도에 아동과 가족, 이익대변인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제도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31에 명시된 비사법적 고충처리제도의 효율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업이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야기했거나 조장했다고 파악되는 경우에 기업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구제책을 제공하거나 이에 협력해야 한다.

현저한 인권 문제(현저성): 기업 활동 또는 사업 관계를 통해 가장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위험에 놓인 인권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사람에게 미치는 위험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따라서 현저성은 상황에 따라 기업별로 다르게 나타난다.[247]

(조치의) 효율적 결합: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따라, 국가는 인권에 대한 기업 존중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외, 의무적, 자발적 조치의 "효율적 결합"을 고려해야 한다.[248]

생존과 발달: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핵심 원칙 중 하나로, 협약 제6조는 "모든 아동은 생명에 대한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당사국은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사회보장, 건강, 적절한 영양섭취와 생활 수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교육, 레저와 놀이 등의 권리는 모두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된다. 폭력과 착취로부터의 보호 또한 아동의 생존과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지속가능발전: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을 의미한다.[249] 지속가능발전은 경제발전, 사회발전, 환경보호를 결합한다.

밸류체인: 기업의 밸류체인은 가치를 부과함으로써 투입을 산출로 전환시키는 기업 활동과 관계를 포괄한다. 여기에는 기업이 직간접적인 사업 관계를 맺고, a) 해당 기업의 자체 제품 또는 서비스에 기여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b) 해당 기업으로부터 제품 또는 서비스를 받는 업체가 포함된다.

연소근로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법적 최저 근로연령이 넘는 아동을 말한다. 이 연령군은 작업이나 작업 여건이 위험한 경우, 아동노동으로 지정되는 대상이다.

---

247 Ibid.

248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Commentary on Principle 3, OHCHR, New York and Geneva, 2011, p. 5.

249 See: United Nations, Our Common Future: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7.

유니세프는 1946년 '차별 없는 구호'의 정신으로 전 세계 어린이를 돕기 위해 설립된 유엔기구입니다. 75년이 넘는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어린이의 생명을 살립니다. 각 나라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보다 효과적이고 폭넓게 어린이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합니다. 약 190개 나라 및 영토 등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긴급구호 사업을 펼칩니다. 재난 전에도, 재난 중에도, 재난 후에도, 한결같이 어린이 곁을 지킵니다. 단 한 명의 어린이도 빠짐 없이, 모든 어린이가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보건 · 영양 · 식수와 위생 · 교육 · 긴급구호 사업을 펼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니세프는 전 세계 어린이 곁을 지킵니다.
웹페이지: www.unicef.or.kr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업이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핵심 가치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기업의 운영과 경영전략에 내재화시켜 지속가능성과 기업시민의식 향상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는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시민 이니셔티브입니다. 현재 전 세계 165개국 20,000여 개 회원(17,000여 개 기업회원 포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SNS에서 @globalcompact를 팔로우하고 unglobalcompact.org를 방문하여 확인해주세요.

모든 아동은 미래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세계 최초의 아동권리기관으로서, 100년 이상 쌓아온 전문성을 기반으로 아동의 삶과 미래를 바꾸어나가는 데 앞장섭니다. 전 세계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고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아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취약한 아동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달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과 가정, 지역사회, 후원자들과 함께 아동의 삶에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웹페이지: www.sc.or.kr

unicef
for every child

UN GLOBAL COMPACT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Save the Children